재미동포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

2013. 2

국세청 · 뉴욕총영사관

재미동포가 알아야 할

한 · 미 세금상식

2013. 2

국세청 · 뉴욕총영사관

머리말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가의 위상과 신인도가 높아지고 국가간 인적·물적 교류 확대로 우리 국민들의 해외진출과 해외투자 규모도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미국은 우리나라 국민 진출과 투자가 가장 많은 나라이며 특히, 작년 3월 한·미 FTA 발효로 투자는 물론 진출한 재미동포들의 국내투자 역시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문제를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세청과 주뉴욕총영사관에서는 「재미동포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이라는 세무안내 책자를 발간하여 미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문제 뿐만 아니라 모국 송금 및 투자절차, 한국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재미동포의 한·미 양국에서의 세금보고 방법, 해외금융계좌 보고의무 등 재미동포들이 궁금해 하는 사안들을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재미동포들과의 개별상담 과정에서 교포들이 현지에서 직면하는 현실적이고 어려운 문제와 자주 발생하는 주요 사례들을 문답형식으로 설명함으로써 보다 현장감 있는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재미동포들의 세무 궁금증을 해소하여 교포 여러분들의 재산과 신분을 보호함은 물론 양 국가에서 성실하게 납세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책자발간에 도움을 주신 뉴욕총영사관 관계자분들과 외부 전문가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2월

국제조세관리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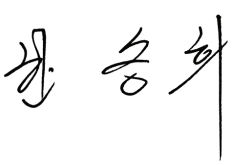

머리말

한국에 부동산 등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각종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재미동포가 많습니다. 재미동포는 한국에 가지고 있는 재산 및 각종 투자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이슈가 있으며, 이러한 세금이슈는 한국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당수가 미국에서도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미동포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미동포가 이러한 국제적인 세금문제를 올바르게 처리하는데 도움을 드리는 한편, 한국에 투자를 하고 투자과실을 미국으로 회수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과 관련된 절차 · 규정, 한국의 상속 · 증여 상식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2009년부터 매년 「재미동포가 알아야 할 한 · 미 세금상식」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간 재미동포의 상담문의 중 중요한 사항, 세법 제 · 개정으로 재외동포가 꼭 알아야 할 사항 등을 중심으로 책자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확대개편해 왔고, 특히 이번에는 '한국에서의 본인의 세무신고 등 조회 및 경정청구방법', '한국의 세금관련 권리 구제절차' 등 「재미동포들이 자주 물어보는 질문과 답변(FAQ)」 12개 항목을 추가하여 재미동포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재미동포의 세금관련 궁금증과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해 주신 국세청 및 뉴욕총영사관의 관계관들은 물론,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값진 집필을 해 주신 미국 및 한국의 민간 세무전문가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책자에 수록된 내용이 재미동포의 한 · 미 세무문제를 해결하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3년 2월

뉴욕총영사

본 책자의 내용 중 제1장과 제2장에서 다루고 있는 미국의 조세제도에 관한 설명이나 답변은 공개된 미국의 법령자료를 기초로 민간 전문가들이 작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그 내용에 관하여 책임질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책자는 2013년도 2월15일 현재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실제 개별적인 세무보고 시에는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제 1 장 한국과 미국의 과세제도

Ⅰ. 한국의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 3

1. 과세대상 ····· 5
2. 납세의무자 ····· 5
3.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6
4.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 6
5. 신고납부 ····· 12
6. 비거주자의 부동산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 12

〈참고 : 양도소득세 계산 흐름도〉 ····· 14

Ⅱ. 한국의 상속세 과세제도 ◆ 15

1. 과세대상 ····· 17
2. 납세의무자 ····· 18
3.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 18
4. 세율 ····· 19
5. 신고납부 ····· 20

〈참고 : 상속세 계산 흐름도〉 ····· 21

Ⅲ. 한국의 증여세 과세제도 ◆ 23

1. 과세대상 ····· 25
2. 납세의무자 ····· 26
3.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 27
4. 비거주자의 과세표준 ····· 28
5. 신고납부 ····· 28

〈참고 : 증여세 계산 흐름도〉 ····· 29

목 차

Ⅳ. 한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 31

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 33
2. 신고의무자 ····· 33
3. 신고의무면제자 ····· 33
4. 신고대상범위 ····· 34
5. 신고하여야 할 내용 ····· 34
6. 신고시기 및 신고방법 ····· 34
7.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 34

Ⅴ. 미국의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 35

1. 과세대상 ····· 37
2. 납세의무자 ····· 37
3.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 37
4. 양도손실 공제 ····· 38
5. 주거용 자택에 대한 혜택 ····· 39

Ⅵ. 미국의 상속세 과세제도 ◆ 41

1. 과세대상 ····· 43
2. 상속재산의 범위 ····· 44
3. 납세의무자 ····· 44
4.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 45
5. 세대생략세(Generation Skipping Transfer Tax, GST Tax) ····· 45
6. 신고납부 ····· 46
7. 주정부 상속세 ····· 47

목 차

Ⅶ. 미국의 증여세 과세제도 ◆ 49

1. 납세의무 ····· 51
2. 증여공제 ····· 53
3. 비과세 ····· 53
4.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 54
5. 신고 ····· 54
6. 증여재산 또는 상속재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차익 계산 ····· 54
7. 해외거주자로부터의 증여 및 상속 보고 ····· 55
8. 주정부 중여세 ····· 55

Ⅷ. 미국의 금융 관련 보고의무 ◆ 57

1. 해외 금융계좌 보고의무 ····· 59
2. 현금거래 보고 ····· 60
3.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 60
4. 해외 금융자산 보고의무 ····· 61
5. 외국금융기관의 미국납세의무자 해외계좌 보고의무 ····· 62
6. 제3차 해외 자진신고 프로그램(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 OVDP) ···· 66

Ⅸ. 미국의 국적포기세 과세제도 ◆ 69

1. 적용대상 ····· 71
2. 과세방법 ····· 71
3. 보고의무 ····· 72
4. 유의사항 ····· 72

Ⅹ. 2013년 미국 세법 변화 내용 ◆ 73

목 차

제 2 장 자주 물어보는 질문과 답변(FAQ)

Ⅰ. 금융자산 투자 관련 ◆ 79

1. 영주권자(시민권자)의 국내 개설가능 계좌 및 그 특징 ····· 81
2. 해외에서 국내 계좌 개설 방법 ····· 82
3. 국내 송금액에 대한 한국(미국) 국세청 자료통보 ····· 83
4. 타인 명의로 국내 송금시 문제점 ····· 84
5. 친인척 명의로 국내 송금시 증여세 과세 여부 ····· 85
6. 국내 친인척에 대한 자금대여 절차 ····· 86
7. 미국의 해외계좌 보고의무(FBAR)의 내용 ····· 87
8. 미국 이민 전 보유계좌에 대한 FBAR 보고의무 ····· 88
9. 미국 지사(현지법인) 파견직원의 FBAR 보고의무 ····· 89
10. 국내 $10,000 이상 계좌 보유자의 FBAR 보고의무 위반 Penalty ··· 91
11. 미국의 해외 금융자산 보고의무 위반 Penalty ····· 92
12. 영주권자(시민권자)의 국내 펀드 · 증권 투자 절차 ····· 93
13. 국내 이자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94
14. 국내 채권 투자수익에 대한 납세의무 ····· 95
15. 국내 주식 투자수익에 대한 납세의무 ····· 96
16. 국내 펀드 투자수익에 대한 납세의무 ····· 97
17. 국내이자, 배당, 양도소득에 대한 미국 신고시기 ····· 98
18. 국내투자에 따른 환차익에 대한 납세의무 ····· 99
19. 국내 금융자산에 투자한 원금의 회수절차 ····· 100
20. 국내 금융자산에 투자한 원금을 해외에서 회수가능 여부 ····· 101
21. 국내에서 해외 송금시 한국 국세청 통보기준 ····· 102
22. 국내 거주자가 되었을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요건 ····· 103
23. 국내 이자, 배당소득 등에 조약의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새 절차 ··· 105
24. 국내 거주자의 미국 부동산 및 기업 투자절차 ····· 106

목 차

Ⅱ. 부동산 투자 관련 ◆ 107

25. 영주권자(시민권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 절차 ····· 109
26. 국내 부동산을 시민권 취득 후 계속 보유를 위한 절차 ····· 110
27. 영주권자(시민권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소유권이전)을 위한 서류 ····· 111
28. 영주권자(시민권자)의 해외에서 국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방법 ····· 112
29. 주민등록이 없는 영주권자(시민권자)의 국내 부동산 소유권 이전 ····· 113
30. 인감증명이 없는 영주권자(시민권자)의 국내 부동산 소유권 이전 ····· 114
31. 국내 부동산 소유권 이전시 인감 대신 서명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115
32.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 및 미신고시 불이익 ····· 116
33. 국내 상가,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업 영위 방법 ····· 117
34. 본인 자금으로 국내부동산 취득하여 타인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시 문제점 ···· 118
35. 부동산 이전등기 시 납부해야 할 국내 세금 ····· 119
36. 한국내 부동산 보유 시 납부해야 할 국내 세금 ····· 120
37. 영주권자(시민권자)의 국내 부동산 양도 절차 ····· 121
38. 영주권자(시민권자)의 해외에서 국내 부동산 양도 방법 ····· 122
39. 영주권자(시민권자)의 부동산 양도 시 납세의무 및 양도대금회수 ····· 123
40.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의 미국 신고 여부 ····· 124

Ⅲ. 양도소득세 관련 ◆ 125

41. 한국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차이점 ····· 127
42.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거주자에 해당될 경우 납세의무 ····· 129
43. 한국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 131
44. 한국 양도소득세 세율 ····· 132
45. 비거주자의 한국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 133
46.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양도 시 한국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 134

목 차

47. 비거주자에 대한 한국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135

48. 영주권자(시민권자)에 대한 한국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137

49. 이민 온 이후에 취득한 국내 주택에 대한 한국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 ····· 138

50. 한국에 돌아가서 거주하는 경우 한국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 139

51. 고가주택에 대한 한국 양도소득세 계산 ····· 140

52. 국내 2주택 보유 시 한국 양도소득세 과세 ····· 141

53. 국내 3주택 이상 보유 시 한국 양도소득세 과세 ····· 142

54. 상속 · 결혼으로 인한 2주택 보유 시 한국 양도소득세 과세 ····· 143

55. 재개발(재건축) 주택에 대한 한국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 144

56. 재개발 조합에서 청산금을 받은 경우 한국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 145

57. 비거주자의 상가, 대지 양도 시 한국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 ····· 146

58. 비거주자의 농지, 목장용지, 임야 등 양도 시 한국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 ····· 147

59. 공익사업용으로 수용 및 협의매수된 부동산에 대한 한국 양도소득세 과세 ··· 148

60. 미국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149

61. 영주권자(시민권자)의 국내 부동산 양도 시 미국에서의 납세의무 ····· 150

62. 국내 부동산 양도시 미국의 양도소득 신고시기 및 방법 ····· 151

63. 양도소득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 152

64. 현금 증여와 부동산 증여의 한국 세금부담 차이 ····· 153

65. 부부 등 공동명의로 부동산 취득시 양도소득세 경감 ·····154

목 차

Ⅳ. 상속세 관련 ◆ 155

66. 한국의 경우 상속재산의 분배방법 ····· 157
67. 상속재산의 재분할 시 국내 과세 ····· 158
68. 영주권자(시민권자)의 상속재산 국내 등기 ····· 159
69. 영주권자(시민권자)의 해외에서 상속재산 국내 등기방법 ····· 160
70. 사망 후 상당기간 경과 후 국내 상속등기 ····· 161
71. 상속재산이 부채보다 적은 경우, 국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방법 ····· 162
72. 한국의 상속세 납세의무 ····· 163
73. 한국의 상속세 계산 ····· 164
74. 한국의 상속세 세율 ····· 165
75. 한국의 상속세 신고납부 ····· 166
76. 한국의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과세 ····· 167
77. 미국의 상속세 납세의무 ····· 168
78.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 ····· 169
79. 영주권자(시민권자)가 국내 부모로부터 상속받을 경우 상속세 과세 ····· 170
80. 한국의 상속공제의 종류와 내용 ····· 171
81. 한국의 경우 증여와 상속의 세부담 비교 ····· 172
82. 상속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 173
83. 상속받은 부동산 양도에 따른 과세 문제 및 양도대금 회수 ····· 174
84. 한국에서 상속인이 스스로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방법 ····· 175
85. 실질적으로 국내 상속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상속가액 기준 ····· 177

목 차

V. 증여세 관련 ◆ 179

86. 한국의 증여세 납세의무 ····· 181
87. 한국의 증여재산의 범위 ····· 182
88. 친인척에게 양도 형식으로 소유권 이전할 경우 한국의 증여세 과세 여부 ····· 183
89. 한국의 자금출처 조사기준 ····· 184
90. 한국의 증여세 비과세 ····· 185
91. 증여재산을 반환할 경우 한국의 증여세 과세 여부 ····· 186
92. 한국의 증여세 계산 ····· 187
93. 한국의 증여세 세율 ····· 188
94. 한국의 비거주자의 증여재산공제 ····· 189
95. 한국의 증여세 신고납부 ····· 190
96. 미국의 증여세 납세의무 ····· 191
97. 미국의 Form 3520 보고의무 및 위반시 Penalty ····· 192
98. 국내 증여자가 미국의 수증자에게 국내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 193
99. 국내 증여자가 미국의 수증자에게 미국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 194
100. 미국 증여자가 국내 수증자에게 국내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 195
101. 미국 증여자가 국내 수증자에게 미국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 196
102. 미국 증여자가 미국 수증자에게 국내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 197
103. 국내 증여자가 국내 수증자에게 미국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 198
104. 자녀(배우자) 명의로 국내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세무 문제 ····· 199
105. 증여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 200
106. 증여받은 부동산 양도에 따른 과세문제 및 양도대금 회수 ····· 201

목 차

Ⅵ. 한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관련 ◆ 203

107. 재외국민의 신고의무 ····· 205
108. 차명계좌 및 공동소유 계좌 신고 방법 ····· 206
109.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범위 ····· 207
110.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달라지는 내용 ····· 208

Ⅶ. 미국의 국적포기세 과세제도 관련 ◆ 209

111. 해외 소재 재산이 국적포기세 과세대상인 경우 세무문제 ····· 211

Ⅷ. 일반세무안내 ◆ 213

112. 한국에서의 사업자등록 신청방법 ····· 215
113. 한국에서 신고한 본인의 세무신고 등 조회 및 경정청구 방법 ····· 218
114. 억울한 세금의 권리구제 절차 ····· 219
115. 국내 법령정보 검색 방법 ····· 221
116. 미국 법령정보 검색 방법 ····· 222
117. 한국의 세무서 및 담당구역 안내 ····· 223

제 1 장 한국 및 미국의 과세제도

Ⅰ. 한국의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 3
Ⅱ. 한국의 상속세 과세제도 / 15
Ⅲ. 한국의 증여세 과세제도 / 23
Ⅳ. 한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 31
Ⅴ. 미국의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 35
Ⅵ. 미국의 상속세 과세제도 / 41
Ⅶ. 미국의 증여세 과세제도 / 49
Ⅷ. 미국의 금융 관련 보고의무 / 57
Ⅸ. 미국의 국적포기세 과세제도 / 69
Ⅹ. 2013년 미국 세법 변화 내용 / 73

Ⅰ. 한국의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Ⅰ. 한국의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1. 과세대상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상 열거된 자산을 양도할 경우에 과세된다. 이때 자산의 양도란 자산의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소득세법상 열거된 자산을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사실상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의 교환, 수용, 공매, 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여자가 수증자(증여 받는 자)에게 자산을 증여하면서 당해 자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채무에 상당하는 부분은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므로 증여자는 그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 : 아파트분양권, 조합원입주권),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주식 또는 출자지분,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이용권(관련 주식 포함) 등이다.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의 경우 모두 과세대상이지만,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은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2. 납세의무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소득세법 제94조와 제118조의2에 열거된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개인(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단체 포함)으로서, 양도일 현재 거주자는 국내외 소재 자산 모두에 대하여, 비거주자는 국내 소재 자산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다.

이 경우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구체적인 거주자 판정방법은 Q41 참고)

3.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지만,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 등록 ·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된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등기접수일 등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된다.

장기할부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 ·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본다. 상속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을,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 장기할부조건(①과 ② 모두 충족하는 것)
  ① 계약금을 제외한 해당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②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 접수일 ·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4.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가. 구분계산

양도소득금액(차익, 차손)은 양도자산을 먼저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주식'과 '주식 外 자산'으로 구분하여 4가지 종류 자산별로 통산하여 계산한다.

나. 양도차익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며,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 분부터는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주고받은 금액, 다만 불분명한 경우 등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한다.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다만, 불분명한 경우 등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으로 계산하며, 취득가액도 원칙적으로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해야 하나 취득 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여기서 매매사례가액이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며, 다만,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은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 한편, 감정가액이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함)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하며, 다만, 주식은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과 기타필요경비는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각각 다르다.

취득가액의 구분	취득가액 및 기타필요경비 산정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미 필요경비 인정된 감가상각비＋자본적 지출액＋양도비용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취득당시(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취득당시 기준시가에 개산공제율(예 : 등기된 부동산은 3%)을 곱한 금액
2011. 1. 1. 이후 환산취득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아래 ①과 ② 중 큰 금액으로 공제 ① 필요경비 = 환산취득가액＋취득당시 기준시가에 개산공제율을 곱한 금액 ② 필요경비 = 자본적 지출액 등＋양도비 등

다.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면 양도소득금액이 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차익에 양도자산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최고 30% 또는 80%)을 곱하여 계산하며,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3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 미등기 양도자산, 비사업용 토지, 국외 소재 부동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세대 2주택 이상으로서 중과대상인 주택의 경우 2011년까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았으나, 2012.1.1. 양도분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되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아래 표 참조)은 일반부동산에 대한 것과, 과세대상인 1세대의

1주택에 대한 것이 있다.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비록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하더라도 1세대의 1주택에 대한 공제율(최고 80%)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부동산에 대한 공제율(최고 30%)을 적용한다(2010.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한편, 2009.12.31. 이전 양도분에 대해서 종전에는 비거주자에게는 1세대의 1주택에 대한 공제율(최고 80%) 적용하지 않았으나, 예규 변경에 따라 비거주자도 거주자와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72, 2012.12.26.).

보유기간	양도자산 유형별 공제율	
	일반부동산	과세대상인 1세대의 1주택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100분의 24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100분의 3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100분의 4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100분의 4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100분의 56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100분의 6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7	100분의 72
10년 이상	100분의 30	100분의 80

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거주자별로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을 먼저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주식'과 '주식 外 자산'으로 구분하여 각각 연간 250만원씩을 공제하므로 거주자는 연간 최고 1,000만원을, 비거주자는 연간 최고 500만원(비거주자는 국내소재 자산에 대하여만 과세되므로)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적용하는 세율은 다음과 같다.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자 산	구 분		'02.1.1 이후 양도	'04.1.1 이후 양도
토지 ·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유 기간	1년 미만	36%	50%
		1년이상 2년미만	누진세율	40%
		2년 이상	누진세율	누진세율
	1세대 2주택 이상		해당없음	〈참고 1〉
	비사업용 토지 등		해당없음	〈참고 2〉
	미등기양도자산		60%	70%
기타자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누진세율			

※ 누진세율

과세표준	2008년		과세표준	2009년		2010년-2011년		과세표준	2012년 이후	
	세율	누진공제		세율	누진공제	세율	누진공제		세율	누진공제
1,000만원	9%	-	1,200만원	6%	-	6%	-	1,200만원	6%	-
4,000만원	18%	90만원	4,600만원	16%	120만원	15%	108만원	4,600만원	15%	108만원
8,000만원	27%	450만원	8,800만원	25%	534만원	24%	522만원	8,800만원	24%	522만원
8,000만원초과	36%	1,170만원	8,800만원초과	35%	1,414만원	35%	1,490만원	3억원	35%	1,490만원
								3억원초과	38%	2,390만원

○ **주식**

구 분		대주주 여부 및 보유기간		'02.1.1. 이후
대기업	주권 상장법인의 주식	대주주	1년미만 보유	30%
			1년이상 보유	20%
		소액주주(장외거래)		20%
		소액주주(장내거래)		비과세
	주권 비상장법인의 주식	대주주	1년미만 보유	30%
			1년이상 보유	20%
		소액주주		20%
중소기업	주권 상장법인의 주식	대주주		10%
		소액주주(장외거래)		10%
		소액주주(장내거래)		비과세
	주권 비상장법인의 주식	대주주 · 소액주주		10%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07.1.1. 이후 양도)				〈참고 3〉

참고 1 1세대 2주택 이상 세율

1. 2004.1.1 ~ 2008.12.31. 양도*				
구 분	2년이상	2년미만	1년미만	비 고
3주택	60%	60%	60%	
2주택	50%	50%	50%	

* 1세대 3주택 : '04.1.1.~'08.12.31.
*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합이 3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 : '06.1.1.~'08.12.31.
* 1세대 2주택 : '07.1.1.~'08.12.31.
*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 그 주택 : '07.1.1.~'08.12.31.

2. 2009.1.1 ~ 2009.3.15. 양도				
구 분	2년이상	2년미만	1년미만	비 고
3주택	45%	45%	50%	
2주택	누진세율	40%	50%	

3. 2009.3.16 ~ 2013.12.31. 양도한 경우				
구 분	소재지	2년이상	2년미만	1년미만
3주택	지정지역*1	누진세율 + 10%	40%*2	50%
	기타지역	누진세율	40%	50%
2주택	모든지역	누진세율	40%	50%

* 1 : '09.3.16.~'12.5.14. 양도분 중 3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강남·서초·송파구에 소재하는 주택
* 2 : 40% → 2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누진세율+10%와 40% 비례세율의 경합시 세액이 높은 것을 적용)
* 지정지역 : '12.5.15. 이후 주택 지정지역 없음

3-1. 2014.1.1. 이후 양도				
구 분	2년이상	2년미만	1년미만	비 고
3주택	60%	60%	60%	
2주택	50%	50%	50%	

* 지정지역과 기타지역 구분 없음

참고 2 비사업용 토지 세율

1. 2007.1.1. ~ 2009.3.15. 양도				
보유기간	2년이상	2년미만	1년미만	비 고
세 율	60%	60%	60%	

2. 2009.3.16 ~ 2013.12.31. 양도				
보유기간	소재지	2년이상	2년미만	1년미만
세 율	지정지역	누진세율 + 10%	40%*1	50%
	기타지역	누진세율	40%	50%

* 1 : 40% → 2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누진세율+10%와 40% 비례세율의 경합시 세액이 높은 것을 적용)
* 지정지역 : 2013.2. 현재 토지 지정지역 없음

참고 3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 세율

양도시기	2007.1.1.~2009.3.15. 양도	2009.3.16.~2012.12.31. 양도
세율	60%	누진세율

5. 신고납부

가. 예정신고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예 : 2013.3.20.)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예 : 2013.5.31.)이내에 예정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예 : 2013.4.20.)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예 : 2012.8.31.) 이내에 예정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자산 중 주식 등에 대해서는 2012년 양도분부터 예정신고납부제도가 폐지되었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종 가산세가 부과된다.

나. 확정신고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당해 과세기간(통상 매년 1. 1 부터 12. 31)의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해야 한다.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1과세기간 동안 2회 이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예정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거주자는 통상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의 소재지(국내원천소득발생 장소, 예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6. 비거주자의 부동산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가. 대상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수자가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된다.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비거주자의 부동산 등의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국내에 있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여기서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의 경우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의 합계액이 50% 이상인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의미한다.

상장주식인 경우는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인 경우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25% 이상을 소유하거나 25% 미만 보유하더라도 증권시장 밖에서 거래한 때에는 과세대상이 된다.

나. 원천징수

원천징수의무자는 비거주자에게 양도가액을 지급하는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매매대금의 지급자인 취득자)이다. 다만, 양도시기 전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 납부를 하였다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교부한 확인서를 제출받거나,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이 비과세 · 과세미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수자의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2011.1.1. 이후 양도분부터 국내에 있는 자산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의 방법으로 양도함으로써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대금을 배당하거나 공매대금을 배분하는 자가 해당 비거주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양도가액(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양수자가 원천징수세액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그 미납부세액 또는 미달세액의 10%를 가산세로 가산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양수자)에게 부과 · 징수한다.

다.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양도자(비거주자)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예정(확정)신고 ·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양수자에게 지급한 원천징수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예정(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예정(확정)신고세액을 계산한다.

〈참고 : 양도소득세 계산 흐름도〉

양 도 가 액	■ 실지거래가액(확인불능☞ 매매사례가, 감정평균가)
–	
취 득 가 액	■ 실지거래가액(확인불능☞ 매매사례가, 감정평균가, 환산취득가액)
–	
기타필요경비	■ 자본적 지출액 또는 양도비용 등, 개산공제액
↓	
양 도 차 익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는 최고 30% 한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3년 이상 4년 미만 : 10%(1세대의 1주택인 경우는 24%) ■ 4년 이상 : 보유연수×3%(1세대의 1주택인 경우는 보유연수×8%), 다만, 10년 이상인 경우 30%(1세대의 1주택인 경우는 80%) 한도
↓	
양도소득금액	■ '국내자산', '국외자산', 각각의 '주식' · '주식외 자산' 별로 통산
–	
양도소득기본공제	■ 1과세기간 동안 1인이 위 4개 자산별로 각 250만원 (최고 1,000만원까지, 비거주자는 500만원까지) 공제 가능
↓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세율	■ 누진세율 : 2010년~2011년 {(과세표준×(6~35%)}–(누진공제액) 2012년 이후 {(과세표준×(6~38%)}–(누진공제액) ■ 가산세율 : 2009.3.16.~2013.12.31. 양도분 (1세대3주택 이상, 조합원입주권 포함한 1세대3주택 이상, 비사업용토지 중 지정지역 소재 주택, 비사업용토지) ☞ 누진세율+10%P ■ 단일세율 : 10%, 20%, 30%, 40%, 50%, 60%, 70%
↓	
양도소득산출세액	■ 세 액 감 면 ■ 세 액 공 제 ■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 2011년 이후 양도분부터 완전 폐지
↓	
결 정 세 액	
+	
가 산 세	■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장불성실가산세(대주주)
–	
기납부세액	■ 예정신고산출세액, 기결정 · 경정고지세액, 수시부과세액 ■ 비거주자원천징수세액
↓	
자진납부할세액	■ 지방소득세(지방세) 추가 부담 (자진납부할 양도소득세 ×10%)

Ⅱ. 한국의 상속세 과세제도

Ⅱ. 한국의 상속세 과세제도

1. 과세대상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있어서 피상속인(사망자)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대상이 된다.

피상속인	과 세 대 상
거 주 자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의 국내·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비거주자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의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되, 그 객관적 사실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비거주자가 한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한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

* 영주귀국의 신고 및 영주귀국 확인서의 발급 필요(「해외이주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 비거주자의 요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에 규정하는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국내에서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지에 대해서는 상속개시일이전 국내 입국일을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서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이다. 이 경우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서면4팀-3098,2006.9.11).

2. 납세의무자

상속인 또는 수유자(유증 등을 받은 자)는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공동상속의 경우 다른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나머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 순자산가액(상속재산 – 공과금 · 채무)에서 본인이 납부한 상속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가. 상속인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이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되며, 공동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상속개시 전 10년 내에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민법상 상속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과 배우자,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이다. 아들과 손자의 경우 아들이 선순위이고, 아들과 딸의 경우 공동상속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지만, 1 · 2순위인 직계비속 · 존속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 배우자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의 1.5배가 된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한 자 등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대습상속).

나. 수유자

피상속인의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거나 증여이행 중 증여자가 사망하여 상속개시 후 재산을 취득한 자도 수유자로서 상속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 납세의무와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3.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상속세 과세표준은 피상속인(거주자)이 소유한 국내외의 모든 상속재산가액의 합계액을 산정한 다음 이 금액에서 비과세 상속재산,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차감하고 추정상속재산과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한 후, 상속공제액과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추정상속재산은 상속개시 전 처분하거나 부담한 채무액이 1년 이내 2억원(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 상당을 말하며,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은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 전 10년(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상속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과세표준에 세율(10%~50%)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손자, 외손자 등이 상속받을 경우에는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30% 할증과세를 한다. 다만, 자녀가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사유가 있어 손자 또는 외손자가 대습상속인으로서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증여 당시 부담한 증여세액은 기납부증여세액으로 공제한다.

비거주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방법은 거주자 사망의 경우와 대체로 유사하나,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 상속개시일 현재 비거주자가 소유하는 국내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를 부과한다.
- 국내재산에 대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및 공과금을 공제하며, 국내재산에 저당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채무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장부에 의해 확인되는 채무는 공제하지만, 장례비용은 공제하지 않는다.
- 상속공제의 경우 2억원의 기초공제와 감정평가수수료가 공제되지만, 배우자 공제, 기타 인적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4. 세율

비거주자와 거주자의 상속세율은 다음과 같이 동일하다.

과 세 표 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5. 신고납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월 이내(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9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세금은 일시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분납, 연부연납 및 물납제도를 이용하면 일시적으로 거액의 세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과중한 세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

상속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에서 분납이 가능하며 상속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담보를 제공하고 5년(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7년 또는 15년)이내에서 연부연납이 가능하다. 단, 연부연납세액에 대해서는 1일 10만분의 10.959(年 4.0%)에 해당하는 가산금(이자상당액)을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가액의 비율이 50%를 초과하고 상속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부동산과 유가증권(비상장주식은 제외)으로 물납을 할 수 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과세 차이】

구 분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① 신고납부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월 이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9월 이내
② 과세대상 재산	국내·외의 모든 상속재산	국내 소재 상속재산
③ 공제금액		
· 공과금	미납된 모든 공과금	국내 상속재산 관련 공과금
· 장례비용	공제	공제 안됨
· 채무	모든 채무 공제 (증여채무 제외)	국내 상속재산에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증여채무 제외)
④ 과세표준의 계산		
· 기초공제(2억)	공제	공제
· 기타인적공제	공제	공제 안됨
· 일괄공제(5억)	공제	공제 안됨
· 배우자상속공제	공제	공제 안됨
· 금융재산상속공제	공제	공제 안됨
· 재해손실공제	공제	공제 안됨
· 동거주택상속공제	공제	공제 안됨
·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공제

〈참고 : 상속세 계산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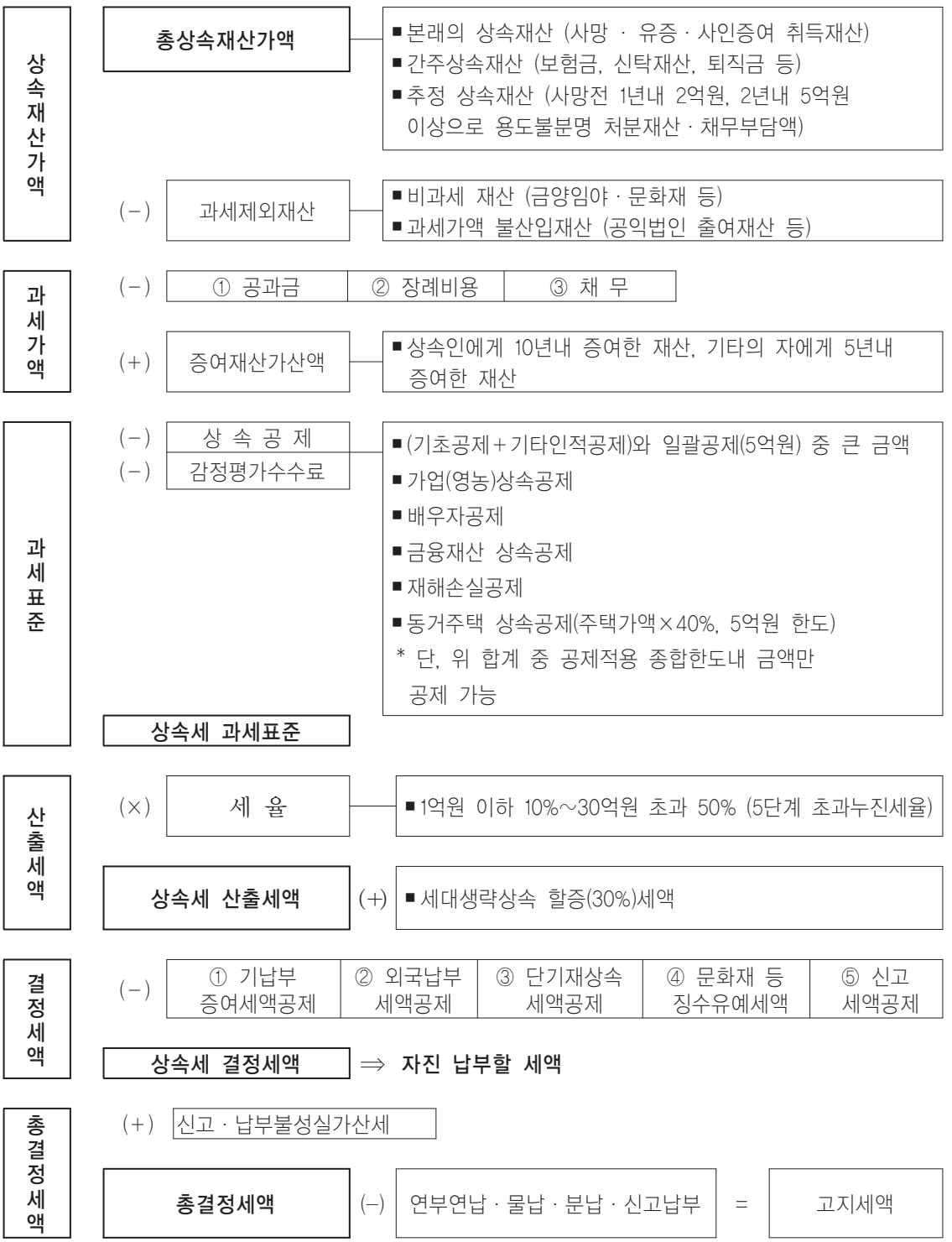
상속재산가액
총상속재산가액
■ 본래의 상속재산 (사망 · 유증 · 사인증여 취득재산)
■ 간주상속재산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
■ 추정 상속재산 (사망전 1년내 2억원, 2년내 5억원 이상으로 용도불분명 처분재산 · 채무부담액)
(-) 과세제외재산
■ 비과세 재산 (금양임야 · 문화재 등)
■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공익법인 출여재산 등)
과세가액
(-) ① 공과금 ② 장례비용 ③ 채 무
(+) 증여재산가산액
■ 상속인에게 10년내 증여한 재산, 기타의 자에게 5년내 증여한 재산
과세표준
(-) 상 속 공 제
(-) 감정평가수수료
■ (기초공제+기타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원) 중 큰 금액
■ 가업(영농)상속공제
■ 배우자공제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재해손실공제
■ 동거주택 상속공제(주택가액×40%, 5억원 한도)
* 단, 위 합계 중 공제적용 종합한도내 금액만 공제 가능
상속세 과세표준
산출세액
(×) 세 율
■ 1억원 이하 10%~30억원 초과 50% (5단계 초과누진세율)
상속세 산출세액
(+) ■ 세대생략상속 할증(30%)세액
결정세액
(-) ① 기납부 증여세액공제 ② 외국납부 세액공제 ③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④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⑤ 신고 세액공제
상속세 결정세액 ⇒ 자진 납부할 세액
총결정세액
(+) 신고 · 납부불성실가산세
총결정세액 (-) 연부연납 · 물납 · 분납 · 신고납부 = 고지세액

Ⅲ. 한국의 증여세 과세제도

Ⅲ. 한국의 증여세 과세제도

1. 과세대상

타인(법인 포함)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수증자(증여를 받은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 국외에 소재하는 재산(증여받은 재산)이,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 및 특정 국외소재재산(증여받은 재산)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여기서 '특정국외소재재산'이란 비거주자가 2013.1.1. 이후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 · 적금 등 해외금융계좌에 보유된 재산과 국내소재재산을 50% 이상 보유한 외국법인 주식을 말한다.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되, 그 객관적 사실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한다.

*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재산을 해외로 유출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3.1.1. 이후 증여분부터는 국내소재 재산 뿐만 아니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적금 등 해외금융계좌에 보유된 재산과 국내소재 재산을 50% 이상 보유한 외국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 형식 ·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것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이라 포괄적으로 정의규정하고 있으며,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민법상 증여재산

2. 민법상 증여 및 증여의제재산은 아니나 증여로 취급하는 재산
 ① 상속재산 재분할에 따른 상속인간 몫의 변동 시 증여 취급
 ② 증여재산의 반환 및 재증여에 따른 증여 취급

3. 포괄적 증여재산 중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예시규정하고 있는 증여재산
 ① 신탁이익, 보험금의 증여 (상속세및증여세법 §33, 34)
 ② 저가 ·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상속세및증여세법 §35)
 ③ 채무면제,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 (상속세및증여세법 §36, 37)
 ④ 합병, 증자,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및증여세법 §38, 39, 39의 2)
 ⑤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및증여세법 §39의3)
 ⑥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및증여세법 §40)
 ⑦ 특정법인과의 거래, 주식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및증여세법 §41, 41의 3)
 ⑧ 금전무상대출, 합병에 따른 상장 이익의 증여 (상속세및증여세법 §41의4,5)

4.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재산
 ①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상속세및증여세법 §44)
 ②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상속세및증여세법 §45)
 ③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속세및증여세법 §45의2)
 ④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상속세및증여세법 §45의3)

2. 납세의무자

증여세는 통상 수증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지만,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거소가 불분명하여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한편,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하여 증여자인 거주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3.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가. 과세표준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비과세 증여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공익목적 출연재산, 공익신탁재산,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 등의 가액을 차감하고,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1천만원 이상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가산한 후, 여기에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① 채무부담액 공제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채무액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한다. 단, 당해 채무액은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유상양도(대물변제)한 것에 해당하므로 증여자는 수증자에게 승계시킨 당해 채무액에 대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② 10년 이내 증여재산의 합산과세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세 과세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합산하여 과세한다.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각각의 증여 당시 가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증여재산공제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로서 배우자, 직계존비속(2010.1.1 이후 계부모자 포함),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10년간 합산하여 아래의 증여재산공제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한편,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구분 \ 증여시기		'03.1.1 ~ '07.12.31	'08.1.1 이후
증여자	직계존비속	3천만원 (미성년자는 1,500만원)	좌와 동
	배 우 자	3억원	6억원
	기타 친족	5백만원	좌와 동
	타 인	없 음	없 음

*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적용함(비거주자는 적용하지 않음)

나. 세액의 계산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상속세와 세율이 같음)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손자, 외손자 등일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할증 과세한다.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아 가산한 증여재산 관련 증여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4. 비거주자의 과세표준

수증자가 재외동포 등 비거주자일 경우에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 평가관련 감정평가수수료만 공제한다(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5. 신고납부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없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원칙적으로 수증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월 이내에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수증자가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 증여자 및 수증자 모두가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증여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증여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증여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월 이내에서 분납할 수 있다. 증여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담보를 제공하고 5년 이내에서 연부연납이 가능하지만, 연부연납세액에 대해서는 1일 10만분의 10.959(年 4.0%)에 해당하는 가산금(이자상당액)을 부담해야 한다. 증여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가액의 비율이 50%를 초과하고 증여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부동산과 유가증권(비상장주식은 제외)으로 물납을 할 수 있다.

〈참고 : 증여세 계산 흐름도〉

수증자가 거주자이고 일반 증여재산인 경우

증여재산가액

■ 국내 · 국외에 소재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단,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공시지가,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

—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재산등

■ 비과세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
■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

—

채 무 부 담 액

■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인수액 (증여재산 관련 임대보증금 포함)

↓

증여세과세가액

+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산액

■ 당해 증여 前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가액을 가산
* 동일인 :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증 여 공 제
■ 증여재산공제
■ 재해손실공제

증여자	배우자	직계존비속(계부모자 포함)	기타친족	기타
공제한도액	6억원	3천만원(미성년자 15백만원)	5백만원	없음

* 위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계한도액임
■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멸실 · 훼손된 경우 그 손실가액을 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부동산 감정평가법인의 수수료는 5백만원 한도 등

↓

증여세과세표준

■ 일　　반 : 증여재산 – 증여공제(증여재산공제 · 재해손실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명의신탁 : 신탁재산 – 감정평가수수료
■ 합산배제 : 증여재산 – 3천만원 – 감정평가수수료

×

세　율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　　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 6천만원	4억 6천만원

↓

산 출 세 액

■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세대생략할증세액

■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할증함. 단,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최근친 직계비속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제외

—

세액공제+감면세액

신고세액공제(10%)	외국납부세액공제
기납부 세액공제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 등

↓

자진납부할세액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고 일반 증여재산인 경우

증여재산가액
- ■증여받은 국내소재 재산 및 특정국외소재 재산에 대해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단,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공시지가,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

—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재산등
- ■비과세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
-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

—

채 무 부 담 액
-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인수액 (증여재산 관련 임대보증금 포함)

↓

증여세과세가액

+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산액
- ■당해 증여 前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가액을 가산
- * 동일인 :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증 여 공 제 ■재해손실공제
- ■증여재산공제 적용하지 않음
-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멸실 · 훼손된 경우 그 손실가액을 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부동산 감정평가법인의 수수료는 5백만원 한도 등

↓

증여세과세표준
- ■일 반 : 증여재산 – 재해손실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명의신탁 : 신탁재산 – 감정평가수수료
- ■합산배제 : 증여재산 – 3천만원 – 감정평가수수료

×

세 율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 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 6천만원	4억 6천만원

↓

산 출 세 액
-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세대생략할증세액
-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할증함. 단,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최근친 직계비속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제외

—

세액공제+감면세액
- 신고세액공제(10%) 기납부세액공제

↓

자진납부할세액

-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는 '특정국외소재재산'이란 2013.1.1. 이후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 · 적금 등 해외금융계좌에 보유된 재산과 국내소재재산을 50% 이상 보유한 외국법인 주식을 말함
-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 국외재산 수증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함
- 조특법상 감면 및 과세특례 (조특법 §71, §30의5, §30의6)를 적용하지 않음

Ⅳ. 한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Ⅳ. 한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해당연도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융계좌정보를 다음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이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7조).

2012년 중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2013년 6월에 신고를 해야 한다.

2. 신고의무자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신고의무자가 된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에 둔 법인을 말한다.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나 해외연락사무소는 내국법인에 포함되며 해외현지법인은 제외된다.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라도 보유계좌잔액의 합계액이 연중 10억원을 넘는 날이 하루도 없으면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차명계좌인 경우에는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둘 다 신고의무가 있으며, 공동명의계좌인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가 신고의무가 있다.

3. 신고의무면제자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재외국민으로서 해당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인 자
-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현재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금융업 관련기관 중 열거된 자(예 : 펀드)

4. 신고대상범위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예 · 적금계좌 및 증권계좌에 보유한 현금 및 상장주식 잔액의 합이 1년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이 된다.

2014년 신고부터는 신고대상계좌가 모든 금융계좌로 확대되어 파생상품, 상장채권 보험 등도 합산 대상이 되며, 잔액산출기준이 월말기준으로 변경되어 매월 말일자로 합산한 잔액이 한 번이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이 된다.

5. 신고하여야 할 내용

- 계좌 보유자의 성명 · 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 계좌번호 · 금융기관의 이름 · 보유계좌잔액의 연중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 공동명의자 · 실질소유자 · 명의자에 관한 정보

6. 신고시기 및 신고방법

매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7.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10%(2010년도 보유분에 대해서는 5%)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반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다.

2014년 신고부터는 미(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 이하의 벌금이 가해진다.

Ⅴ. 미국의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Ⅴ. 미국의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1. 과세대상

투자목적이든 아니든 미국세법에 따로 명시된 몇몇 자산 외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은 Capital Assets에 해당하며, 이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Capital Gains)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이러한 자산에는 부동산, 동산, 투자증권, 귀금속, 수집품, 사업용 자산 등 거의 모든 자산이 포함된다.

Capital Asset 양도시 양도가액과 cost basis(통상 취득가액에 상당)의 차액이 양도소득 혹은 양도차손에 해당한다. 양도소득은 양도차손과 상계되며, 따라서 순 양도소득 혹은 순 양도차손은 조세채무를 계산함에 있어 중요한 수치이다.

2. 납세의무자

양도자가 시민권자, 영주권자, 거주외국인 등 미국세법상의 '미국인(US person)'에 해당하면 일반적으로 전 세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단, 미국세법 및 조세조약에 의한 예외는 FAQ #9와 #42 참조)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할 경우 미국에서 소득세를 계산할 때 국외원천소득과 관련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금 중 세법에서 정한 한도 내의 금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소득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양도자가 미국의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미국 내의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다.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다음 해 4월 15일까지 소득세 신고시에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3.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려면 우선 자산의 보유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보유기간이 1년 이하인 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소득은 단기 양도소득(Short-term Capital Gains, 이하 STCG)로 분류하고, 보유기간이 1년이 넘는 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소득은 장기 양도소득(Long-term Capital Gains, 이하 LTCG)으로 분류한다.

STCG는 일반 소득과 합쳐 일반 세율(2013년 귀속연도의 경우 10%~39.6%)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일반적으로 LTCG에 적용되는 세율은 최고 20%다. 다시 말해 어느 고소득자의 일반 소득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이 39.6%라 할지라도 그 납세자의 LTCG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세율은 20%이다. 적용되는 최고 일반소득세율이 15%를 초과하지만 39.6% 미만인 납세자는 LTCG에 대하여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또한 일반 소득세율이 10%~15%인 납세자에 대하여는 LTCG에 대해 면세의 특혜가 주어진다. 즉, 일반 소득세율이 15% 이하인 납세자는 이 기간 동안 LTCG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다만, 납세자의 LTCG 소득이 일반소득과 비교하여 15% 세율층을 넘는 LTCG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이 없어도 15%나 20%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느 부부의 2013년 LTCG가 $55,000이었고 다른 소득이 없었다면 15% 세율층에 속하므로 $55,000 LTCG 전액에 대해 면세를 받게 된다. 그런데 이 부부의 LTCG 소득이 $80,000이었다면 $72,500까지는 면세이나, $72,500을 초과하는 $7,500 ($80,000-$72,500) 에 대해서는 15% 세금인 $1,125을 납부해야 한다.(2013년의 경우 부부 합산보고 납세자의 과세대상 소득, 즉 과세표준이 $72,500을 넘으면 25% 세율층에 속한다.)

4. 양도손실 공제

양도시 발생한 손실은 다른 양도소득이 있으면 우선 서로 상계한다. 그러고도 순양도손실(Net Capital Losses)이 발생하면 일반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단, 공제한도액은 연간 $3,000이다(부부 별도신고의 경우 $1,500). 올해에 공제하지 못한 순양도손실은 다음 해 이후로 이월되어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과 먼저 상계하고, 그래도 상계하지 못한 순양도손실은 매년 $3,000을 한도로 일반 종합소득에서 이월공제할 수 있다.

손실을 이월할 때, 단기양도손실 혹은 장기양도손실의 성격이 그대로 남는다. 다음해로 이월하는 장기양도손실은 다음해의 장기양도소득과 먼저 상계하고 나서 다음해의 단기양도소득과 상계한다.

예를 들어 어느 부부의 2013년 일반 종합소득이 $50,000이라고 가정하고, 그 부부가

2006년에 $20,000에 취득한 주식을 2013년에 $10,000에 양도하여 $10,000의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연간 $3,000을 일반 종합소득 $50,000에서 차감하여 소득세 과세표준($47,000)을 계산한다. 이 경우 공제받지 못한 양도손실 $7,000은 이월하여 2014년부터 다른 양도소득(Capital Gains)이 있으면 우선 서로 상계하고(한도 없음), 그러고도 순양도손실이 남으면 연간 $3,000을 한도로 일반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5. 주거용 자택에 대한 혜택

주거용 자택(Principal Residence)을 처분했을 경우 부부공동보고 납세자는 양도소득 $500,000까지, 그 이외의 납세자는 $250,000까지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 그 조건은 반드시 지난 5년 사이 2년 이상을 주거용 자택으로 사용해야 한다. 2년 거주 규정은 지속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고, 지난 5년 동안 아무 때나 24개월 이상을 주거용 자택으로 사용하면 된다. 면세혜택은 거주자뿐만 아니라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어느 부부가 2009년 12월 1일 $300,000에 구입한 주거용 자택을 2013년 11월 30일 $750,000에 처분했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4년을 주거용 자택으로 사용했다면 2년 이상 거주 규정을 충족하였으므로 양도소득 $450,000 전액에 대해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

Ⅵ. 미국의 상속세 과세제도

Ⅵ. 미국의 상속세 과세제도

1. 과세대상

연방세의 경우 피상속인(사망자)이 미국 시민 또는 미국 상속세법상 미국 거주자인 경우에는 전세계의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이며, 사망일 또는 사망 후 6개월이 된 때의 시가(Fair Market Value)가 당해 연도의 상속세 면제한도를 초과할 때 상속세가 부과된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인 경우에는 미국 내에 소재하는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 목적상 미국 거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각각 사망시, 또는 증여시 미국에 'Domicile'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소득세법상 미국인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영주권 또는 체류일수 기준 등 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 상속, 증여세법에서는 각각 사망 또는 증여시점에서 거주자의 'Domicile'이 어디에 있는 지를 기준으로 미국 거주자 여부를 판단한다. Domicile 존재여부는 모든 사실 관계와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며 쉽게 단편적으로 적용 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사항의 예로는 거주 기간, 주택 소유 여부, 가족 구성원의 주거지, 사회적 관계 (봉사 활동, 종교 활동, 친구 관계, 등), 경제적 관계 (사업체, 자동차, 직장, 은행 계좌, 등), 영주권 소유 여부 등이 있다. Domicile 존재여부는 한 두가지 사실이나 정황만으로 판단 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미국에 domicile이 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상속세법 시행규칙에서는 "사람들은, 이후에 이동해서 나갈 것이라는 명확한 의사가 현재 상황에서 없는 한, 어떠한 장소에 삶으로써 – 심지어 잠시 살더라도 'Domicile'을 가지게 된다", "항구적으로 머무르려는 의도가 없이는 domicile이 성립되지 않는다", "일단 domicile이 성립되면 그 domicile을 실제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훗날 domicile을 바꾸겠다는 의도를 갖는 것만으로는 domicile이 바뀌지 않는다"는 등 'domicile'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새로이 입법되어 시행되는 "The American Taxpayer Relief Act of 2012"에 따르면

미국 시민 또는 미국 상속세법상의 미국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통합공제(United Credit)방식에 따른 상속세 증여세 면제상당금액(Exemption Equivalent)은 상속과 증여를 합쳐 2011년도 기준 $5,000,000이며 인플레이션과 연동된 2013년도분 상속 증여세 면제상당금액(Exemption Equivalent)은 $5,250,000이 된다. 피상속인이 2013년 사망하는 경우, 살아 있는 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사용되지 않은 피상속인의 상속세 면제상당금액을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결혼한 부부는 먼저 사망한 배우자가 그의 또는 그녀의 상속세 면제상당금액을 이용하지 못하고 사망한다 하더라도 최고 $10,500,000까지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셈이다. 상속 증여세 면제상당금액을 초과하는 상속 또는 증여에 대해서는 40%의 상속 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피상속인이 비거주 외국인인 경우에는 미국 내에 소재하는 유산(부동산, 동산, 주식, 사채, 조합지분 등)이 $60,000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피상속인(사망자)이 비거주외국인인 경우로서 미국 내에 소재하는 유산이 있어 상속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제한된 일부 공제(기부금공제, 살아 있는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배우자 공제 등)만 허용되고, $13,000의 통합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2. 상속재산의 범위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 시 소유한 모든 재산, 사망시 이전키로 한 재산, 취소가능 신탁의 재산, 생명보험 수령액, 부적합한 증여 및 매도로 이전한 재산, 공동소유권의 피상속인 지분, 피상속인이 수익자를 지명할 수 있는 권리(Power of Appointment)를 가진 신탁의 재산권 등이 포함된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연간 증여세 면제액을 초과하여 증여한 금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된다. 단, 취소 불가능한 신탁(Irrevocable Trust)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

3. 납세의무자

상속세 보고 및 납세는 “유언 집행인” (executor)이 한다. “유언 집행인”이란 용어는 유언 집행인 (the executor)은 물론, 대리인 (personal representative) 혹은 관리인 (administrator)이란 호칭을 망라하며 , 신탁 (trust) 등을 통하여 상속이 이루어져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자 또는 기관을 칭한다.

유산 (the decedent's estate)은 피상속인과는 별도의 납세의무을 가진 개체로 따로 납세자 번호(EIN)을 발급 받아야 하며 상속 절차가 이루어지는 동안 유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신고하고 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4.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상속세 과세표준은 피상속인이 소유한 총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후, 장례비용, 유언집행비용, 부채 등을 차감하고, 다시 배우자 공제(Marital Deduction), 기부금공제(Charitable Deduction), 주정부 상속세 공제(State Death Tax Deduction)를 차감한 과세대상 재산가액을 산출한 후, 피상속인이 1976년 이후 증여한 과세대상 증여가액을 합산한다. 여기에 누진 상속세율(2013년의 경우 최고 40%)을 적용하여 잠정 상속세액을 산출한다.

잠정 상속세액에서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와 기타 세액공제(기납부 증여세 등) 등을 차감하면 최종 상속세 납부세액이 산출된다. 통합세액공제액을 활용하면 2013년의 경우 상속세 면제상당금액 $5,250,000까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증여세에서 통합세액공제를 활용한 경우 그만큼 상속세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든다.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외국에서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타국에 실제로 납부한 세액 또는 동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미국 상속세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외국납부세액으로 상속세액에서 공제가 인정된다.

배우자 공제(Marital Deduction)는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재산의 가액(즉, 시민권자인 배우자에게 상속하는 재산에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이고, 배우자가 영주권자나 비거주자인 경우 적격신탁(Qualified Domestic Trust)을 통한 상속을 제외하고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다.

5. 세대생략세(Generation Skipping Transfer Tax, GST Tax)

GST Tax는 조부모로부터 손자 · 손녀(또는 증손자 · 증손녀)에게 유언 또는 신탁에 의해 재산이 넘어갈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GST Tax는 37.5세를 초과하여 연하인 제3자에게

재산이 넘어갈 때도 부과된다. 세대생략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와 별도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미의회는 1976년 후임세대에게 증여나 유증을 하기보다 손자 · 손녀 또는 증손자 · 증손녀에게 직접 증여나 유증을 함으로써 한 세대 혹은 그 이상의 세대가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GST Tax를 입안하였다.

GST Tax는 기증자보다 두 세대 이상 아래인 세대의 수취자에게 부를 이전하는 것에 대해 두 계층의 세금(상속세의 별도부과 및 최고세율을 이용하여)이 부과되는 효과를 낸다. 예를 들면, 조부모가 손자 · 손녀에게 증여를 할 때 증여 대상물에 대해 증여세와 GST Tax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다. GST에 대한 면제상당금액은 2011년 기준으로 $5,000,000이며 인플레이션과 연동되고, 면제상당금액을 초과하는 액수에 대해서는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2013년에 이루어진 GST에 대해서는 40%의 세율과 $5,250,000의 면제상당금액이 적용된다.

6. 신고납부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Form 706)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상속세는 일시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피상속인의 사업체가 상속재산의 35% 이상일 경우에는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는 제도가 있으나, 법령에 정하는 모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IRC 鋤).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이 사망한 경우로서 미국 내에 소재하는 유산이 있어 상속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역시 상속개시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Form 706-NA)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상속세 신고 시 제출할 서류는 피상속인의 사망확인 서류, 유언장이 있는 경우 유언장 사본, 주정부 상속세 납부확인 서류, 재산평가 서류, 증여세 보고 서류 등이다.

7. 주정부 상속세

미국의 많은 주(State) 정부는 2001년 연방세법 개정 이후 상속세를 부과하는 법을 신설하여 주정부 상속세 보고 및 납세를 요구한다. 주정부 상속세의 경우 많은 변화가 있고 또한 연방정부 상속세(estate tax)와는 다른 개념의 상속세 (예를 들어, inheritance tax)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각 해당 주정부의 상속법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연방정부 상속세와 별도로 estate tax를 부과하는 주는 Connecticut, Hawaii, Illinois, Maine, Massachusetts, Minnesota, New York, North Carolina, Ohio, Oregon, Rhode Island, Vermont, 그리고 Washington 주와 District of Columbia이며, 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inheritance tax를 부과하는 주는 Indiana, Iowa, Kentucky, Nebraska, Pennsylvania 그리고 Tennessee 주이다. Maryland와 New Jersey 주에서는 estate tax와 inheritance tax를 동시에 부과한다.

Ⅶ. 미국의 증여세 과세제도

Ⅶ. 미국의 증여세 과세제도

1. 납세의무

미국의 경우 증여계약에 의하여 재산을 무상 또는 낮은 가액으로 이전하는 증여자(Donor)가 증여세 납세의무자이다.

증여자가 미국 시민 또는 미국 증여세법상 거주자인 경우에는 전 세계의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보고 및 납세의무가 있고, 증여자가 비거주 외국인인 경우에는 미국 내에 소재하는 유형자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납세의무가 있다. (증여세법을 적용할 때 사용되는 거주자 개념은 앞의 'VI. 미국의 상속세 과세제도 1. 과세대상'참조)

한국과 미국의 증여세 제도 차이에서 발생하는 사례

한국의 경우 수증자(Donee, 받는 사람)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수증자가 한국 거주자인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한국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고, 수증자가 한국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재산 및 특정 국외소재재산('III. 한국의 증여세 과세제도 1. 과세대상' 참조)을 증여 받았을 때 한국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한국 또는 미국에서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자가 미국 시민인지 여부, 증여자가 어느 나라 거주자인지, 수증자가 어느 나라 거주자인지, 재산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에 따라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증여자가 미국 시민이 아닌 경우〉

증여자 거주지	수증자 거주지	재 산[1] 소재지	미 국 증여세	한 국 증여세
미 국	미 국	미 국	과 세[2]	비과세
미 국	미 국	한 국	과 세	과 세
미 국	한 국	미 국	과 세	과 세
미 국	한 국	한 국	과 세	과 세
한 국	미 국	미 국	과 세	비과세[3]
한 국	미 국	한 국	비과세	과 세
한 국	한 국	미 국	과 세	과 세
한 국	한 국	한 국	비과세	과 세

주 1. 위 표에서 '재산'은 유형재산뿐 이라고 가정
2. 위 표에서 '과세'라는 것은 한국의 경우 증여재산공제, 미국의 경우 Unified Tax Credit 등 각종 공제를 적용한 결과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경우도 포함하는 바, 양국에서 '과세'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중 과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많음
3. 단, 2013.1.1. 이후 증여분부터는 비거주자가 국내소재 재산 뿐만 아니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적금 등 해외금융계좌에 보유된 재산과 국내소재 재산을 50% 이상 보유한 외국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을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증여자가 미국 시민인 경우〉

증여자 거주지	수증자 거주지	재 산[1] 소재지	미 국 증여세	한 국 증여세
미 국	미 국	미 국	과 세[2]	비과세
미 국	미 국	한 국	과 세	과 세
미 국	한 국	미 국	과 세	과 세
미 국	한 국	한 국	과 세	과 세
한 국	미 국	미 국	과 세	비과세[3]
한 국	미 국	한 국	과 세	과 세
한 국	한 국	미 국	과 세	과 세
한 국	한 국	한 국	과 세	과 세

주 1. 위 표에서 '재산'은 유형재산뿐 이라고 가정
2. 위 표에서 '과세'라는 것은 한국의 경우 증여재산공제, 미국의 경우 Unified Tax Credit 등 각종 공제를 적용한 결과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경우도 포함 하는 바, 양국에서 '과세'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중 과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많음
3. 단, 2013.1.1. 이후 증여분부터는 비거주자가 국내소재 재산 뿐만 아니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적금 등 해외금융계좌에 보유된 재산과 국내소재 재산을 50% 이상 보유한 외국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을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2. 증여공제

연간 증여세 면제액(Annual Gift Tax Exclusion)은 증여자(Donor) 1인당 각 수증자(Donee)에 대하여 $14,000이다. 즉, 한 명의 증여자가 한 명 또는 여러 명에게 각각 $14,000 이하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보고 및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연간 증여세 면제액은 사용하지 않아도 누적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3명의 자녀에게 각각 $14,000을 증여하는 경우(총 $42,000) 증여세가 면제되고, 증여세 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

2013년에 연간 증여세 면제액을 초과하여 증여하는 경우 시민권자 및 미국 증여세법상 미국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를 활용하면 한 번 또는 여러 번에 걸쳐 증여자 1인당 평생 증여재산가액에서 $5,250,000을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셈이다. 증여자가 비거주 외국인인 경우 통합세액공제를 활용할 수 없다. 증여세에서 통합세액공제를 활용하는 경우 상속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합세액공제가 줄어들게 된다.

연간 증여세 면제액($14,000)을 초과하여 증여하는 경우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세금보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3. 비과세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간 증여,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 정치단체에 대한 기부, 인가된 교육기관의 교육비(수업료)를 직접 교육기관에게 지불하기 위한 증여, 의료비를 직접 의료기관에게 지불하기 위한 증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단, 증여를 받는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U.S. Citizen)가 아닌 외국인인 경우 연간 $14,000의 증여세 면제액(Annual Exclusion) 대신 연간 $143,000(2013년 기준)을 증여가액에서 차감해 준다.

4.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증여세 과세표준은 연간 증여재산 총액에서 연간 증여세 면제액, 배우자공제, 자선단체 기부공제 등을 차감하여 과세대상 증여가액을 산출하고, 그 이전의 과세대상 증여가액 누계액을 더해 평생 과세대상 증여가액(Lifetime Taxable Gifts)을 구한다. 여기에 누진세율을 (2013년 최고 40%까지)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그 이전의 과세대상 증여가액에 대한 세액을 차감하여 잠정 증여세액을 산출한다.

잠정 증여세액에서 사용하지 않은 통합세액공제(최대 통합세액공제-이전증여에 대한 통합세액공제)를 차감하면 당해 연도에 납부해야 할 증여세가 산출된다.

2013년의 경우 $5,250,000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증여를 할 수 있다. 다만, 증여세에서 통합세액공제를 활용한 경우 그만큼 상속세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든다.

5. 신고

증여자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증여세법상 거주자인 경우 특정 수증자에게 연간

증여세 면제액(Annual Exclusion, $14,000)보다 많은 재산을 증여한 때에는 증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4월 15일까지 증여세 신고서(Form 709)를 제출하여야 한다.

증여재산의 가액이 연간 증여세 면제액보다 적더라도 부부가 함께 분할증여(Split Gifts)를 한 때에는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증여재산 또는 상속재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차익 계산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취득원가(Tax Basis)는 증여자의 원가(Carry-over Basis)이기 때문에 수증자가 소유한 기간에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취득원가(Tax Basis)는 상속받을 당시의 시가(Stepped-up Basis)가 되기 때문에 피상속인(사망자)의 생전에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결과가 된다.

7. 해외거주자로부터의 증여 및 상속 보고

미국 세법상의 미국인이 미국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로부터 연간 $100,000을 초과하여 증여나 상속을 받은 경우, 또는 $15,102(2013년 기준)을 초과하여 외국 법인 또는 외국 Partnership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다음해 4월 15일까지 소득세 신고 시에 Form 3520(Annual Return to Report Transactions with Foreign Trusts and Receipt of Certain Foreign Gifts)을 보고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Form 3520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월 지급받은 금액의 5%(최고 25%까지)에 상당하는 Penalty를 부과한다.

8. 주정부 증여세

Louisiana주가 2007년에 그리고 North Carolina주가 2008년에 증여세를 폐지한 이후 주정부 증여세는 Connecticut과 Tennessee 주에서만 부과되고 있다.

Ⅷ. 미국의 금융 관련 보고의무

Ⅷ. 미국의 금융 관련 보고의무

1. 해외 금융계좌 보고의무(Reports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거주외국인(구체적인 판정기준은 Q9 참조)을 포함한 미 세법상의 미국 거주자(개인),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신탁 등은 매년 6월 말까지 전년도(Calendar Year)의 어느 시점이든 모든 해외 금융계좌를 합하여 $10,000을 초과하여 보유한 적이 있었으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TD F 90-22.1(FBAR) 양식을 통하여 재무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10,000 초과 여부는 모든 해외 금융계좌의 잔고를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보고대상 계좌는 은행계좌, 투자계좌, 뮤추얼 펀드, 연금계좌, 증권계좌 등이다. 또한 본인의 계좌가 아니라도 계좌에 대한 서명권한을 가지고 있을 경우 미국 세법상의 예외규정에 포함이 안 되면 그 계좌 또한 보고대상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금융계좌'는 특정 금융기관의 소유권과 채권까지 포함하는, 아래 "5. 외국기관의 미국납세자 해외계좌 보고의무"에서 말하는 '금융계좌'보다는 그 포괄범위가 좁다.

FBAR 보고와는 별도로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와 거주외국인을 포함한 미 세법상의 미국 거주자(개인),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신탁 등은 매년 소득세 신고 시에 전 세계의 모든 수입을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개인과 파트너십의 경우 매년 4월 15일, 그 밖의 법인의 경우 3월 15일까지 제출하는 소득세 신고서에 해외 금융계좌가 있는지 여부를 밝히고(Form 1040 양식의 경우 Schedule B Part Ⅲ), 동 금융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소득 등을 세금계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해외 금융계좌와 관련하여 소득세 신고 및 FBAR 보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또는 형사상 강력한 벌칙이 가해진다.

2. 현금거래 보고(Currency Transaction Report, CTR)

미국에서 고객이 1일 $10,000을 초과하는 현금거래를 하는 경우 모든 금융기관들은 그 세부내용을 Bank Secrecy Act E-filing System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일의 의미는 은행 영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1일을 뜻하며, 공휴일이나 주말에 이루어지는 거래는 바로 다음 영업일에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거래금액의 $10,000 초과 여부는 동일 금융기관의 미국 내 모든 지점을 합산하여 판단하고, 하루에 여러 차례 거래가 있으면 그날의 모든 거래를 합산하여 판단한다. 현금거래라 함은 예금, 인출, 환전, 지급, 이체 등에 있어서 현금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Suspicious Activity Report, SAR)

미국 내 은행, 증권, 보험, 펀드, 카지노, 카드클럽 등은 고객의 자금의 원천이 불법적인 것이거나, 정당한 사업상 목적이 없거나, 자금거래가 불법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이 가는 경우 SAR(Suspicious Activity Report) 양식(FinCEN 111A)에 의해 FinCEN에 보고하여야 한다.

의심이 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해당 금융기관 등의 재량에 달려 있으나, 감독기관의 감사 시 SAR 보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인데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결정이 되면 엄한 벌칙을 받게 되므로 금융기관 등은 SAR 보고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서지 않는 한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이 SAR의 특징이다.

금융기관은 모든 고객의 프로필을 Customer Identification Program에 따라 자세하게 문서를 갖추어 보관하여야 하며, 수시로 새로운 정보로 보충하여야 한다. 고객의 프로필은 개인의 경우 여권, 운전면허 등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 생업, 수입 등 고객의 신분과 생계 수단을 잘 알 수 있도록 상당히 구체적인 정보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사업체의 경우는 영업의 종류와 내용, 최근 세금 보고서 등 사업체의 사업 내용, 매출, 경비의 규모 등을 잘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갖추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업소를 방문하여 수집된 정보를 확인하고 보충하여야 한다.

또한 현금거래 추정액과 은행에 입금 및 인출 예상액, 수표 거래 규모, 전신으로 송금 내지 수금하는 빈도 및 액수 등에 의한 정보를 받아 보관하고 심사하여야 한다. 심지어

대출을 할 때도 경제적으로 아주 의미 없는 대출은 일단 의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한다.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모든 고객을 위험부담의 상하에 따라 분류하고 위험부담이 높은 고객에 대해서는 정보수집의 폭과 빈도를 높여야 한다.

위와 같이 축적된 고객정보에 기초하여 비정상적인 의심스러운 거래를 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은 SAR 보고를 하여야 한다.

4. 해외 금융자산 보고의무(Foreign Financial Asset Reporting)

2010년 발효된 해외계좌 납세의무 이행법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에 따라 미국 세법상의 미국인 중 법인이 아닌 개인(즉, 시민권자, 영주권자, 거주외국인(구체적인 판정기준은 Q9 참조))이 정해진 한도를 초과하는 '특정 해외 금융자산'을 소유한 경우 매년 개인소득세 신고 시에 전년의 '특정해외 금융자산'에 대한 정보를 Form 8938(Statement of 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s)을 통해 IRS에 보고하여야 한다.

'특정 해외 금융자산'은 (1) 해외금융기관에서 관리되고 있는 모든 해외 금융계좌들과 (2) 금융계좌를 통해 관리되지는 않지만 투자목적으로 소유한, 거주 외국인이 아닌 외국 개인 및 외국 법인(비미국인)이 발행한 주식과 채권, 해외법인에 대한 모든 권리, 미국인이 발행인 또는 상대방(counterpart)이 아닌 금융계약이나 금융상품을 말한다. 따라서 은행계좌, 증권계좌, 주식, 채권, 합자회사에 관한 권리, 트러스트, 각종의 해외 파생상품 등이 특정 해외 금융재산에 해당한다.

즉, 종전 FBAR는 금융계좌(Financial Account)만 보고대상이었으나, FATCA에 따른 해외 금융자산 보고에 있어서는 보고대상 재산의 범위가 모든 금융자산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FBAR 보고의무가 없는 납세자의 경우에도 해외 금융자산 보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미혼자 그리고 기혼이지만 단독으로 세무신고를 할 경우에는 세무회계연도 최종일의 특정 해외 금융자산 총액이 $50,000을 초과할 경우 또는 일년 중 한번이라도 그 총액이 $75,000을 초과했을 경우 Form 8938을 제출하여야 한다. 미혼자 또는 단독으로 세금신고를 하는 기혼자의 경우라도 해외에서 거주할 경우 각각의 최저 한도액이 $200,000(최종일 총액)과 $300,000(연중 최고액)으로 증가한다.

미국 거주 기혼자로 부부가 공동으로 세무신고를 할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특정 해외 금융자산의 세무회계연도 최종일 총액이 $100,000을 초과하거나 연중 최고액이 $150,000을 초과하였을 경우 Form 8938을 제출하여야 한다.

해외에서 생활(living abroad)하면서 공동으로 세무신고를 하는 부부인 경우에는 한도액이 $400,000(최종일 총액)과 $600,000(연중 최고액)으로 증가한다. 미 시민권자의 경우 해외에서 생활(living abroad)하는 것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우선 'tax home'(일반적으로 tax home이란 납세자가 일하는 직장이나 소유한 사업장이 있는 도시나 지역을 말한다)이 외국에 있어야 하고, 세무회계연도 전기간 동안 타국의 "거주자"이었거나 세무회계연도의 최종일 이전 12개월 기간 중 330일을 해외에 체류하여야 한다. 미국 "거주자"의 경우에도 tax home이 외국에 있고 세무회계년도의 최종일 이전 12개월 기간 중 330일을 해외에 체류할 경우 해외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Form 8938 제출시에는 다음의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1) Form 8938에 보고되어야 할 금융자산과 Form TD F 90-22.1(FBAR)에 보고되어야 할 금융자산은 동일하지 않다. (2) 보고되어야 할 일부 혹은 전체 '특정 해외 금융자산'이 미국 국세청에 제출되는 다른 양식(예를 들면, Form 3520, 5471, 8621)에 기재될 경우에는 Form 8938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 (3) 금융자산의 평가액 산출에 주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공동 명의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부부가 각각 단독으로 세무신고를 할 경우 또는 배우자 외의 다른 사람과 공동 명의로 특정 해외 금융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소유권의 비율과는 관계없이 공동명의로 소유한 금융자산의 평가총액이 신고한도액 계산에 이용되어야 한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미국 국세청 웹사이트(www.irs.gov)를 보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의할 필요가 있다.

5. 외국금융기관의 미국납세의무자 해외계좌 보고의무

앞서 설명한 해외 금융자산 보고 의무와는 별개로 외국금융기관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FFI)들은 FATCA 규정에 따라 그들 금융 기관이 관리하는 특정 미국 세법상의 미국인이 소유한 금융계좌(financial account)나 특정 미국세법상의 미국인이 상당한 소유권(substantial ownership interest) (예: 의결권 또는 주식가치 기준으로

직간접적으로 10%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을 가지고 있는 외국 법인(foreign entities)(이를 "미국인소유 해외법인"이라고 함)이 소유한 금융계좌에 대한 정보를 미국세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예를 들면 고객이름, 주소, 납세자번호(TIN), 계좌번호, 계좌의 잔고 또는 금전가치(value) 그리고 더 나아가 계좌 소득과 이체 금액 등의 정보를 말한다.

'특정 미국세법상의 미국인'이란 '미국세법상의 미국인(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거주 외국인, 국내 파트너십, 국내법인, 국내 상속재단, 국내 신탁을 말함)' 에서 상장법인 및 그 계열사, 외국정부 100% 소유 국내법인 등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FATCA 규정의 대상이 되는 금융계좌 (financial account)는 그 정의가 광범위하여 commercial 계좌, checking 계좌, savings 계좌, investement certificate, certificate of deposit 등을 포함한 "저축형 (depository) 계좌"와 주식, 채권, 그 밖의 금융상품을 관리하는 "관리형 (custodial) 계좌" (예를 들면, 증권 계좌)는 물론이고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채권 그리고 특정 보험 상품 등을 포함한다.

FATCA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외국금융기관이 미 국세청과 특별 협약을 맺어야 하고 협약을 맺은 외국금융기관은 "참가"(participating) FFI 로서 그 FFI가 관리하는 계좌의 소유자 신원을 확인할 의무가 있고 또한 계좌의 소유자가 특정 미국세법상의 미국인인 경우나 미국인소유 해외법인인 경우 그 계좌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미 국세청에 매년 보고해야 한다.

더불어 "참가" FFI는 (1) 미국세청과 협약을 맺지 않은 FFI, (2) 미국세법상의 미국인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정보를 주지 않은 개인, 그리고 (3) 상당한 소유권을 가진 특정 미국세법상의 미국인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주지 않은 외국 법인에게 배당 등 미국 내 원천소득과 그러한 소득을 발생시키는 주식이나 채권을 매도하고 받은 금액을 지급할 경우 그들 금액에 대해 30% 원천징수를 할 의무가 있다.

2013년 1월 17일 발표되고 2013년 1월 28일부터 유효한 최종시행규칙(final regulations)에 의하면 FFI는 2015년(2015년에 보고할 금융계좌는 2013년분 및 2014년분 data임)부터 관리하고 있는 계좌와 계좌 소유자에 대한 정보 보고를 시작하고 점진적으로 보고 범위를 넓히도록 규정되어 있다. 2013년분(2014년분) data란 2013년(2014년) 중 해외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거나 2013년(2014년) 중 해지하는 금융계좌를 말한다.

최종시행규칙의 특정 미국세법상의 미국인 등과 관련된 참가 FFI의 정보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천징수 (Withholding tax – IRC Chapter 3)나 세금정보신고 (Information return – IRC Chapter 61) 목적상 "특정 세법상 미국인"이 소유한 계좌 (즉 "미국 계좌", U.S. account)로 확인되지 않은 기존의 계좌들 중 FFI 협약 발효일 현재 각각의 "참가" FFI별로 예치된 금융계좌 잔고나 금전가치(value)가 (한 FFI내에 다수의 금융계좌가 있는 경우 각 계좌의 잔고나 금전가치(value)를 모두 합한 총액이) 50,000불 (법인인 경우 250,000불) 이하인 경우 FATCA 보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참가" FFI는 이 예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금융계좌의 잔고나 금전가치(value)의 합계가 $50,000 이하인 경우에도, 그 소유주가 미국 납세 의무자임을 확인하고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계좌에 대한 정보를 미국세청에 보고를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기존"의 계좌란 일반적으로 2013년도 12월 31일 이전에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참가" FFI의 경우 미국세청과 맺은 FFI 협약 발효일 전에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그러나 FFI 협약 발효일이 2014년 12월 31일이거나 그 이전인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에 이전에 개설한 계좌에 대한 "미국 계좌" (즉, "특정 미국세법상 미국인"이 소유한 계좌임) 여부를 확인할 의무 (due deligence)가 있다.

아울러 FFI가 연중 (during a calendar year) 관리한 "기존"의 저축형 (depository account) 개인계좌의 경우 연도말 혹은 계좌해지 시점에 잔고나 금전가치(value)가 (한 FFI내에 다수의 계좌가 있는 경우 각 계좌의 잔고나 금전가치를 모두 합한 총액이) $50,000 이하이면 FATCA 보고대상에 해당되는 "미국계좌"의 정의에서 벗어나고, 따라서 그 계좌를 관리하는 "참가" FFI는 그 계좌에 대한 확인의무(due diligence)가 없다. 그러나 "참가" FFI는 이 예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잔고나 금전가치가 $50,000 이하인 저축형 계좌의 경우에도 그 소유주가 미국 납세 의무자임을 확인하고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계좌에 대한 정보를 미국세청에 보고를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기존"의 계좌 중 잔고나 금전가치(value)가 (한 FFI내에 다수의 금융계좌가 있는 경우 각 계좌의 잔고나 금전가치를 모두 합한 총액이) $50,000을 초과하고 (그러나 FFI가 원하면 $50,000을 초과하지 않는 계좌에 대해서도) $1,000,000 이하인 경우에는 컴퓨터 파일 검색만을 통해 계좌의 "미국관련 징표(US Indicia)"를 확인한다. 미국관련 징표는 신분증, 출생지, 미국 내 주소, 미국 내 전화번호, 미국으로 자금을 송금하도록 한 지시사항, 미국 내 주소가 있는 대리인 존재 여부이다. 계좌의 미국 관련이 확인되면 계좌 소유주가 특정 미국세법상의 미국인 등인지를 확인하고 그러한 경우 계좌 소유주의 이름과

주소, 납세자번호(TIN), 계좌번호, 계좌잔고나 가치, 그리고 특정 예외사항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입출금 액수를 미국 국세청에 보고한다.

이외에 참가 FFI는 신분확인 요청을 했으나 정보제공을 거부한 계좌보유자(recalcitrant account holder)의 계좌 수와 계좌 잔고나 금전가치 합계액을 미국 국세청에 보고한다.

"기존"의 계좌중 FFI 협약 발효일이나 발효일 이후 각 연도말의 계좌 잔고나 금전가치(value)가 (한 FFI내에 다수의 금융계좌가 있는 경우 각 계좌의 잔고나 금전가치를 모두 합한 총액이) $1,000,000를 초과할 경우에는 컴퓨터 파일을 검색하고 서류를 수동으로 직접 검색해서 계좌의 미국관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참가" FFI는 "기존"의 계좌 이외의 모든 계좌 (즉, 신설 계좌)에 대해서는 각 계좌가 "미국 계좌"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참가" FFI가 2015년 3월 31일까지 해야 하는 2013년과 2014년분 data 보고에는 미국 납세의무자 소유의 계좌에 관해서 소유주의 성명, 주소, 납세자번호(TIN), 계좌번호, 계좌 잔고(또는 금전가치)만을 미국 국세청에 보고하면 된다. 2016년(2015년 data 보고)을 기점으로 계좌 소득과 거래금액을 포함한 모든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다만, 소재국 외에 사업장이 없고, 소재국 외에서 계좌 소유주 모집활동을 안 하며 소재국 거주자가 보유한 계좌가 전체 계좌의 98% 이상 차지하는 지방은행(Local FFIs)이 IRS에 별도로 등록하는 경우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은 참가 FFI처럼 FATCA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FATCA 보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된다.

FATCA에 관련하여 최종시행규칙과 일부 차이가 있는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 "국가간 협정" (Intergovernmental Agreement)이 미국과 그 밖의 국가간에 이미 체결되었거나 체결을 위한 협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만약 한국과의 "국가간 협정"이 체결된다면 이미 체결되어 있는 미국과 다른 국가간의 협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계좌 정보 수집과 수집된 정보의 전달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고 또한 FATCA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는 한국의 금융기관들이 열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은 "국가간 협정"의 두가지 종류 (Model 1 and Model 2) 중에서 FFI가 계좌 정보를 미국세청이 아닌 해당 국가의 세무당국에 보고하고 그 세무당국이 미국세청으로 수집된 계좌 정보를 전달하는 구조인 Model 1 타입의 협정이 체결된 경우에는 협정체결국의 FFI는 FATCA 최종시행규칙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한미간의

"국가간 협정"이 Model 1 타입으로 될 경우 한국에 있는 금융기관은 FATCA 최종시행 규정이 아닌 "국가간 협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Model 2 타입이란 외국금융기관이 미국세청에 수집된 계좌정보를 직접 보고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제3차 해외 자진신고 프로그램(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 OVDP)

미국 국세청은 2012년 1월 9일 미국 납세 의무자에 대한 제3차 해외 자진 신고 프로그램(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을 발표하였다. 제3차 프로그램은 2009년의 제1차 그리고 2011년의 제2차 프로그램과 기본적인 맥락을 같이한다. 2009년과 2011년의 프로그램에는 33,000여 명이 참여하였다.

그러나 앞선 두 프로그램과는 달리 제3차 프로그램은 그 참여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미 국세청이 임의로 프로그램을 마감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제3차 프로그램 하의 자진신고에 따른 페널티는 제 1, 2차 프로그램의 페널티 형태나 페널티율과 그 전체적 구조를 같이 하지만 FBAR 미신고에 대한 최고 페널티율은 2011년도의 25%에서 2.5% point 오른 27.5%이다. 제3차 프로그램에서는 자진신고 이전의 8년의 과세 기간 중 가장 높은 해외 은행계좌 누계 잔액 혹은 가장 높은 해외자산 누계 가액의 27.5%를 페널티로 지불해야 한다.

또한 이번 제 3차 자진신고 프로그램 참가자는 지난 모든 8년간의 세무신고서 원본 및 수정 세무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난 8년간 신고하지 않은 해외 소득에 대한 세금 그리고 세금 불성실 신고에 대한 가산세와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 5%와 12.5%의 페널티율이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인의 경우 거주국의 세법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할 경우 5% FBAR 페널티율 적용이 가능할 수 있으며. 제3차 OVDP가 적용되는 과세기간 동안에 해외계좌 또는 해외자산의 최고금액이 75,000달러를 초과하지 않은 사람은 12.5%의 페널티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

제2차 프로그램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 국세청은 납세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외 부동산, 미술품, 보석 등 비금융 자산 ("그 밖의 해외 자산") 또한 세금 미신고와 관련이 있을 경우 27.5% 페널티 계산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할 것이다. 앞서 말한 5% FBAR 페널티가 적용될 경우 "그 밖의 해외 자산"은 페널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미 국세청이

제시한 페널티 형태와 페널티율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앞으로 일부 또는 전체 해당 납세의무자에 대해 페널티 형태와 페널티율이 변경될 수 있다. 페널티가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납세자는 그 대신 세무조사를 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미국 국세청 웹사이트(www.irs.gov)를 보거나 세무전문가와 상의할 필요가 있다.

Ⅸ. 미국의 국적포기세 과세제도

Ⅸ. 미국의 국적포기세(Expatriation Tax) 과세제도

1. 적용대상

기존의 국적포기세에 관한 법률을 보완하여 2008.6.17.부터 적용되어온 현행 국적포기세는 특정 미국 시민권자 또는 특정 영주권자가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포기할 경우 국적포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세계의 모든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가정하여 국적포기세(Expatriation Tax)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미국 시민권자 또는 국적포기일 직전 15년 중 최소 8년 이상 세법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였던 영주권자로서 아래와 같은 기준에 해당하는 고소득자, 대재산가 또는 국적포기전 5년간 미국세법을 충실히 준수했음을 증명할 수 없는 자이다. 다만, 이중국적자 또는 미성년자 중 국적포기일 직전 10년 동안 미국에 연간 30일 이상 체류한 사실이 없는 자 등 사실상의 외국인은 제외한다.

여기서 고소득자는 국적포기일 직전 5년간의 평균 소득세 납부액이 일정 금액(2013년 출국자의 경우 $155,000)을 초과하는 자를 의미하며, 대재산가는 국적포기일 현재 순자산가액(Net Worth)이 $2,000,000 이상인 자를 의미한다.

소득세 납부액의 경우 매년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한 후의 소득세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고, 순자산가액의 경우 국적포기일 현재의 시장가치(Fair Market Value)를 기준으로 현금, 예금, 증권, 부동산, 무형자산 등 전세계에 보유하는 모든 재산(미국에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한국 등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서 부채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2. 과세방법

국적포기일 현재 전세계에 보유하는 모든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가정하여 Capital Gain을 산출한 후, Capital Gain에 대한 소득세 과세방법에 의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다만, 2013년의 경우 Capital Gain $668,000 까지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보유기간 1년 이하 재산은 일반 소득세율(10%~39.6%)을, 보유기간 1년 초과 재산은 우대세율(최고 20%)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며, 일반 소득과 함께 다음해 4월 15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재산별로 본인의 사망일 또는 재산의 양도일까지 과세를

연기할 수 있으나, 납세담보(Security)를 제출하여야 하고, 과세 연기일까지의 이자를 부담하여야 한다.

3. 보고의무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국적포기자는 과거 5년 동안 미국세금을 성실히 납부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그러지 못할 경우 $2,000,000의 순자산기준 혹은 $155,000의 평균소득세 납부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국적포기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국적포기자는 이러한 성실납세를 증명하기 위하여 국적포기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4월 15일까지 소득세 신고서(Form 1040) 및 국적포기일을 기준으로 한 Form 8854 (Expatriation Information Statement)를 보고하여야 한다.

국적포기일 현재 고소득자 또는 대자산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 국적포기세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보고의무가 있다.

4. 유의사항

소득세 납부액 $155,000 초과, 순자산가액 $2,000,000 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국적포기세 적용대상이 된다. 따라서, 소득이 적더라도 재산이 많으면($2,000,000 이상) 국적포기세 적용대상이 된다. 미국에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재산도 국적포기세 과세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민 오기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한국에 있는 재산도 순자산가액 $2,000,000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포함되고, 국적포기일 현재 시장가치로 양도한 것으로 가정하여 국적포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미국에 있는 재산으로서 국적포기세 과세대상이 된 재산을 나중에 양도하였을 경우 국적포기세를 계산할 때의 시장가치로 취득가액을 조정한다. 예를 들어 미국에 있는 주택을 2001년에 $500,000에 취득하였는데, 2013년에 국적을 포기할 때의 시장가치가 $1,000,000인 경우 Capital Gain $500,000($1,000,000 – $500,000)이 최소과세소득 $668,000보다 적으므로 국적포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 주택은 2013년 국적포기시에 양도차익이 국적포기세 산출에 포함되었으므로 이 주택을 2015년에 $1,700,000에 양도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이 때는 취득가액을 $1,000,000로 조정하여 Capital Gain $700,000($1,700,000 – $1,000,000)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X. 2013년 미국 세법 변화 내용

X. 2013년 미국 세법 변화 내용

"The American Taxpayer Relief Act of 2012"에 의거한 몇몇 주요 세법 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The American Taxpayer Relief Act of 2012"에 의거한 몇몇 주요 세법 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의 경우 $400,000,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신고를 하는 경우 $450,000을 초과하는 소득(taxable income), 즉 과세표준을 말함에 적용되는 일반소득에 대한 최고 세율(rate on ordianry income)은 2013년 1월 1일자로 39.6%로 원상 복귀되었다.

2) 1년 이상 장기투자 소득자산에 대한 양도세율 (rate on capital gain) 또한 위에 언급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15%에서 20%로 높아졌다.

3) 특정 배당소득(qualified dividends income)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장기투자에 대한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4) 상속, 증여세와 세대생략세의 통합세액공제에 따른 면세한도(면세상당금액)는 2011년도 $5,000,000를 기준으로 인플레이션과 연동되도록 되어 2013년의 경우 $5,250,000이고 면세한도를 넘는 금액에 대한 세율은 35%에서 40%로 인상되었다.

5) 통합세액공제 외에 적용되는 연간 증여세 면제액은 2013년의 경우 $14,000 이다.

6) 개인의 경우 소득(Adjusted Gross Income)이 $250,000 이상 그리고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 신고하는 경우 소득이 $300,000 이상인 경우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가 줄어들었고 또한 개별공제액(itemized deduction) 한계가 적용되어 실제 세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7) Social security tax 세율은 2012년까지 적용되었던 2%포인트 감세 혜택이 없어지면서 4.2%에서 다시 6.2%로 되었다.

또한 2010년에 발효된 "the Affordable Care Act"에 포함된 3.8%의 '투자소득'세가 올해부터 개인의 경우 소득(Adjusted Gross Income)이 $200,000 이상인 경우 그리고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신고를 하는 경우 소득이 $250,000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투자소득'이란 이자, 배당, 임대소득, Royalty, 양도소득(capital Gain) 등을 포함한 수동적 소득(passive income)이며 3.8% 세율은 1) 투자소득액이나 2) 소득액(Adjusted Gross Income)이 한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즉, 소득액 – $200,000, 개인인 경우) 중 적은 금액에 적용된다.

제 2 장 자주 물어보는 질문과 답변 (FAQ)

Ⅰ. 금융자산 투자 관련 / 79

Ⅱ. 부동산 투자 관련 / 107

Ⅲ. 양도소득세 관련 / 125

Ⅳ. 상속세 관련 / 155

Ⅴ. 증여세 관련 / 179

Ⅵ. 한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관련 / 203

Ⅶ. 미국의 국적포기세 과세제도 관련 / 209

Ⅷ. 일반세무 안내 / 213

Ⅰ. 금융자산 투자 관련

Ⅰ. 금융자산 투자 관련

Q 1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국내 은행에 본인 명의 계좌를 만드는 경우 어떤 종류의 계좌를 만들 수 있으며, 각각의 특징은 무엇인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비거주자)는 국내에 다음과 같은 예금계좌를 만들 수 있으며, 각 계좌의 특성에 따라 예치 및 회수절차가 다르다.

(1) 비거주자 대외계정 : 외화예금 계좌로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들여온 외화, 기타 해외송금이 가능한 외화를 예치하는 계좌이다. 별도의 증빙 없이 외화로 해외에 송금하거나 다른 외화계정으로 이체 등이 가능하다.

(2) 비거주자 원화계정 : 원화예금 계좌로서 국내에서 취득한 원화를 예치하는 계좌이다. 국내에서 원화로 인출하거나, 다른 원화계좌에 자유롭게 이체할 수 있다. 향후 한국을 방문하거나 한국에서 사업 등을 이유로 원화로 인출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기 편리한 계좌이다. 외화로 환전하고자 할 때 자금출처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나, 최초 입금할 때 교부받은 외국환매각증명서를 통해 자금출처를 입증하면 된다.

(3) 비거주자 자유원계정 : 원화예금 계좌로서 국내에서 예금을 인출하지 않고 이자소득 획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들여온 외화 등의 원화 환전, 원화 경상거래 대금 예치, 본인 명의의 다른 원화계정으로부터 이체가 가능하며, 해외송금, 원화 경상거래 대금 지급, 본인 명의의 다른 원화계정으로 이체, 원화대출 등이 가능하다. 향후 별도의 증빙 없이 외화로 환전하여 회수할 수 있으나, 수시로 출금하여 사용하기 어려운 계좌이다.

한편, 비거주자가 한국내 은행에 외화를 송금하여 예금 또는 신탁할 경우 금액상 제한은 없으며, 자금출처가 명확하면 향후 원금, 이자 등을 미국으로 송금하는데 있어서 금액상 제한은 없다.

관련법령 ▫ 외국환거래규정 제7-8조(계정에의 예치), 제7-9조(계정의 처분)

Q 2 국내에 가지 않고 해외에서 국내 은행에 본인 명의 계좌를 만드는 방법은 없는가?

국내의 대리인을 통해서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대리인을 통하여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의 실명확인증표(여권, 외국인투자등록증), 단, 대리인이 개설하는 경우 실명확인증표 사본도 가능

(2)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3) 공증을 받은 위임장 또는 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확인한 위임장

한편, 일부 한국계 은행 미국 지점에서는 계좌개설에 필요한 본인의 실명확인을 미국 현지에서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본인의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고 한국계 은행 미국 지점을 직접 방문하여 계좌개설에 대하여 상담하면 된다.

관련법령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Q 3 재외동포가 국내로 송금할 경우 한국 또는 미국 국세청에 자료가 통보되는가? 소액으로 쪼개거나 또는 여러 사람 이름으로 나누어 송금하는 경우 자료통보를 피할 수 있는가?

미국에서 송금을 중개하는 금융기관은 의심스러운 거래가 행해지거나 시도되었을 때, 또는 $10,000를 초과하는 현금거래가 있었을 때 FINCEN 또는 IRS에 보고하여야 한다.

한국의 경우 건당 미화 $10,000를 초과하는 금액이 국내로 송금될 경우 해당 외국환은행이 한국은행을 경유하여 국세청에 통보한다.

위와 같은 자금거래 보고(통보)는 국제적으로 표준적인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것으로서 정상적인 자금거래에 있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금액을 소액으로 쪼개거나, 여러 사람 이름으로 나누어 송금하는 경우 한국에서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3호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고, 의심스러운 금융거래로 보아 미국 FINCEN 또는 한국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되거나,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변칙적인 송금이 탈세 · 테러 · 조직범죄 · 마약 · 밀수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자금세탁범죄(Money Laundering)에 해당되어 벌과금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내 송금 자금에서 발생한 소득을 적법하게 IRS에 신고하지 않으면 탈세와 자금세탁범죄가 동시에 성립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 외국환거래규정 제4-8조(국세청장 등에 대한 통보) 제1항 제3호
- 31 CFR 103.18 및 USC 5318(g), 31 CFR 103.22 및 31 USC 5313(a), 31 CFR 103.24 및 31 USC 5314

Q 4 국내로 송금할 때, 보내는 사람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하는 경우 (다른 사람 명의를 빌리는 경우) 문제점은 무엇인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본인의 자금을 국내로 송금하면서 송금자를 다른 사람 명의로 하는 경우 거래를 중개하는 금융기관은 의심스러운 금융거래로 보아 미국의 FINCEN 또는 한국의 FIU에 SAR(Suspicious Activity Report) 또는 STR(Suspicious Transaction Report)을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SAR 또는 STR 보고가 되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하는 경우 그것이 탈세 · 테러 · 조직범죄 · 마약 · 밀수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자금세탁범죄(Money Laundering)에 해당되어 벌과금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내 송금자금에서 발생한 소득을 적법하게 IRS에 신고하지 않으면 탈세와 자금세탁범죄가 동시에 성립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하는 경우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뿐 아니라 송금한 자금을 향후 해외로 다시 송금하는 경우에 있어서 국내로 송금되어 온 자금의 출처가 문제될 수도 있으므로 처음부터 송금자 본인의 명의로 송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법령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Q 5 국내의 친인척 등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할 경우 문제점은 무엇인가? 계좌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본인의 자금을 국내로 송금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국내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할 수 있다.

그러나 본인이 국내에서 사용할 자금을 송금 편의상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의심스러운 금융거래로 보아 거래를 중개하는 금융기관이 미국의 FINCEN 또는 한국의 FIU에 SAR(Suspicious Activity Report) 또는 STR(Suspicious Transaction Report)을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SAR 또는 STR 보고가 되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이용할 경우 그것이 탈세 · 테러 · 조직범죄 · 마약 · 밀수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자금세탁범죄(Money Laundering)에 해당되어 벌과금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내 송금 자금에 따른 소득을 적정하게 IRS에 신고하지 않으면 탈세와 자금세탁범죄가 동시에 성립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본인의 자금을 국내의 친인척 등의 계좌로 송금한 후 그 자금을 송금한 사람이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없으나, 송금한 금전을 3개월 이내에 돌려주지 않고, 계좌 명의자가 사용 또는 보유하거나 재산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과 미국에서 증여세가 과세된다.

위와 같이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송금한 자금을 계좌 명의자가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도 있는 등 위험부담이 크므로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Q 6 국내의 친인척에게 자금을 빌려주고자 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한국내의 친인척(예: 부모, 자녀)에게 자금을 빌려주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국내의 친인척이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한 후, 동 은행을 경유하여 한국은행(중앙은행)에 금전대차계약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해야만 국내의 친인척이 송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금전대차계약 신고 시에는 (i) 거래사유서, (ii) 금전대차계약서, (iii) 대주(빌려주는 사람) 및 차주(빌리는 사람)의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한국은행에 금전대차계약을 신고한 경우에는 향후 재외동포에게 원금과 이자를 송금할 때 별도의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다.

한국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한 경우 한국에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재미동포의 경우 이자소득의 13.2%)를 납부하여야 하며, 미국에서는 동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미국에서 세액계산을 할 때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관련법령

▫ 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거주자의 외화자금 차입) 제4항

Q7 미국의 해외계좌 보고의무(Form TD F 90-22.1 FBAR)의 내용,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Penalty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거주외국인 등 미국세법상 미국인이 해외에 금융계좌(은행계좌는 물론 파생상품, 뮤추얼펀드를 포함한 증권계좌, 일정한 종류의 연기금계좌 등)를 가지고 있고, 1역년(Calendar Year) 동안 어느 시점이든 모든 해외 금융계좌 잔고의 합계액이 $10,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재무부에 Form TD F 90-22.1(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oounts. FBAR)을 제출하여 그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4월 15일까지 미국 국세청에 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소득세 신고서식(Form 1040)의 Schedule B, PartⅢ에 계좌보유사실을 보고하고(Yes에 표시 및 보유국가 기재), 동 계좌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별도의 해외 금융자산 보고 (Foreign Financial Asset Reporting) 규정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시 Form 8938을 첨부해 해외계좌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Form TD F 90-22.1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의가 없으면(Non-Willful) 계좌당 $10,000, 고의가 있으면(Willful) $100,000와 계좌 최대잔고의 50% 중 많은 금액이 Penalty로 부과된다(매년 부과).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등 미국세법상 미국인은 해외 금융계좌($10,000 초과여부에 관계없음)에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Capital Gain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외에서 세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다시 다음해 4월 15일까지 동 소득을 미국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소득액을 누락하여 소득세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누락된 소득에 대한 세금과 그에 대한 이자, 그리고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 US Bank Secrecy Act; 31 U.S.C. § 5321(a), § 5322(a), 31 C.F.R. § 103.59, 18 U.S.C. § 1001;
- IRS Form TD F 90-22.1,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FBAR)
- IRS Form 8938 Statement of 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s

Q 8 미국에서 번 것이 아니고, 이민 오기 전부터 한국에서 가지고 있던 자금을 예치한 금융계좌인데도, 미국에 FBAR 보고의무가 있는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해외에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고, 1역년(Calendar Year) 동안 어느 시점이든 모든 해외 금융계좌 잔고의 합계액이 $10,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계좌에 예치된 자금을 미국에서 번 것이든 해외에서 번 것이든 상관없이 모두 FBAR 보고를 하여야 한다.

□ 보고의무 예시

□ 이민 오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아파트 월세가 통장에 들어오고, 잔고가 $10,000를 넘은 경우 : 미국 국세청에 월세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고, 계좌보유 사실 및 Form TD F 90-22.1 보고를 하여야 함

□ 한국의 계좌에 $100,000 상당을 송금한 후 곧바로 인출하여(이자소득 없음) 아파트를 산 경우 : 계좌보유 사실 및 Form TD F 90-22.1 보고만 하면 됨

□ 한국에서 아파트를 판 돈 $100,000 예금해 놓고 있는 경우(이자소득 있음) : 미국 국세청에 아파트 양도소득 및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신고하고, 계좌보유 사실 및 Form TD F 90-22.1 보고를 하여야 함

□ 상속받은 아파트를 전세 주고 있는 경우 : 전세금 자체는 세입자에게 반환할 채무로서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으나, $10,000이 넘는 전세금을 예금한 경우 계좌보유 사실 및 Form TD F 90-22.1 보고의무가 있으며, 부동산의 경우 Form TD F 90-22.1 보고 의무는 없음

관련법령

□ IRS Form TD F 90-22.1,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FBAR)
□ 31 USC § 5321(a)(5); 31 USC § 5322(a); IRC § 7203, 7206, 7207; 31 Code of Federal Regulations(CFR) § 103.24

Q 9 내국법인의 미국 지사 또는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은 한국에 있는 금융계좌에 대하여 미국에서 FBAR 보고를 하여야 하는가?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미국에서 사업 또는 직장근무를 하는 거주 외국인 등 미국세법상 미국인이 해외에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고, 1역년(Calendar Year) 동안 어느 시점이든 모든 해외 금융계좌 잔고의 합계액이 $10,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FBAR 보고를 하여야 한다.

미국 세법에서는 (1)과 (2) 및 (3)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미국세법상 미국인으로 보나, 예외적으로 (4)에 해당하는 경우 미국세법상 미국인이 아니라고 판정할 수 있다.

(1) 미국 시민: 미국 시민은 미국세법상 미국인이다

(2) Green Card Test :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 거주자로서 미국세법상 미국인이다.

(3) Substantial Presence Test : 미국 영주권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외국인이 일정 기간 이상 미국체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거주외국인(resident alien)으로 미국거주자로 본다. (2013년 소득세 신고 시의 거주자 기준 : ① 2012년에 31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고, ② 미국 체류 기준일수가 2012년(체류일수의 100% Count), 2011년(1/3 Count), 2010년(1/6 Count) 3년을 합하여 183일 이상인 경우)

(4) 다만, 위 (3)의 체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연도 중 미국에서 체류한 일수가 183일 미만이고, 당해 신고대상연도에 외국에 tax home(가족이 사는 주거지인 family home이 어디이든 관계없이 사업의 주된 장소, 고용 혹은 근무 장소를 말하나, 일의 성격상 일상적인 혹은 주된 사업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사는 장소를 말함)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보다도 tax home이 있는 외국과 보다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경우(예: 외국이 가족거주지, 개인은행업무 수행지, 운전면허증 발급지 등임을 소명) form 8840을 제출하여 소명하여야 함

더 나아가 미국세법은 영주권자 및 외국인이 미국 세법에 의해 미국거주자가 됨과 동시에 외국 세법에 의해 외국거주자가 됨으로써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조약에 의해 거주지국을 판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즉, 어느 개인이 미국세법에 의해 미국 거주자도 되고 한국세법에 의해 한국 거주자도 되어(한국세법의 거주자 판정기준은 FAQ #41 참조) 이중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미조세조약 제3조에 따라 ① 주거(Permanent Home)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 ② 양국에 주거를 두고 있거나 양국에 주거가 없는 경우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국가(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Center of Vital Interest)의 거주자, ③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느 국가에도 없거나 결정될 수 없을 경우 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 ④ 양국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어느 국가에도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시민권(Citizenship)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 ⑤ 동 개인이 양국의 시민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양국 중 어느 국가의 시민도 아닌 경우에 양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 등의 순으로 어느 국가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한미조세조약 제3조에서 말하는 주거는 어느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미국시민권자의 경우에는 한미조세조약의 거주자판정기준에 의거 한국 거주자에 해당되더라도 전세계에서 얻은 소득을 매년 미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한미 조세조약 제4조 제4항 참조) 다만, 이중과세방지를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허용한다.

따라서, 내국법인의 미국 지사 또는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으로서 위 3)에 의거 미국 내 체류기간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고 가족과 함께 미국에 거주하는 경우 세법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FBAR 보고의무가 있다.

관련법령

- 31 C.F.R. § 103.11(z)
- IRC § 7701(b)
- IRS Form TD F 90-22.1,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FBAR)

Q 10 한국에 있는 금융계좌 잔고의 합계액이 $10,000을 초과하였는데, 미국에서 소득세 신고 및 FBAR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어떤 페널티를 받는가?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거주외국인 등을 포함한 미국세법상 미국인이 해외에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고, 1역년(Calendar Year) 동안 어느 시점이든 모든 해외 금융계좌 잔고의 합계액이 $10,000을 초과하였는데, 이에 대한 소득세 신고 및 FBAR 보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잘못된 신고(보고)를 하는 경우 엄격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불이익 및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민사상 제재(Civil Penalties)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소득세 신고시 소득액을 적게 보고하여 세금액이 누락된 경우 : 누락된 세금 및 그에 대한 이자 상당액

(2) 신고불성실 가산세(Accuracy-related Penalty) : 누락된 세금의 20% 가산세

(3)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탈세한 경우 : 누락된 세금의 75% 이하 가산세

(4) FBAR 페널티 : 고의가 없는 경우(Non-Willful) 계좌당 $10,000, 고의가 있는 경우(Willful) $100,000와 계좌 최대잔고의 50% 중 많은 금액(매년 부과)

형사상 제재(Criminal Penalties)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세포탈 (tax evasion) 페널티: $250,000 이하의 벌금 및(또는) 5년 이하의 징역

(2) False Return (소득세 고의 허위 신고) 페널티: $250,000 이하의 벌금 및(또는) 3년 이하의 징역

(3) 소득세 고의 미신고 페널티: $100,000 이하의 벌금 및(또는) 1년 이하의 징역

(4) FBAR 페널티: $500,000 이하의 벌금 및(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관련법령

- 31 U.S.C. 5321(a)(5)
- 26 U.S.C. § 7201; 26 U.S.C. § 7206(1); 26 U.S.C. § 7203; 31 U.S.C. § 5322.

Q11 미국의 해외 금융자산 보고의무(Form 8938)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어떤 페널티를 받는가?

미국 세법상의 미국인(시민권자, 영주권자, 거주외국인)이 해외 금융자산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10,000의 페널티가 부과되며, 미국 국세청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각각 30일이 경과할 때마다 $10,000씩 증가하여 최고 $50,000까지의 페널티가 부과된다. 그러나 추가적인 $10,000의 페널티가 발생되기 전에 미국 국세청이 제출요구 통지를 한 날로부터 90일의 유예기간(grace period)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보고되지 않은 해외금융자산으로부터의 소득이 세무신고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세금 미납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페널티로 부과될 수 있다. 세금미납이 사기(fraud)에 의한 경우 세금미납액의 75%에 해당하는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다.

더불어 Form 8938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일부 혹은 전체 해외 금융자산을 보고에서 누락한 경우, 또는 해외금융자산과 관련된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납한 경우 각각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Form 8938의 제척기간(Statutes of limitation)은 form 8938이 제출된 후 3년 후에 종료되며, 만약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 제척기간은 종료되지 않는다.

관련법령

- IRC § 6038D

Q12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국내의 펀드, 증권 등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내의 펀드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펀드투자는 금융기관과 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 있어야 하며, 인감 날인 또는 서명으로 펀드 거래가 가능하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국내의 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에 '증권투자전용 외화계정'과 '증권투자전용 원화계정'을 만든 후에, 증권회사에 위탁계좌를 개설하고 거래하면 된다.

다만,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외국인 투자등록(투자등록신청서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 등을 첨부하여 등록신청)을 먼저 하여야 한다.

국내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등록이 면제된다. 또한 내국민대우외국인(국내에 있는 영업소,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자)의 경우에도 투자등록이 면제된다. 즉, 이 경우에는 투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이 '증권투자전용 외화계정'과 '증권투자전용 원화계정'을 만든 후, 증권회사에 위탁계좌를 개설하여 거래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경우(투자금액이 5천만 원 이상으로 국내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혹은 임원선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주식취득은 물론 투자금액, 투자비율 변경 시에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 외국환거래규정 제7-32조(비거주자의 증권취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8조(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거래의 제한), 금융투자업규정 제6-10조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내지 제8조 (외국인투자절차)

Q13 국내의 예금계좌에서 이자가 발생한 경우 한국 또는 미국에서 어떤 납세의무가 있는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소유하는 국내의 예금계좌에서 이자가 발생한 경우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은 13.2%(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된다.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만기가 되어 현실적으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이자를 원본에 가산하는 경우에는 그 원본에 가산한 날, 해약으로 인하여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해약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에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미국 납세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미국에서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한국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 해 4월 15일까지 동 이자소득을 미국 내의 소득과 합산하여 미국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미국에서 소득세액를 계산할 때 한국에서 납부(원천징수)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소득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원천징수)하였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자를 원본에 가산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등은 이자를 현실적으로 받지는 않았지만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이므로 미국 국세청에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해외에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고, 1역년(Calendar Year) 동안 어느 시점이든 모든 해외 금융계좌 잔고의 합계액이 $10,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도 중에 그 잔고의 합계액이 최대 $10,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4월 15일까지 미국 국세청에 소득세를 신고할 때 소득세 신고서식(Form 1040)의 Schedule B, Part Ⅲ에 계좌보유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Yes에 표시 및 보유국가 기재), 6월 30일까지 재무부에 Form TB F 90-22.1을 제출하여 그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별도의 해외 금융자산 보고 (Foreign Financial Asset Reporting) 규정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시 Form 8938을 첨부해 해외계좌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관련법령

- IRC § 61
-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 소득세법 제119조(국내원천소득)
- 소득세법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 한미조세조약 제13조(이자)

Q14 국내의 채권에 투자하여 얻는 이익은 세법상 어떻게 분류하며, 한국 또는 미국에서 어떤 납세의무가 있는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채권에 투자하여 얻는 다음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분류하며, 한미조세조약에 의하여 한국에서 지급하는 자가 13.2%(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4)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채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은 Capital Gain으로 분류하며(보유기간에 발생한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분류), 한미조세조약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 납세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채권에 투자하여 이자소득 또는 양도소득(Capital Gain)을 얻은 경우 다음 해 4월 15일까지 동 소득을 미국 내의 소득과 합산하여 미국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미국에서 소득세를 계산할 때 한국에서 납부(원천징수)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미국 소득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 소득세를 납부(원천징수)하였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 IRC § 61, 901
-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 소득세법 제119조(국내원천소득)
- 소득세법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 소득세법 제156조의3(비거주자의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 한미조세조약 제13조(이자)
- 한미조세조약 제16조(양도소득)

Q 15 국내의 주식에 투자하여 얻는 이익은 세법상 어떻게 분류하며, 한국 또는 미국에서 어떤 납세의무가 있는지?

국내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동 주식 소유자에게 법인(주식발행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의 일부를 분배하는 경우가 있는데, 동 분배금은 배당소득(Dividend)에 해당된다. 비거주자에게 배당을 하는 경우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이 배당액의 16.5%(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된다.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차액은 Capital Gain에 해당된다. 한국 증권시장(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으로서 장내에서 소위 소액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한국 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한국 세법상 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연간 183일 이상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한 미국 거주자의 지위에서 얻은 주식 양도소득이기 때문에 한미조세조약 제16조에 의거하여 한국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의 주식에 투자하여 양도소득을 얻었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게 된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등 미국세법상 미국인은 일반적으로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미국에서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국내에서의 과세여부에 상관없이 국내 배당소득이나 양도소득에 대하여 다음 해 4월 15일까지 미국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미국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미국 소득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관련법령

- IRC § 61, 901
- 한미조세조약 제16조(양도소득)

Q16 국내의 펀드에 투자하여 얻는 이익은 세법상 어떻게 분류하며, 한국 또는 미국에서 어떤 납세의무가 있는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내의 펀드에 투자하였는데, 동 펀드가 직접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 벤처기업의 주식, 상장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얻은 이익은 Capital Gain으로 분류하며, 펀드로부터 동 Capital Gain을 분배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동 펀드가 다른 상품에 투자하여 이익을 얻은 것을 분배받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분류한다. 비거주자가 한국에서 배당소득을 얻은 경우 납세의무가 있으며, 배당금을 지급하는 자가 16.5%(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된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등 미국세법상 미국인은 일반적으로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미국에서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한국의 펀드로부터 Capital Gain 또는 배당소득을 분배받은 경우 다음 해 4월 15일까지 동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미국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으로 소득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한국의 펀드로부터 분배받은 이익 중 Capital Gain에 해당하는 부분이 한국에서는 과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과세소득이므로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피지배외국법인(Controlled Foreign Company)으로 분류되는 역외펀드, Passive Foreign Investment Company(PFIC)로 분류되는 역외펀드, 파트너십으로 분류되는 역외펀드, 위임신탁(Non Grantor Trust)으로 분류되는 역외펀드 등에 투자한 미국 납세자는 동 펀드가 현실적으로 이익의 분배 또는 배당을 하지 않더라도 동 펀드의 소득 중 일정 부분을 소득으로 인식하여 매년 소득세 신고 시 과세소득에 포함시켜 신고하여야 한다. 펀드는 일반적으로 매년 펀드의 결산서(Statement)를 투자자에게 보내주므로 동 결산서에서 소득으로 표시된 금액을 과세소득에 포함시켜 신고하면 된다.

관련법령

- IRC § 551, 552, 951~957, 1291~1297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 소득세법 제119조(국내원천소득)
- 소득세법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 한미조세조약 제12조(배당)

Q17 국내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양도소득은 언제 미국에 신고하여야 하는가? 소득이 발생할 때 신고하지 않고 자금을 미국으로 회수할 때 신고할 수 있는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거주외국인 등 미국세법상 미국인은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에 발생한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미국 국세청에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한국에서 이자, 배당, 양도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원천징수)하였다 하더라도 동 납부로 미국에서의 납세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미국에서 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한국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한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미국 소득세액으로부터 공제 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의 소득세 신고는 소득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소득을 미국으로 회수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미국세법상 소득은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소득을 지급받는 때 발생한(실현된) 것으로 본다.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만기가 되어 현실적으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이자를 원본에 가산하는 경우에는 그 원본에 가산한 날, 해약으로 인하여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해약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에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배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는 날, 펀드 등의 경우에는 그 이익을 지급받는 날, 펀드의 원본에 가산하는 경우에는 그 원본에 가산하는 날, 펀드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에 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양도소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현금주의(Cash Basis)를 적용하여 대금을 받은 날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을 양도한 후 약정에 의하여 대금을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Installment Sale)에는 각각 지급받는 날에 양도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관련법령

- IRC § 1, 61, 901, 904.
- Treasury Regulation Section 1.1-1(b).

Q 18 국내의 예금, 채권, 펀드, 증권 등 금융자산에 원화로 투자하였는데, 이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외화로 환전하면서 환차익을 얻은 경우 한국 또는 미국에서 어떤 납세의무가 있는가?

한국내의 예금, 채권, 펀드, 증권 등 금융자산에 원화로 투자하였는데, 이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외화(예: 달러)로 환전하면서 환차익을 얻은 경우 원화 기준으로는 가치변동이 없으므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환차익에 대하여 한국에서 납세의무는 없다.

반면에, 미국세법상 원화로 투자한 예금, 채권, 펀드, 증권 등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소득발생 당시의 환율에 의하여 미화로 환산하여 과세소득을 산정한다. 예를 들어 원화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환율에 의하여 미화로 환산한 금액과 그 주식의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환율에 의하여 미화로 환산한 금액의 차액으로 과세소득을 산정하게 되므로 환차익은 원칙적으로 투자자산에 대한 양도소득(Capital Gain)의 일부로서 과세되게 된다.

한편, 국내 금융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을 원화로 보관하고 있다가 그 후에 달러로 환전하면서 그 동안의 환차익을 얻은 경우, 당해 환차익은 IRC §988에 따라 환전한 과세연도의 통상소득(Ordinary Income)으로 과세되게 된다.

위와 같이 환차익은 한국에서는 과세소득이 아니나, 미국에서는 과세소득이므로 환전한 연도의 과세소득으로 하여 다음해 4월 15일까지 미국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 IRC §988
- Treasury Regulation §1.988-1.
- Quijano v. The United States, 93 F.3d 26 (1st Circuit, 1996)

Q 19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국내의 금융자산 또는 부동산에 투자하였다가 이를 회수하여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금액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는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내의 금융자산 또는 부동산에 투자하였다가 이를 회수하여 자금을 해외로 송금함에 있어서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하고 동 은행을 통하여 송금하는 경우에는 자금의 취득경위를 입증하는 서류(예시 : 부동산 취득신고 수리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당초 투자시의 송금서류 등)를 거래 외국환은행에 제출하여야 해외송금이 가능하다.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금액의 제한 없이 송금이 가능하다.

다만, 부동산 처분대금의 경우 부동산 소재지 또는 신청자의 최종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동 확인서 신청일이 부동산 양도일부터 5년 이내인 경우에 한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처분에 따른 해외송금 가능액은 부동산 양도가액에서 당해 부동산의 채무액(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등),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이다.

또한 본인 예금 및 신탁계정 원리금, 증권매각대금, 본인명의 예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취득한 원화대출금, 본인명의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의 합계액이 $100,0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외국환은행 또는 신청자의 최종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한 반출자금 전체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 외국환거래규정 제4-4조(비거주자 또는 외국인 거주자의 지급)
- 외국환거래규정 제4-7조(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절차)
- 외국환거래규정 제4-8조(국세청장 등에 대한 통보)

Q 20 국내의 예금, 채권, 펀드, 증권 등에 투자한 자금을 본인이 국내에 가지 않고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한국 내에서 대리인을 통해서 계좌해지가 가능하다. 대리인을 통하여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의 실명확인증표(여권, 외국인투자등록증). 단, 대리인이 해지하는 경우 실명확인증표 사본도 가능

(2)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3) 공증을 받은 위임장 또는 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확인한 위임장

한편, 일부 한국계 은행 미국 지점에서는 계좌해지에 필요한 본인의 실명확인을 미국 현지에서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본인의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고 한국계 은행 미국 지점을 직접 방문하여 계좌해지에 대하여 상담하면 된다.

국내의 예금, 채권, 펀드, 증권 등에 투자한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 투자할 때의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서류(예 : 국내로 송금한 증빙, 계좌를 개설할 때 신고서류 등)를 금융기관에 함께 제시하여야 자금을 해외로 반출하는데 편리하다. 예금 및 신탁계정 원리금, 증권매각대금 등의 합계액이 $100,0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외국환은행 또는 신청자의 최종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한 반출자금 전체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해외송금이 가능하다.

관련법령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 외국환거래규정 제4-7조(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절차)
- 외국환거래규정 제4-8조(국세청장 등에 대한 통보)

Q 21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있는가? 한국 국세청에 자료가 통보된다는데, 그 기준은?

현행 한국의 외국환 거래규정상 외화 등의 거래에 있어서 주요 신고의무 및 국세청에 자료를 통보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국세청 통보기한
○ 거주자가 1일 $10,000 초과 환전 시 ○ 연간 $10,000 초과 증여성 송금 ○ 연간 $50,000 초과 해외예금 송금 ○ 연간 $100,000 초과 유학경비(체재비) 송금	전산망에 의하여 자동 통보
○ 거주자의 1만 달러 초과 휴대출국	다음 달 10일
○ 해외직접투자	다음 달 25일
○ 해외 신용카드 연간 $10,000(통화인출 포함) 초과 사용자 ○ 외국에서 외국통화 인출 $10,000 초과자	다음 해 2월20일
○ 해외 유학생, 체재자 등의 체재비, 여행경비, 신용카드 실적의 합계액이 $100,000 초과자	다음 해 3월말

신고의무 이하의 금액은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으나, 거래 외국환은행에 송금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관련법령

- 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거주자의 지급 등 절차 예외)
- 외국환거래규정 제4-8조(국세청장 등에 대한 통보)
- 외국환거래규정 제10-6조(신용카드 등에 대한 보고)

Q 22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국내·외 금융자산을 통하여 이자 및 배당소득(금융소득)을 획득 시 거주자 여부 및 금융소득 규모에 따른 국내 소득세 과세방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미조세조약에 의하여 소득을 지급하는 자(금융기관 등)는 국내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13.2%(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및 납부하고, 국내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16.5%(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및 납부한다. 따라서 비거주자는 국내 과세관청에 별도로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없다.

한편,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 소득세법을 적용받으며, 국내·외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 시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금융기관 등)는 국내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하여 15.4%(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및 납부하고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국내 과세관청에 별도로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없다.(금융소득 분리과세방법)

하지만,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거주자에 해당하고 국내·외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 시에는 국내 및 국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금융소득 종합과세방법)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될 경우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의 국내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금융소득 포함) 규모에 따라 6.6%~41.8%(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국내 소득세법상 세액계산 방법에 의하여 15.4%(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미만의 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위에서 언급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을 하고,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한편,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경우에 한정)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를 하더라도 국내 거주자로 본다.

-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다만, 한국세법과 미국세법에 의하여 양국의 이중거주자가 됨에 따라 한·미조세조약에 의하여 미국 거주자로 최종 판정된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은 FAQ #9 또는 FAQ #42 참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하고,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그리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계산의 특례),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제3조(거주자 판정의 특례),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한미조세조약 제12조(배당), 제13조(이자)

Q 23 미국거주자가 한국 원천소득(이자, 배당, 사용료 등)을 지급받는 경우 한미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기존에는 비거주자의 계좌에서 금융소득이 발생했을 때 특별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도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로 세금을 냈지만, 앞으로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만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원천징수절차 특례제도의 도입에 따른 것으로, 2012년 7월 1일 이후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지급받는 이자, 배당, 사용료 등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한세율을 적용받는 구체적인 적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제출(실질귀속자 → 원천징수의무자)

국내원천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인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이하 '실질귀속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실질귀속자가 제출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는 최초로 제출된 날로부터 3년 내에는 다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그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원천징수의무자의 제한세율 적용방법

원천징수의무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에 기재된 실질귀속자의 거주지국 정보와 제한세율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한세율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3) 기타 고려 사항

이전에 개설한 계좌의 경우에도 2012년 7월 1일 이후 제한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등을 제출 하여야 한다. 제한세율적용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원본을 접수하여야 하나, 원본 접수가 곤란한 경우 e-mail, 팩스 등을 통한 사본접수도 가능하다.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등 관련 서식의 영문본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영문서식(참고용)을 이용하여 작성 가능하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56조의 6,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 8

Q 24 국내 거주자가 미국의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미국의 기업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한국내 거주자가 주거 이외의 목적 또는 주거목적으로 미국의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거래 외국환은행에 부동산취득신고서를 제출하여 수리를 받아야 대금을 미국으로 송금하여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다. 부동산 투자금액의 제한은 없다.

부동산 취득자는 취득대금 송금 및 처분 후 3개월 이내(단, 3개월 이내에 처분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령하는 시점)에 취득 · 처분보고서를 외국환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내 거주자가 미국 기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거래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만 투자액을 송금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은 역외금융회사(역외펀드)에는 투자할 수 없다.

해외 직접투자자는 연간사업실적보고서 등 정기적으로 해외직접투자실적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지정 외국환은행을 통해서 신고내용의 이행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국내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 및 해외 직접투자 자료는 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국세청에 통보된다.

관련법령

- 외국환거래규정 제9-38조(신고수리요건의 심사), 제9-39조(신고수리절차), 제9-40조(사후관리)
-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해외직접투자의 신고), 제9-7조(사후관리), 제9-9조(보고서 등의 제출), 제9-15조의2(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Ⅱ. 부동산 투자 관련

Ⅱ. 부동산 투자 관련

Q 25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국내의 토지를 취득하는데 제한이 있는가? 국내의 건물 취득에 제한이 있는가? 특별한 절차(예 : 신고, 허가 등)를 거쳐야 하는가?

영주권자의 경우는 한국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자유롭게 국내의 부동산 및 이에 관한 임차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으며, 외국환거래법상의 '부동산취득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국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일정한 제한이 있다.

시민권자의 경우는 우선 부동산 취득자금을 반입할 때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은행장에게 '부동산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시민권자가 국내 건물을 취득하는데 제한이 없으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후 6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토지취득신고' 하여야 한다. 취득하는 토지가 군사시설, 지정문화재, 생태보전지역 등이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한내 토지취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과된다.

관련법령

- 외국환거래규정 제9-42조 제1항 제3호, 제2항
- 외국인토지법 제2조, 제4조, 9조

Q 26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을 때 보유한 토지 또는 건물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에도 계속 보유하고자 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을 때 보유한 건물의 경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에도 특별한 신고 없이 계속 보유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을 때 보유한 토지의 경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에도 계속 보유하고자 할 때에는 시민권을 취득한 날(한국 국적을 상실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토지법 제6조에 따라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계속보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기한내 '토지 계속보유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련법령

- 외국인토지법 제6조
- 외국인토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Q27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부동산을 사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내에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① 등기신청서, ②매매계약서, ③등록세영수필확인서, ④등기필증, ⑤토지 · 건축물대장등본, ⑥주민등록등본, ⑦인감증명, ⑧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이 필요하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주민등록등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기재해야 하는 주민등록번호, 인감증명을 구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주민등록등본 : 국내에 체류하는 장소를 국내거소로 정하여 이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고,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원을 발급 받아 이를 주민등록등본에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주민등록번호 : 종전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영주권자는 말소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종전 주민등록번호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등기소(현재 서울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다.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시민권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3) 인감증명 : 영주권자는 국내 최종 주소지 또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동사무소에 인감신고를 할 수 있다.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는 그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고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시민권자는 미국 관공서의 확인, 공증사무소의 공증, 또는 한국 대사관(영사관)의 확인 등을 받은 서명을 사용할 수 있다.

≪ 2012.12.1.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시행 – 인감증명서와 선택 사용 가능 ≫

- 의　　의 : 전국 어디서든 읍 · 면 · 동사무소 등을 직접 찾아가 본인이 서명하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 제도
- 발급절차 : ① 민원인이 읍 · 면 · 동 방문 → ② 신분 확인 후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전자패드)에 서명 → ③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읍 · 면 · 동장) → ④ 인감증명서 대신 활용

관련법령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부동산 거래 등) 제1항, 제6조(국내거소신고), 제9조(주민등록 등과의 관계)
- 부동산등기규칙 제61조(인감증명의 제출) 제3항
- 인감증명법 제3조(인감신고 등), 제12조(인감증명의 발급)

Q 28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국내에 가지 않고 부동산을 사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에 가지 않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면, 대리인을 선임하고 그 대리인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등기의 사무를 위임해야 한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 권한을 제3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등기신청서류에 첨부해야 한다. 위임장의 양식은 특별히 규정된 바 없으나 등기 대상이 되는 부동산과 수임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인감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임장에 본인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을 대리인이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시민권자가 인감 대신 서명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장이나 서면에 기재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미국 관공서의 증명, 공증인의 공증, 또는 한국 대사관(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필요한 서류는 ①등기신청서, ②매매계약서, ③등록세 영수필확인서, ④등기필증, ⑤토지 · 건축물대장등본, ⑥주민등록등본, ⑦인감증명서(2012.12.1.부터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선택 사용 가능), ⑧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등이며, 국내에 가지 않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위임장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점에 차이가 있다.

관련법령 ▫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절차(등기예규 제1282호)

Q29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거소등록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바,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할 서류나 번호가 필요하다.

(1)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국내에 체류하는 장소를 국내거소로 정하여 이를 관할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하고,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원을 발급 받아 이를 주민등록등본에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영주권자는 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발행한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발급받아 이를 주민등록등본에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시민권자는 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주민등록등본에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등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그에 대하여 미국 관공서의 증명, 공증인의 공증, 또는 한국 대사관(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이를 주민등록등본에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종전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영주권자는 말소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종전 주민등록번호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현재 서울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이를 주민등록번호에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국내거소신고를 한 시민권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관련법령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부동산 거래 등) 제1항, 제6조(국내거소신고), 제9조(주민등록 등과의 관계)

Q30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국내에 인감등록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이 반드시 필요하며, 인감 대신 서명을 사용할 수도 있다.

영주권자는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사무소나 최종 주소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고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거소 관할 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고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2012.12.1.부터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선택 사용 가능) 본인이 국내에 가지 않고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인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인감신고가 되어 있는 성년자 1인이 연서로 보증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국내에 인감이 이미 신고된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을 교부하면 국내에 본인이 가지 않고도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시민권자는 국내에 체류하는 장소를 국내거소로 정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한 후, 거소 관할 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고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시민권자도 본인이 국내에 가지 않고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인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인감신고가 되어 있는 성년자 1인이 연서로 보증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국내에 인감이 이미 신고된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을 교부하면 국내에 본인이 가지 않고도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시민권자는 인감 대신 서명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이나 서면에 기재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미국 관공서의 증명, 공증인의 공증, 또는 한국 대사관(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면 서명을 인감에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관련법령

-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61조(인감증명의 제출)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국내거소신고), 제9조(주민등록 등과의 관계)
- 인감증명법 제3조(인감증명서)

Q31 인감 대신 서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영주권자는 인감 대신 서명을 사용할 수 없다. 영주권자는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사무소, 최종 주소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고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2012.12.1.부터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선택 사용 가능)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거소 관할 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고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시민권자는 인감 대신 서명을 사용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부동산 등기에 있어서 인감증명 제도가 없기 때문에 위임장이나 서면에 기재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미국 관공서의 증명, 공증인의 공증, 한국 대사관(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서명을 사용할 수 있다.

관련법령

- 부동산등기규칙 제61조(법인 등의 인감증명의 제출)

Q 32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는 무엇이고, 신고위반시 불이익은 무엇인가?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거래가격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청 · 군청 · 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 교부한 경우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신고된 부동산 거래가격은 허위 신고 여부 등에 대해 가격 검증을 거치게 되며, 거래내역 및 검증결과는 국세청 및 시청 · 군청 · 구청 세무부서에 통보하여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 또한 신고된 가격은 2006년 6월 1일부터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며, 2007년부터 양도소득세가 실제 거래가격으로 부과된다.

무신고, 허위신고, 지연신고 등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한 매도인 · 매수인 및 중개업자는 취득세 1.5배(주택거래 신고지역 내 주택은 2.5배)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된 내용을 신고토록 요구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http://rtms.moct.go.kr) 또는 부동산실거래가 고객센터 안내 (1588-0149)로 문의 가능하다.

관련법령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 27조(부동산거래의 신고)

Q 33 국내의 상가, 오피스텔 등을 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제한은 없다. 국내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업자 본인이나 위임장을 가진 제3자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개시일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공통서류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등), 임대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2) 개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신청서,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사업자가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 · 세무사 · 공인회계사 등을 납세관리인으로 선정하여야 함)

(3) 영리법인(본점)의 경우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 등본,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4)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경우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본점의 등기에 관한서류, 정관사본, 지점등기부등본(국내에서 수행하는 사업 활동의 성격상 한시성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상 등기할 의무가 없는 경우는 제외) 또는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사본,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의 재무상태표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Q 34 본인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사서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수 있는가? 문제점은 무엇인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취득한 자가 친인척 등 다른 사람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여 그 친인척 명의로 등기를 하게 되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그 등기는 무효가 된다.

더불어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명의신탁)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다음과 같은 과징금, 강제이행금 및 벌칙이 부과된다. 다만,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한 경우에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및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징금 등을 면제한다.

(1) 과징금 : 과징금 부과 당시 부동산 평가액 × (㉠과 ㉡의 부과율 합계치)

㉠ 부동산 평가액 기준에 의한부과율	
5억 원 이하	5%
5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10%
30억 원 초과	15%

㉡ 의무기간 경과기준에 의한 부과율	
1년 이하	5%
1년 초과 2년 이하	10%
2년 초과	15%

(2) 강제이행금 : 과징금 부과 후 일정기간 경과 시까지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이행금 부과
- 1년 경과 시까지 실소유자로 환원하지 않은 경우 : 부동산가액 10%
- 2년 경과 시까지 실소유자로 환원하지 않은 경우 : 부동산가액 20%

(3) 벌칙 : 명의신탁자 및 수탁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 부과
- 명의신탁자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 명의수탁자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한편, 친인척 등은 자기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재판에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등 여러 가지 위험부담이 있으므로 특히 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는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법령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과징금), 제6조(강제이행금), 제7조(벌칙)

Q 35 본인 앞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국내에 납부하는 세금은?

매매, 상속, 증여 등을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때에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사망자) 또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취득자가 신고한 가액. 다만,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가액이 지방세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토지, 건물 등 일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취득세율 : 표준세율 (적용시기 : 2011. 1. 1.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다만, 별장 · 골프장 · 고급주택은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인 2% × 4)}, 과밀억제권역내의 취득에 대하여는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인 2% × 2)}
☞ 적용시기 : 2011. 1. 1.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2) 취득유형별 취득세 표준세율

-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 농지 3.0%, 기타 부동산 4.0%
-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 3.5%
-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 농지 2.3%, 기타 부동산 2.8%
-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 4.0%
- 공유물 ·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 :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2.3%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1조(취득세),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제23조(등록면허세)

Q 36 한국에서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 납부하여야 할 세금의 종류는 무엇인가?

구 분	재 산 세(지방세)	종합부동산세(국세)
과 세 대 상	– 주택 – 토지	– 주택 – 토지(종합, 별도합산)
납 세 의무자	– 6. 1. 현재 재산 소유자	– 6. 1 현재 재산 소유자 중 주택 : 6억원 초과자(1세대 1주택 9억원 초과자) – 종합합산토지 : 5억원 초과자 – 별도합산토지 : 80억원 초과자
과 세 권 자	– 재산 소재지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과 세 방 법	– 주택(부속토지) : 물건별 통합과세 – 토지 : 관내합산과세(과세대상 유형별 구분)	– 인별 · 유형별 전국합산 과세
과 세 표 준	– 주택 : 공시가격×60% – 토지(종합, 별도) : 공시가격×70%	– 주택 : (공시가격 – 6억원*)×80% *1세대 1주택 9억원 – 종합합산토지 : (공시가격– 5억원)×80% – 별도합산토지 : (공시가격– 80억원)×80%
세 율	– 주택, 토지(종합, 별도) : 3~4단계 누진세율 – 토지(분리과세) : 단일세율	– 주택 : 5단계 누진세율 – 토지(종합, 별도) : 3단계 누진세율
납 부 기 한	– 주택 : 7.16∽7.31(50%) 9.16∽9.30(50%) – 토지 : 9.16~9.30 – 기타 : 7.16~7.31	– 12.1~12.15
징 수 방 법	– 보통징수(부과징수)	– 부과징수 – 선택적 신고납부 가능
세부담 상한액	– 직전연도 세액 상당액의 150% (주택 105~130%)	– 직전연도 총세액 상당액의 150%

Q 37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넘겨주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국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의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다.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교부하여야 할 서류는 등기필증(본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때 교부받은 것), 주민등록등본(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인감증명 등이다.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경우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 받아 주민등록등본에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영주권자는 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발행한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발급받아 이를 주민등록등본에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시민권자는 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주민등록등본에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등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그에 대하여 미국 관공서의 증명, 공증인의 공증, 또는 한국 대사관(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이를 주민등록등본에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인감증명의 경우 국내 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영주권자는 국내 최종 주소지 또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고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는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고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시민권자는 인감 대신 서명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위임장이나 서면에 기재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그에 대하여 미국 관공서의 증명, 공증인의 공증, 또는 한국 대사관(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Q 38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국내에 가지 않고 부동산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에 가지 않고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대리인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권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데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여야 한다.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위임장의 양식은 특별히 규정된 바 없으나, 매매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내역, 대리인의 인적사항, 대리인이 처리하여야 할 사무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부동산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매도인이 교부하여야 할 서류는 등기필증(본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때 교부받은 것), 주민등록등본(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인감증명 등이 있으며, 동 서류를 대리인이 발급받을 필요가 있을 때는 대리인에게 이를 발급받을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 절차(등기예규 제1282호)

Q 39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한국 또는 미국에서 세금은 어떻게 되는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미국으로 가지고 오는 방법은?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는 국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먼저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등 미국세법상 미국인은 일반적으로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미국에서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4월 15일까지 한국에서의 부동산 양도소득을 미국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에서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으로 미국 소득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영주권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하고 권리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양수자에게 인감증명을 교부하여야 하는데, 인감증명을 신청할 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이 단계에서 관할 세무서장은 그 재외동포의 양도소득세 납부여부를 확인하고,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를 발급하여 준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해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하고, '재외동포 재산반출 신청서', 당초 부동산을 취득할 때의 '취득신고서(비거주자로서 해외 자금으로 취득한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 세무서장이 발급한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확인서 신청일이 부동산 양도일부터 5년 이내인 경우에 한함)를 거래 외국환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

시민권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인감경유를 할 필요가 없으나, 부동산 양도대금을 해외로 반출할 때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가 필요하므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를 경유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 외국환거래규정 제9-42조(신고절차) 제2항
- 외국환거래규정 제4-7조(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절차)

Q 40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국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미국 IRS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가? 국내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고 전세 또는 월세를 받는 경우 그 소득을 미국 IRS에 신고하여야 하는가?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국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동 부동산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IRS에 신고할 의무는 없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등 미국세법상 미국인은 일반적으로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한국에서 부동산을 빌려 주고 월세를 받는 경우 그 소득을 매년 4월 15일까지 IRS에 미국 내의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미국 소득세 신고서식(Form 1040) Schedule E, Part Ⅰ에 월세를 받는 부동산의 소재지, 월세 소득 및 관련 비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한국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외국 납부세액으로 미국 소득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한국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 부동산 관리비용, 수선비, 감가상각비 등은 비용으로 소득액 계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 부동산을 빌려 주고 전세보증금을 받는 경우 전세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후 반환할 금액(일종의 채무)이므로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예금하여 이자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동 이자소득은 미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은행 예금이 $10,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서식(Form 1040)의 Schedule B, Part Ⅲ에 계좌보유사실을 보고하고(Yes에 표시 및 보유국가 기재), 6월 30일까지 재무부에 Form TD F 90-22.1을 제출하여 그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별도의 해외 금융자산 보고 (Foreign Financial Asset Reporting) 규정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시 Form 8938을 첨부해 해외계좌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관련법령

- IRS Publication 527(Residential Rental Property(Including Rental of Vacation Homes))

Ⅲ. 양도소득세 관련

Ⅲ. 양도소득세 관련

Q41 한국에서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차이점은 무엇인가?

한국 세법은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과세소득의 범위와 과세방법 등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한국의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Domestic Source Income)에 대하여만 한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거주자가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당해 국가에서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한국에서 소득세를 계산할 때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 중 세법에서 정한 한도내의 금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소득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개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 한국의 거주자로 보며, 그 외의 자는 비거주자로 본다. 여기서 주소란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거소는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없는 장소를 말한다. 또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도 거주자로 본다.

한편,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한 자(비거주자)가 영주귀국*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날(거주자가 되기 위하여 입국한 날)부터 거주자가 된다(부동산거래관리과-150, 2012.3.9).

* 영주귀국의 신고 및 영주귀국 확인서의 발급 필요(「해외이주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해외에 이주하여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국내(한국)에서 생업에 종사할 목적 등으로 영주귀국하려면 영주귀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주권 또는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의 취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거주여권을 말함)를

갖추어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외교통상부장관은 영주귀국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영주귀국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함

(한국세법 및 미국세법상 각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즉 이중거주자가 되는 경우 거주자국 판정은 FAQ #9 또는 #42를 참조)

예를 들어,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가족과 함께 1년 이상 거소를 두고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된다.

한국세법상 한국 거주자에게는 한국내에서 조세감면이나 비과세 등 각종 혜택도 함께 부여한다. 예를 들어 거주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한국 비거주자(일반적으로 가족과 함께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는 한국의 비거주자에 해당)는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납세의무),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 한미조세조약 제3조(Fiscal Domicile)

Q42 미국에서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한국과 미국 양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어느 쪽의 거주자가 되는가?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미국에서 사업 또는 직장근무를 하는 거주 외국인 등 미국세법상 미국인이 해외에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고, 1역년(Calendar Year) 동안 어느 시점이든 모든 해외 금융계좌 잔고의 합계액이 $10,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FBAR 보고를 하여야 한다.

미국 세법에서는 (1)과 (2) 및 (3)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미국세법상 미국인으로 보나, 예외적으로 (4)에 해당하는 경우 미국세법상 미국인이 아니라고 판정할 수 있다.

(1) 미국 시민: 미국 시민은 미국세법상 미국인이다

(2) Green Card Test :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 거주자로서 미국세법상 미국인이다.

(3) Substantial Presence Test : 미국 영주권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외국인이 일정 기간 이상 미국체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거주외국인(resident alien)으로 미국거주자로 본다. (2013년 소득세 신고 시의 거주자 기준 : ① 2012년에 31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고, ② 미국 체류 기준일수가 2012년(체류일수의 100% Count), 2011년(1/3 Count), 2010년(1/6 Count) 3년을 합하여 183일 이상인 경우)

(4) 다만, 위 (3)의 체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연도 중 미국에서 체류한 일수가 183일 미만이고, 당해 신고대상연도에 외국에 tax home(가족이 사는 주거지인 family home이 어디이든 관계없이 사업의 주된 장소, 고용 혹은 근무 장소를 말하나, 일의 성격상 일상적인 혹은 주된 사업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사는 장소를 말함)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보다도 tax home이 있는 외국과 보다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경우(예: 외국이 가족거주지, 개인은행업무 수행지, 운전면허증 발급지 등임을 소명) form 8840을 제출하여 소명하여야 함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그밖의 거주외국인(resident alien) 등 미국 세법상의 미국인(US person)은 일반적으로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단, 아래와 같이 영주권자 및 그밖의 거주외국인이 미국세법 또는 조세조약에 의해 미국 거주자가 아니라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미국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할 경우 미국에서 소득세를 계산할 때 국외원천소득과 관련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소득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비거주자는 미국에서 발생한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더 나아가 미국세법은 영주권자 및 외국인이 미국 세법에 의해 미국거주자가 됨과 동시에 외국 세법에 의해 외국거주자가 됨으로써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조약에 의해 거주지국을 판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즉, 어느 개인이 미국세법에 의해 미국 거주자도 되고 한국세법에 의해 한국 거주자도 되어(한국세법의 거주자 판정기준은 FAQ #41참조) 이중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3조에 따라 ①주거(Permanent Home)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 ②양국에 주거를 두고 있거나 양국에 주거가 없는 경우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국가(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Center of Vital Interest)의 거주자, ③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느 국가에도 없거나 결정될 수 없을 경우 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 ④양국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어느 국가에도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시민권(Citizenship)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 ⑤동 개인이 양국의 시민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양국 중 어느 국가의 시민도 아닌 경우에 양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 등의 순으로 어느 국가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한미조세 제3조에서 말하는 주거는 어느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미국시민권자의 경우에는 한미조세조약의 거주자판정기준에 의거 한국 거주자에 해당되더라도 전세계에서 얻은 소득을 매년 미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한미 조세조약 제4조 제4항 참조) 다만, 이중과세방지를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허용한다.

한미 조세조약에 의해 거주지를 판정한 결과 한국거주자임을 주장하는 경우 미국 국세청에 Form 8833을 제출하여야 한다.(단, 소득이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제출)

예를 들어,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1년 이상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미국 거주자와 한국 거주자에 모두 해당되나, 한국에 가족이 거주하는 주거(Permanent Home)가 있는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에 의거 한국거주자에 해당한다.

조세조약상 한국 거주자에 해당되는 미국 영주권자는 한국에서 전세계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고, 미국에 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소득(예: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을 경우 Form 1040NR 또는 1040NR-EZ에 의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 IRS Publication 519(US Tax Guide for Aliens)
- 한미조세조약 제3조(Fiscal Domicile)

Q43 한국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아래 도표 참조)을 매도 · 교환 · 현물출자 등 사실상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보유기간 중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양도자가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 외의 모든 자산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며,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소재 자산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부동산, 주식 등 일정한 국외자산(예 : 미국 소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한국 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라 함은 국적 · 성별 · 나이 및 외국시민권자 · 외국영주권자 · 한국국적자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국내(韓國)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個人)를 말하며, 비거주자라 함은 거주자가 아닌 자(個人)를 말한다.

자산구분	자산유형별 종류
부 동 산	· 토지 ·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지상권 · 전세권 · 등기된 부동산임차권(국외 산은 등기여부와 무관)
주권상장 법인의 주식	· 대주주가 양도하는 유가증권시장(KOSPI) 상장법인의 주식 등 · 대주주가 양도하는 코스닥시장(KOSDAQ) 상장법인의 주식 등 · 소액주주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 등
주권비상장 법인의 주식	· 증권시장(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주식 등
기타 자산	·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특정시설물이용권 및 관련주식 등
	· 특정주식 등
	·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 대주주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말 현재를 기준으로,
1)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주식 등 : 2% 이상 보유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2)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식 등 : 4% 이상 보유 또는 시가총액 40억원 이상
※ 대주주 판정기준은 2013.2.15. 개정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Q44 한국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높은 세율로 중과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양도소득세의 일반세율은 다음과 같이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6%~38%의 초과누진 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시기	2010년~2011년		2012년 이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35%	1,490만원	35%	1,490만원
3억원 초과			38%	2,390만원

한편, 1세대 2주택인 경우(50%),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 1개씩 보유한 경우(50%),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60%),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합이 3이상인 경우(60%), 비사업용 토지(60%), 미등기 양도자산(70%), 단기양도자산(1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은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은 40%) 등은 일반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중과한다.

다만,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 · 비사업용 토지를 2009.3.16.부터 2013.12.31.까지 양도하거나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중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50% 또는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6%~35%, 2012년 이후는 6~38%}을 적용한다[다만, 지정지역 소재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대상 및 비사업용 토지는 일반세율에 10%P를 가산한 세율을 적용한다](구체적인 세율은 제1장 Ⅰ, 한국의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참조)

♣ 2013.2. 현재 지정지역 없음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세법(2008.12.26. 개정) 부칙 제14조

Q45 비거주자의 한국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한국세법상 비거주자(예 : 일반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의 양도소득세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하며, 1년(1. 1.~12.31.) 기준으로 양도소득금액은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으로 구분하고, 다시 각각 '주식'과 '주식外 자산'으로 구분한 4가지 유형의 양도자산별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각각 계산한다.

먼저, 자산별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데, 2007. 1.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와 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기타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자본적 지출 등 보유기간 중 실제 소요된 경비를 말한다.

이어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자산은 3년이상 보유한 등기된 부동산 및 조합원입주권이며, 자세한 내용은 FAQ 47번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 ☞ 거주자인 경우 "국내주식 · 국내주식外 자산 · 국외주식 · 국외주식外 자산"에 대하여
- ☞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주식 · 국내주식外 자산"에 대하여
  각각 250만원을 공제하므로 1과세기간에 거주자는 최고 1,000만원을, 비거주자는 최고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세액 등 세액공제를 공제한 후 양도소득결정세액을 산출하고, 가산세와 기납부세액을 가감산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한다. 그리고 납부할 양도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지방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Q46 비거주자가 한국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한국의 양도소득세는 어디에, 언제까지, 어떻게 신고 · 납부하여야 하는가?

한국세법상 비거주자(예 : 일반적으로 미국에 살고 있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이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양도자산의 소재지)이다. 따라서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 소재지 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뉘며, 양도일(예 : 2013.4.20.)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예 : 2013.6.30.)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 ·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에 2회 이상 양도한 때에는 양도한 연도의 다음연도 5.1~5.31 중에 합산하여 확정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비거주자가 법인(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자인 법인이 양도가액의 10%와 실가에 의한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의 2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양도소득세의 10%에 상당하는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양수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비거주자는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양수자로부터 교부받아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다.

비거주자가 원천징수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거나 직접 신고 · 납부하고자 할 경우 또는 비과세 · 과세제외 · 과세미달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 양도소득 확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교부받아 양수자(취득자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제출하면 양수자의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와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에 증빙서류(예 : 토지대장 및 건축물 대장등본,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등)를 첨부하여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금융기관(국내 시중은행 또는 우체국)에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5조(예정신고), 제110조(확정신고)

Q47 한국에서 부동산을 3년 이상 장기간 보유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다고 하는데, 비거주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비거주자도 1세대의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등기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주택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자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1세대 1주택인 경우 24%~80%)를 공제한다.

다만, 2010년 이후 양도분부터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24%~80%)을 적용하지 않고 10%~30% 공제율만을 적용한다. 그러나 비거주자가 양도일 현재 거주자로 전환되어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례 공제율(24%~80%)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비거주자일 때 보유한 기간도 포함함)

※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우선 검토

한편, 2009.12.31. 이전 양도분에 대해서 종전에는 비거주자에게는 1세대의 1주택에 대한 공제율(최고 80%)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예규 변경에 따라 비거주자도 거주자와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72, 2012.12.26.).

이에 따라 비거주자가 2009년말 이전에 한국 내에 1주택만을 보유하다 양도하고 일반공제율(10%~30%)을 적용받은 경우로서 불복청구 중인 경우와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2009년 양도분의 경우(2009년 양도분의 경우 경정청구기한은 2013년 5월 31일까지임) 환급청구를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24%~80%)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경정청구기간이 지나고 부과제척기간 내에 있는 2007년 양도분(2013년 5월 31일이 부과제척기간 종료일임)과 2008년 양도분(2014년 5월 31일이 부과제척기간 종료일임)은 예규 변경 취지 등을 감안할 때 관할세무서 또는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에 고충민원을 청구하는 경우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다.

〈증여자가 미국 시민이 아닌 경우〉

증여자 거주지	수증자 거주지	재 산[1] 소재지	미 국 증여세	한 국 증여세
미 국	미 국	미 국	과 세[2]	비과세
미 국	미 국	한 국	과 세	과 세
미 국	한 국	미 국	과 세	과 세
미 국	한 국	한 국	과 세	과 세
한 국	미 국	미 국	과 세	비과세[3]
한 국	미 국	한 국	비과세	과 세
한 국	한 국	미 국	과 세	과 세
한 국	한 국	한 국	비과세	과 세

주 1. 위 표에서 '재산'은 유형재산뿐 이라고 가정
2. 위 표에서 '과세'라는 것은 한국의 경우 증여재산공제, 미국의 경우 Unified Tax Credit 등 각종 공제를 적용한 결과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경우도 포함하는 바, 양국에서 '과세'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중 과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많음
3. 단, 2013.1.1. 이후 증여분부터는 비거주자가 국내소재 재산 뿐만 아니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적금 등 해외금융계좌에 보유된 재산과 국내소재 재산을 50% 이상 보유한 외국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됨

〈증여자가 미국 시민인 경우〉

증여자 거주지	수증자 거주지	재 산[1] 소재지	미 국 증여세	한 국 증여세
미 국	미 국	미 국	과 세[2]	비과세
미 국	미 국	한 국	과 세	과 세
미 국	한 국	미 국	과 세	과 세
미 국	한 국	한 국	과 세	과 세
한 국	미 국	미 국	과 세	비과세[3]
한 국	미 국	한 국	과 세	과 세
한 국	한 국	미 국	과 세	과 세
한 국	한 국	한 국	과 세	과 세

주 1. 위 표에서 '재산'은 유형재산뿐 이라고 가정
2. 위 표에서 '과세'라는 것은 한국의 경우 증여재산공제, 미국의 경우 Unified Tax Credit 등 각종 공제를 적용한 결과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경우도 포함 하는 바, 양국에서 '과세'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중 과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많음
3. 단, 2013.1.1. 이후 증여분부터는 비거주자가 국내소재 재산 뿐만 아니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적금 등 해외금융계좌에 보유된 재산과 국내소재 재산을 50% 이상 보유한 외국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됨

Q 48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이민 올 때 한국에 두고 온 주택 1채를 언제까지 양도해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한국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은 경우 동 양도소득에 대한 미국에서의 납세의무는 어떻게 되는가?

외국의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는 일반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지 않는 한 비거주자이므로 거주자에 국한하여 적용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1세대가 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1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출국일(현지이주의 경우는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당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록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일지라도 보유기간(3년 이상 보유)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양도가액 9억원 이하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한정됨)된다.

그러나 출국한 후 2년이 경과된 뒤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현재 이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일지라도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등 미국세법상 미국인은 일반적으로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미국에서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양도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 해 4월 15일까지 한국에서의 부동산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미국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미국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의 부동산 양도소득을 미국 국세청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한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없으므로 미국에서 공제받을 외국납부세액은 없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제2항 단서

Q 49 이민 온 이후에 국내에 주택을 새로 구입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원칙적으로 양도자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1세대가 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출국일(현지이주의 경우는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3년 이상 보유)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가액 9억원 이하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따라서 이민 온 이후에 비거주자 신분 상태에서 국내 소재 주택을 새로 구입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 동 주택을 양도하였을 때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일지라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는 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3년 이상 보유 요건 충족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출국일부터 2년을 경과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출국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과 다목(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제2항 단서

Q50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닌데, 한국에 돌아가서 일정기간 거주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거주자 상태에서 국내 소재 1주택을 취득하고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되거나, 비거주자 신분 상태에서 국내소재 1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자가 된 경우,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거주자 신분에서 당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양도가액 9억원 이하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한정됨)된다.

비거주자가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함으로써 거주자로 신분이 전환된 경우에 있어서 위의 보유기간(2년 이상인지 여부)의 계산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며, 비거주자였던 기간은 제외한다.

예를 들어, 한국에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는 1세대인 부부가 한국에 귀국하여 일정한 직업이 없이 4년을 한국에 거주하고 나서 한국에 보유하고 있는 1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년째 되는 날 거주자가 되고 거주자 신분상태에서 동 주택을 3년 보유하고 양도하는 것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에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는 1세대인 부부가 한국으로 귀국하여 남편이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게 된 경우, 그 직업을 가진 날부터 2년이 지난 후 동 주택을 양도한다면, 국내에 직업을 가지게 된 날에 거주자가 되고 거주자 신분상태에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거주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한국 내 거주기간(최소 1년 이상 거주), 한국에 직업이 있는지 여부, 다른 가족의 거주지 및 재산보유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한국의 거주자판정에 대해서는 Q41참조)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1세대 1주택의 범위), 제8항 제2호

Q 51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은 9억원까지만 적용된다고 하는데, 주택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며,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의 과세대상 양도차익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text{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 양도차익} = \text{토지 전체 양도차익} \times \frac{\text{(양도가액} - \text{9억원)}}{\text{양도가액}}$$

$$\text{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주택(건물)에 대한 과세대상 양도차익} = \text{건물 전체 양도차익} \times \frac{\text{(양도가액} - \text{9억원)}}{\text{양도가액}}$$

거주자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을 양도할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위 과세대상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등기된 3년 이상 보유주택에 한정하여 24%~80%)을 곱하여 계산한다.

그러나, 비거주자 신분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비거주자 신분상태에서 양도하거나, 국내에 1주택 소유한 1세대가 출국일(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날을 말하며,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에는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함)부터 2년이 지나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므로 위 산식을 적용하지 않고 전체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된다. 한편,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10%~3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5조, 동법 시행령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Q52 한국 내에 주택이 2채인 경우 한국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2채를 순차적으로 양도할 경우 어떤 주택을 먼저 팔아야 세금부담이 적은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아래에 표에 해당되는 2주택(국내 소재)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로서 과세대상인 때에는 중과세율(최고 50%,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별 적용세율이 다름에 유의, 자세한 세율은 관련 법령을 참조)을 적용한다. 중과대상 주택에 대하여는 2011년까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았으나, 2012년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제율은 10%~30%가 적용되며,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1세대 2주택 중과 관련 주택수 계산시 포함되는 주택〉

구분	'08.10.6. 이전 양도분	'08.10.7. 이후 양도분
소재지	– 서울 – 모든 광역시(군지역 제외) – 경기도(읍 · 면지역 제외) **《모든 주택》**	– 서울 – 인천광역시(군지역 제외) – 경기도(읍 · 면지역 제외) **《모든 주택》**
	– 모든 광역시의 군지역 – 경기도 읍 · 면지역 – 기타 도지역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지방 광역시(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 인천광역시 군지역 – 경기도 읍 · 면지역 – 기타 도지역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기준시가 :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2009.3.16.부터 2013.12.31.까지 양도하거나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6%~35%, 2012년 이후는 6~38%. 보유기간 2년 미만은 40%, 1년 미만은 50%, 미등기양도는 70%)을 적용하므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적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 다소 유리할 수 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6호와 제6항, 동법 시행령 제167조의5(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Q 53 한국 내에 주택이 3채 이상인 경우 한국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3채 이상을 순차적으로 양도할 경우 어떤 주택을 먼저 팔아야 세금부담이 적은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아래에 표에 해당되는 3주택(국내 소재)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로서 과세대상인 때에는 중과세율(최고 60%,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별 적용세율이 다름에 유의, 자세한 세율은 관련 법령을 참조)을 적용한다. 중과대상 주택에 대하여는 2011년까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았으나, 2012년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제율은 10%~30%가 적용되며,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관련 주택수 계산시 포함되는 주택〉

소 재 지	주택수 계산시 포함되는 주택
– 서울 – 모든 광역시(군지역 제외) – 경기도(읍 · 면지역 제외)	**《모든 주택》**
– 모든 광역시의 군지역 – 경기도 읍 · 면지역 – 기타 도지역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기준시가 :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2009.3.16.부터 2013.12.31.까지 양도하거나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6%~35%, 2012년 이후는 6~38%. 보유기간 2년 미만은 40%, 1년 미만은 50%, 미등기양도는 70%)을 적용한다.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에 10%P를 가산한 세율을 적용하므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적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 다소 유리할 수 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와 제4항 및 제6항, 동법 시행령 제167조의 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Q54 비거주자가 상속 또는 결혼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한국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되는가?

한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해당 여부를 판정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그러나,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한국 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모두 1주택을 보유하고 일정요건(Q49참조)을 충족하는 1세대로서 한국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므로 혼인으로 인하여 양도일 현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거주자의 경우에는 1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다가 상속주택 1채(상속주택이 1채인 경우 그 주택, 상속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이 긴 주택, 거주기간이 긴 주택,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주택,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 상속인이 선택한 주택 順으로 순차 적용)를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일반주택만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정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그러나,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한국 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모두 1주택인 경우로서 한국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므로 상속 또는 결혼으로 인하여 양도일 현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과세대상이 되더라도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또는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4(양도소득세의 세율), 동법 시행령 제167조의5(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Q 55 비거주자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또는 재건축으로 신축완성된 취득주택을 양도할 경우 한국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시행 중에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재개발·재건축으로 완성된 신축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등기된 주택인 때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양도실가 9억원 초과분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은 과세)된다.

그러나 재개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승계조합원)하여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위의 사유로 출국한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또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입주권(조합으로부터 받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제155조 제17항

Q56 비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또는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에 양도하고 현금으로 청산금을 받는 경우 한국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또는 재건축 정비사업이 진행될 때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한 기존부동산의 평가액(예 : 7억원)이 분양예정가(예 : 3억원) 보다 큰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조합으로부터 받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과 청산금(4억원, 일부 양도로 봄)을 재개발 ·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에 기존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건물(주택) 멸실일 중 빠른 날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비거주자가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1주택인 경우로 한정)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일지라도 양도가액 9억원 이하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그러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상건축물이 주택이 아니거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양도가액 중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는 정비구역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이더라도 산출된 양도소득세의 20%(현금수령분,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 부과)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급받은 청산금(일부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지급받은 청산금에 상당하는 양도차익 =

$$\text{관리처분계획인가 前 양도차익} \times \frac{\text{지급받은 청산금}}{\text{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관리처분계획인가 前 양도차익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 제166조 제1항

Q 57 비거주자가 상가, 대지 등을 양도한 경우 한국의 양도소득세를 내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세율은?

한국 비거주자가 상가(그 부수토지 포함), 토지(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음. 타인소유 주택의 부수토지 포함)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대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고, 중과세율(최고 60%. 세부적인 세율은 관련 법령을 참조)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2009.3.16.부터 2013.12.31.까지 양도하거나 2009.3.16.부터 2012.12.31. 중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6%~35%, 2012년 이후는 6~38%. 보유기간 2년 미만은 40%, 1년 미만은 50%, 미등기 양도자산은 70%)을 적용한다, 다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한시적으로 일반세율을 적용받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

양도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의 지목, 보유기간, 기간별 토지의 용도, 도시지역 편입 여부, 사업 관련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자료(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재산세 과세내역 등)를 확보하여 국세청 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 또는 세무사 ·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대지(농지, 임야, 목장용지 외의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
- 일정기간 동안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 한편, 일정기간 동안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 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
- 또한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도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함)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제104조(세율) 제1항 제4항 및 제6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Q58 비거주자가 한국에 있는 농지, 목장용지, 임야 등을 양도하는 경우 한국의 양도소득세를 내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세율은? 상속받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한국 비거주자가 농지, 목장용지, 임야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또한, 본인이 직접 재촌(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한 경우를 의미) 및 자경(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을 위한 노동력의 50% 이상을 자기노동력을 투입한 경우를 의미)하지 아니하거나 토지를 농작물 재배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고 중과세율(최고 60%. 세부적인 한시적인 완화세율은 55번 내용과 같음)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피상속인(사망자)이 거주자인 상태에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그 상속받은 농지를 1년이상 계속하여 재촌 · 자경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때부터 상속인(양도자)이 양도할 때까지의 재촌 및 자경한 기간을 통산하여 8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최고 2억원(5년간 : 최고 3억원)을 한도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피상속인(2006.2.9. 이후 사망한 경우)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라 하더라도 상속인이 상속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경우(일반적으로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상속받은 농지는 이 경우에 해당)에는 상속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2013.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농지 소유자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더라도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다만,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 적용)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Q59 비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던 한국의 부동산이 공익사업용으로 수용 또는 협의매수된 경우 한국의 양도소득세를 내는가?

한국 비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물(양도일 현재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이 공익사업용으로 2015.12.31.까지 공익사업용으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로서 일정한 조건(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20%(채권 보상분 25%, 3년이상 만기 특약 채권보상분 40%, 5년 이상 만기 특약채권 보상분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감면세액은 1개 과세기간 또는 5개 과세기간별로 감면한도액이 있으며, 동일한 양도자산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감면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감면 규정을 양도자가 선택하여야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감면대상, 감면한도, 감면요건, 감면율, 감면한도, 감면세액 계산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 또는 세무사 ·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공익사업용 수용 또는 협의매수에 따른 감면종합한도 : 1과세기간 동안 20%와 25% 감면분은 1억원 한도. 40%와 50% 감면분은 2억원 한도로 하되, 2011.1.1. 이후 양도분부터 5개 과세기간 동안 20%와 25% 감면분은 2억원 한도. 40%와 50% 감면분은 3억원을 한도로 감면규정 적용함.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감면의 종합한도)

Q60 미국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미국에서는 투자목적이든 아니든 미국세법에 따로 명시된 몇몇 자산 외의 개인이 소유하는 모든 자산(Capital Assets)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Capital Gains)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는 투자자산(Investment Assets), 부동산, 동산 및 일정한 사업용 자산(Business Assets)이 포함된다.

양도자가 미국 세법상의 미국인, 즉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거주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전 세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Capital Gains)에 대하여 미국에서 납세의무가 있으며, 양도자가 미국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국 내의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다.

미국 비거주자가 미국에서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 일반적으로 양수인은 양도대금(Net Proceeds)의 1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를 당한 부동산 양도자는 미국에서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한국 거주자(통상 미국 비거주자)가 미국에서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한국에서도 신고하여야 하며,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으로 소득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은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1년 미만 보유자산의 처분에서 발생하는 단기양도소득(Short-term Capital Gains)과 1년 이상 보유자산의 처분에서 발생하는 장기양도소득(Long-term Capital Gains)으로 분류하며, 단기양도소득은 일반소득과 합산하여 일반세율(10%~39.6%)을 적용하고, 장기양도소득은 양도자산의 종류 및 일반소득의 수준에 따라 0%, 15%, 20%의 우대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소득은 매년 4월 15일까지 소득세 신고 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양도소득에서 발생한 순양도손실(Net Capital Losses)은 매년 $3,000까지 일반 종합소득(Ordinary Income)에서 공제할 수 있고, 공제하지 못한 순양도손실은 이월되어 그 다음 해부터 양도소득 또는 일반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주거용자택(Principal Residence)을 처분한 경우, 양도소득 공제금액은 일정한 요건 하에서 $250,000(부부가 합산신고를 하는 경우 $500,000)이다.

관련법령 ▫ IRC §1, 61, 121, 1011, 1012, 1211, 1212, 1221, 1222, 1223

Q 61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동 양도소득에 대하여 미국에서도 세금을 내야 하는가?

한국 비거주자(일반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는 한국 비거주자에 해당)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 중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하여 먼저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등 미국세법상 미국인은 일반적으로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미국에서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4월 15일까지 한국에서의 부동산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미국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에서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으로 미국 소득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한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미국세액 산출 시 공제하게 되면 미국에서 추가 납부할 세액은 없을 뿐만 아니라, 양도대금을 미국으로 가져 올 때 자금출처가 되므로 미국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세법상 미국인은 통상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주소득세(State Income Tax)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미국 주정부에 추가적인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국내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한국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주소득세 계산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한국에서 비과세(예 : 1세대 1주택 비과세), 세액감면 등을 받았다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동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다. 이 경우에 미국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미국세액에서 공제 할 수 있는 세액이 없거나 적어지게 되는 것이다.

Q 62 한국에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미국 IRS에 언제, 어떻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부동산 양도 당시에 신고하지 않고 대금을 미국으로 가져 올 때 신고할 수 있는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일반적으로 한국 비거주자에 해당)가 한국에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4월 15일까지 미국 IRS에 동 양도소득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대금을 미국으로 가져올 때까지 신고를 연기할 수는 없다.

양도소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현금주의(Cash Basis)를 적용하여 대금을 받은 날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을 양도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고 약정에 의하여 그 후에 대금을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Installment Sale)에는 각각 지급받는 날에 양도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한국에서는 양도일(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에 2회 이상 양도한 때에는 양도연도의 다음연도 5.1~5.31 중에 합산하여 확정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Installment Sale의 경우에 한국에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 IRC §61, 901, 7701.

Q 63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 또는 미국에서 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상대방 국가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가능한가?

한국 비거주자(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는 한국 비거주자에 해당)가 한국내 재산을 양도한 경우 한국 법령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시민권자, 영주권자, 거주외국인 등 미국 세법상 미국인은 일반적으로 전세계 소득에 대하여 미국에서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4월 15일까지 한국에서의 부동산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미국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에서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미국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소득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한국에 납부한 소득세는 주소득세 납부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 내에 계속하여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경우로서 미국에 있는 아래 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비록 당해 자산이 미국에 소재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거주자 신분이므로 한국 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국에서도 동일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므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를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에는 법정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거나 또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국외 소재 자산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자산구분	자산유형별 종류
부 동 산	· 토지 ·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지상권 · 전세권 · 부동산임차권(등기여부 불문)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제외)
	·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으로 국내의 유가증권시장 · 코스닥시장과 유사한 외국의 시장에 상장된 내국법인의 주식 등
기타 자산	· 특정주식 등
	·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
	· 특정시설물이용권 및 관련주식 등
	·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18조의2(양도소득의 범위), 제118조의5(외국납부세액의 공제)

Q64 국내에 있는 부모가 국내 소재 주택을 처분하여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현금으로 증여하는 경우 한국에서 어떤 세금을 부담하여야 하는가? 부모가 주택을 먼저 증여하고 자녀가 양도하는 경우와 세금 차이는 없는가?

주택을 먼저 처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이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부모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당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양도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현금을 증여하기 위하여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송금하는 경우 증여받은 자녀(수증자)는 한국에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송금한 부모(증여자)는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주택을 먼저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은 자녀는 당해 주택의 증여 당시의 재산가액에 대하여 한국에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증여받은 재산을 자녀가 양도하는 경우 자녀가 비거주자이므로 항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자녀가 부모로부터 2009.1.1 이후 증여받은 당해 주택을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부모의 취득가액을 자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에 당해 주택을 증여받으면서 자녀가 부담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어느 경우에 세금부담이 적은 지는 구체적으로 세액을 계산하여 비교하여야 알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부모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부모가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전체적인 세금부담이 적다.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Q 65 부부 등이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양도소득세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가?

공동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공동명의자 각각에 대해 별도로 계산됨에 따라 현행 누진세율 체계하에서 단독명의로 양도하는 경우에 비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 취득 시 부담하는 취득세는 취득자 수와 관계없이 동일

예를 들어 남편 단독명의로 2채의 아파트를 소유하다가 2013년 1월에 아파트 1채를 양도(양도소득금액 1억 5천만원)하는 경우 세금을 3,673만원 정도 내야 하지만, 취득 시 공동명의(각각 1/2 지분)로 하면 세금이 2,436만원(1인당 1,218만원) 정도가 되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제55조(세율), 제103조(양도소득기본공제)

Ⅳ. 상속세 관련

Ⅳ. 상속세 관련

Q66 한국은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배하는가? 법정 분배비율과 다르게 분배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상속재산의 분배방법을 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용 법률이 결정되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상속시 적용되는 법률은 피상속인(사망자)의 본국 법률이다. 피상속인이 한국 국적자이면 한국법이 적용되고, 미국 시민권자이면 미국법이 적용된다. 다만, 피상속인이 미국인이고 한국에 부동산이 소재한 경우, 피상속인의 본국법인 미국법에서는 부동산의 상속에 관하여 그 소재지국의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 한국법이 적용된다.

한국의 경우 유언이나 협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민법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의 분배가 이루어진다. 민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 순위는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이다.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최근친이 선순위이고(예 : 아들과 손자가 있는 경우 아들),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는 공동상속(아들과 딸이 있는 경우는 공동상속)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상속인이 있을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되며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1.5배가 된다.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상속재산을 분배하고자 한다면 피상속인이 유언을 하거나,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는 방법이 있다. 다만,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하여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분배하더라도,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할 수 없다.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이며, 유류분의 범위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이고,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1/3이다.

관련법령

- 국제사법 제49조 제1항, 제9조 제1항
- Restatement Conflict of Laws §249
-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제1009조(법정상속분), 제1112조(유류분)

Q67 상속재산을 분배한 후에 다시 상속인들 사이에서 분배비율을 달리하여 조정하는 경우 국내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민법상 상속재산은 상속인들 사이에서 언제든지 협의분할 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되지만(민법 제1013조), 각 상속분이 1차 확정(부동산 등기, 주식의 명의개서 등)된 후 협의분할을 이유로 당초 상속분에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지분이 감소된 상속인이 지분이 증가된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당초 상속재산 분할에 원인무효의 사유가 있거나,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1)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하여 당초 상속분이 변동된 경우

(2)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 상속분으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4)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의한 법정상속분으로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통해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물납 허가를 받지 못하여 당초의 물납 재산을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제3항

Q 68 국내에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앞으로 등기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한국에 주민등록 또는 호적이 없었던 시민권자 앞으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가?

상속받은 부동산을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앞으로 등기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2)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3) 피상속인(사망자) 및 상속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

(4) 등록세영수필확인서

(5) 토지 · 건축물대장

(6) 인감증명서(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이 필요)

※ 2012.12.1.부터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선택 사용 가능

※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신청서나 위임장 또는 첨부서면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뜻의 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한국에 주민등록 또는 호적이 있었던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피상속인(사망자)의 이름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이에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시민권자가 주민등록 또는 호적이 없었던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미국법에서 정하는 상속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시민권자의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대한민국 내의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토지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61조(인감증명의 제출)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국내거소신고), 제9조(주민등록 등과의 관계)
- 인감증명법 제3조(인감증명서)
- 외국인토지법 제5조(계약 외의 토지취득 신고)

Q 69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국내에 가지 않고 상속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국내에 가지 않고 상속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대리인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본인이 직접 등기하는 경우와 동일하며 추가로 위임장이 필요하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2)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3) 피상속인(사망자) 및 상속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

(4) 등록세영수필확인서

(5) 토지·건축물대장

(6) 인감증명서(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이 필요)

※ 2012.12.1.부터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선택 사용 가능

※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신청서나 위임장 또는 첨부서면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뜻의 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7) 위임장

위임장에는 위임자(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의 서명 또는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고, 등기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내역, 대리인의 인적사항, 대리인이 처리하여야 할 사무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위임장에 대하여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위임장에 인감을 사용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서명한 경우에는 그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미국 관공서의 증명, 공증인의 공증, 또는 한국 대사관(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61조(인감증명의 제출)
- 인감증명법 제3조(인감증명서)

Q 70 부모가 오래 전에 사망하였는데, 지금 국내 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가?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가?

피상속인의 재산은 등기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상속포기의 의사표시를 별도로 하지 않는 이상 부모의 사망과 동시에 자녀(상속권자)는 부모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부모가 오래 전에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상속인들 앞으로 등기를 할 수 있다. 상속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187조 단서 규정에 따라 반드시 상속인 앞으로 등기할 것이 요구된다.

사망하기 전(상속개시 전)에 부모가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증빙서류를 갖추어 상속인들이 그 부동산 매수인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으나, 마치 부모가 생전에 처분한 것처럼 등기원인서류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관련법령

- 민법 제187조
- 외국인토지법 제5조

Q 71 한국은 상속재산이 부채보다 적은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는 어떻게 하는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인이 자기의 재산으로 채무를 상환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신고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사망자)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에 상속인의 의사를 묻지 아니하고 채무의 전부를 승계시키는 것은 상속인에게 오히려 경제적으로 불리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여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여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속채무가 많은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상속포기(민법 제1041조)란 상속인의 재산과 부채를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을 법원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을 포기하려는 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상속포기의 경우 1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2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생기게 되고 그 상속인들도 다시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나중에 상속재산이 추가로 발견되어도 상속을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한정승인을 활용하여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더 편리한 방법일 수 있다.

관련법령

-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 제1041조(상속포기)

Q72 한국의 상속세 납세의무는?

자연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과 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유언 등에 의해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受遺者)는 부과되는 상속세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따른 일정비율 만큼의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상속세 납부의무 비율 :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과거 증여재산 과세표준 + 순수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인별 또는 수유자별 순수 상속재산 가액/전체 순수 상속재산 가액)) ÷ (전체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인 및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과거 증여된 증여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사망자)의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부과된다.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한국내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가 부과된다.

한편, 미국 상속세법상 미국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전 세계 상속재산에 대하여 미국에서 상속세가 부과되므로 동 미국 거주자의 한국내 재산에 대하여 미국에서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동 미국 거주자가 한국내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에서도 상속세가 부과되는데, 이 경우에 한국에서 납부한 상속세는 미국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상속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Q 73 한국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세 과세표준은 피상속인이 소유한 모든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우선 산정한 다음 이 금액에서 비과세 상속재산, 공과금, 채무, 상속공제액 등을 차감하고,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 전 10년(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 상속세 과세표준 = 피상속인이 소유한 모든 재산의 가액 – 비과세 상속재산 및 공익법인에 출연한 상속재산의 가액 – 피상속인이 변제할 공과금, 채무 및 장례비용 +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 전 10년(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 + 재산처분액 또는 채무부담액 중 용도불분명 금액 – 상속공제액(기초공제,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금융재산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및 감정평가수수료

상속세 과세표준에 세율(10%~50%,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자녀가 아닌 손자, 외손자 등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세대생략상속에 따른 30% 할증과세를 한다. 다만, 자녀가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사유가 있어 손자 또는 외손자가 대습상속인으로서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상속세액을 산출하는 경우 증여 당시 부담한 증여세액은 기납부 증여세액으로 공제한다.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내지 제29조(외국납부세액공제)

Q74 한국 상속세의 세율은?

상속세는 다음과 같이 상속세 과세표준에 따라 5단계 초과누진세율 체계를 가지고 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구체적인 상속세 산출세액 계산방법은 아래의 사례와 같다.

과세표준(사례)	산출세액의 계산
9천만원	9천만원 × 10% = 9백만원
3억원	3억원 × 20% – 누진공제 1천만원 = 5천만원
8억원	8억원 × 30% – 누진공제 6천만원 = 1억 8천만원
20억원	20억원 × 40% – 누진공제 1억 6천만원 = 6억 4천만원
100억원	100억원 × 50% – 누진공제 4억 6천만원 = 45억 4천만원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6조(상속세 세율)

Q 75 한국 상속세는 언제, 어디에, 어떻게 신고 · 납부하여야 하는가?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월 이내에,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및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9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상속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할 세무서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이며,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주요(가액이 가장 큰) 상속재산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이다.

상속세 납부방법은 일시 현금납부, 분납, 연부연납, 물납이 있다.

(1) 분납 : 상속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서 분납(나누어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할 수 없다.

(2) 연부연납 : 상속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고 5년(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7년 또는 1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연부연납(연도별로 나누어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연부연납세액에 대해서는 1일 100,000분의 10.959(年 4.0%)에 해당하는 가산금(이자상당액)을 부담해야 한다.

(3) 물납 : 상속재산 중 부동산 및 유가증권가액 비율이 50%를 초과하고 상속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부동산 및 유가증권으로 물납(현금 대신 현물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다.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조(과세관할),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제70조(자진납부), 제71조(연부연납), 제73조(물납)

Q 76 한국은 할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아버지가 상속받지 않고 세대를 건너서 손자가 상속받을 수 있는가? 세대를 건너서 상속하는 경우 불이익은 없는가?

1순위 상속인인 자녀와 배우자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다음 순위 상속인인 손자가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으며, 할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손자에게 상속하도록 유언을 하거나 손자와 사인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기로 계약을 체결해 둔 경우 손자가 상속재산을 취득할 수 있다.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고,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상속세에 30%를 할증하여 과세하게 된다.

다만, 아버지가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사유가 있어 손자가 대습상속인으로서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따른 할증과세 등 불이익은 없다.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 제27조(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Q 77 미국의 상속세 납세의무는?

피상속인이 미국 상속세법상 거주자이거나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전 세계에 소재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고, 비거주외국인인 경우에는 미국 내에 소재하는 유산(부동산, 동산, 주식, 사채, 조합지분 등)이 $60,000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다.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모든 재산, 사망 시 이전키로 한 재산, 취소가능신탁의 재산권, 생명보험금 수령액, 피상속인이 수익자를 지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신탁의 재산권 등이 포함된다. 피상속인이 연간 증여공제액을 초과하여 증여한 금액은 상속재산에 가산된다.

상속재산에 대한 모기지(Mortgage) 등 부채, 장례비용, 유언집행 등에 소요된 비용, 적격자선단체에 기부한 금액,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인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가 아닌 경우 적격신탁(Qualified Domestic Trust)을 통하여 상속받는 경우에는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3년 상속세의 최고세율은 40%이다.

통합세액공제를 활용하면 2013년의 경우 $5,250,000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상속할 수 있다. 주정부에 납부한 상속세는 과세대상 재산가액에서 공제되고, 피상속인이 생전에 납부한 증여세, 외국납부세액 등에 대해서는 상속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유언집행인(Executor), 신탁(Trust)에서 지명한 수탁자(Trustee), 유산을 상속받는 자 등은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Form 706).

관련법령

- IRC §2001, 2005, 2013, 2101, 2103, 2104, 2105
- Treasury Regulation §20.2101-1, 20.2104-1(a)

Q78 한국 비거주자인 부모가 사망한 경우로서 한국 내에 재산이 있을 경우 한국 또는 미국에서 상속세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한국 비거주자(일반적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는 한국 비거주자에 해당)가 사망한 경우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한국내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를 불문하고 한국에서 상속세가 과세된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고 기초공제 2억원만이 공제된다.

피상속인(사망자)이 국내 거주자인가 비거주자인가 여부는 영주권 또는 시민권 취득 여부에 불구하고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인가 또는 국외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생활 근거지는 직업,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재산 소유상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판단한다.

미국 시민권자 및 미국 상속세법상 미국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미국에서도 전 세계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므로 한국내 재산에 대하여 한국에서 상속세가 부과되었다 하더라도 미국에서도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다. 이 경우에 한국내 상속재산에 대해 한국에서 납부한 상속세는 미국에서 상속세를 계산할 때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IRC §2014

Q 79 한국 거주자인 부모가 사망한 경우로서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상속받을 경우 한국 또는 미국에서 상속세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한국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한국내 및 미국 등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국에서 상속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에 상속인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를 불문하고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등의 각종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거주자의 외국 소재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나라에서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 한국에서 상속세를 계산할 때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이중과세되는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한국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국내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한국거주자가 미국 시민권자나 미국 상속세법상 미국 거주자가 아닌 한 미국에서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한국내에서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이 $100,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Form 3520을 작성하여 다음 해 4월 15일까지 IRS에 소득세신고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미국 내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동 미국 내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국에서 상속세가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도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다.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IRC §2103

Q 80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한국은 각종 공제가 어떻게 되는가?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각종 공제는 어떻게 되는가?

한국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다음의 각종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상속인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를 불문하고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 분	공 제 금 액
기 초 공 제	· 2억원
가업 · 영농 상 속 공 제	· 가업상속공제 : 가업상속재산의 70%(최대 한도액 300억원) · 영농상속공제 : 영농상속재산가액(5억원 한도)
배 우 자 공 제	·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가액(법정지분 및 30억원 한도) · 배우자 최소공제액 : 5억원 공제
기 타 인 적 공 제	· 자 녀 공 제 : 1인당 3,000만원 · 미성년자공제 : 500만원 × 20세까지의 잔여연수 · 연로자공제 : 1인당 3,000만원(60세 이상인 자) · 장애자공제 : 500만원 × 통계청장이 발표하는 기대여명(期待餘命)
일 괄 공 제	· 일괄공제 5억원과 (기초공제+기타인적공제) 중 선택
금 융 재 산 상 속 공 제	· 순금융재산가액의 20% 공제(공제한도 : 2억원) · 순금융재산가액의 20%가 2천만원에 미달시 2천만원을 공제
동 거 주 택 상 속 공 제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을 무주택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주택가액의 40%(5억원 한도) 공제
재 해 손 실 공 제	· 상속개시 이후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 · 훼손된 경우 그 손실가액 공제

한편,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를 불문하고 각종 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기초공제 2억원만 적용된다.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내지 제24조(상속공제)

Q 81 한국은 사망 전에 증여하는 경우와 사망 후에 상속하는 경우 중 어느 것이 세금부담이 적은가?

한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공제액과 증여재산공제액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망 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세금부담이 많을 수 있다.

또한, 배우자, 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증여자가 10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고 기납부한 증여세액을 공제해 주는 증여재산 합산과세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증여한 때에 증여세를 부담했다고 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획일적으로 세부담을 비교하기 어려우며, 상황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구체적으로 계산하여 비교하여야 어느 쪽이 세금부담이 적은지 알 수 있다.

〈21억원을 증여한 경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증여세 부담 비교〉

수증자	증여재산	거주자가 증여받은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경우		
		증여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증여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배우자	11억원	6억원	5억원	9천만원	–	11억원	2억8천만원
아들	5억원	3천만원	4억7천만원	8천 4백만원	–	5억원	9천만원
딸	5억원	3천만원	4억7천만원	8천 4백만원	–	5억원	9천만원
합 계	21억원			2억5천8백만원	–		4억6천만원

〈21억원을 상속한 경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상속세 부담 비교〉

상속인	상속재산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상속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배우자	11억원	배우자 상속공제액 9억원 자녀의 일괄공제 5억원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기초공제 2억원만 공제가능		
아들	5억원						
딸	5억원						
합 계	21억원	14억원	7억원	1억5천만원	2억원	19억원	6억원

Q82 한국 또는 미국에서 납부한 상속세에 대하여 상대방 국가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가능한가?

한국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국내외에 소재하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국에서 상속세를 과세한다. 이 때 미국에 소재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미국에서 납부한 상속세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상속세를 계산할 때 미국에서 납부한 상속세액과 아래 공제세액 중 적은 금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text{공제세액} = \text{상속세 산출세액} \times \frac{\text{외국에서 상속세가 부과된 과세표준}}{\text{총 상속세 과세표준}}$$

시민권자 또는 미국상속세법상 미국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전 세계에 소재하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미국에서 상속세를 과세한다. 이 때 외국에 소재한 상속재산에 대해 해당외국(한국을 포함)에서 납부한 상속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국에서 상속세를 계산할 때 외국납부세액으로 상속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미국소재 재산에 대하여 해당외국(한국)에서 상속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외국납부세액 공제)

Q 83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한국 또는 미국에서 세금은 어떻게 되는가? 처분대금을 미국으로 가지고 오는 방법은?

한국 비거주자(일반적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는 한국 비거주자에 해당)가 상속받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 중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하여 먼저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비거주외국인 등 미국세법상 미국인은 일반적으로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미국에서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4월 15일까지 한국에서의 부동산 양도소득을 미국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에서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재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시가)으로 하게 되며, 이 점은 한국과 미국이 동일하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상속받은 부동산 처분대금을 해외로 반출하려면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하고, '재외동포 재산반출 신청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세무서장이 발급한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확인서 신청일이 부동산 양도일부터 5년 이내인 경우에 한함)를 거래 외국환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한국에 소재하는 재산이 동산이나 주식(단, 회사 자산의 50% 이상이 부동산인 경우는 부동산양도소득으로 과세)인 경우, 동 재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한미조세조약상 양도자의 거주지국인 미국에서만 과세되고 한국에서의 과세는 면제된다.

관련법령

- IRC §1014, 2001, 2010, 2014, 2031, 2056
- 한미조세조약 제16조(양도소득)

Q84 한국에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알려주지 않은 국내 상속재산(부동산, 금융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지 않는 핵가족화 심화현상으로 상속인들은 부친 등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세 신고를 하긴 해야 하는데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부동산, 금융재산)이 얼마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아래와 같이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확인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1) 부동산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국토해양부가 관리하고 있는 지적전산자료를 통하여 그 상속인에게 사망자 명의의 토지를 조회해주는 "조상땅 찾기" 제도를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지적업무 부서(지적과 · 토지정보과, 토지관리과)에 신청하면 전국에 소재한 피상속인 명의 토지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ㅇ 신청자격 : 상속인 또는 대리인(2011년 8월부터 형제자매, 4촌이내 방계혈족도 상속권자면 누구나 조회할 수 있도록 가능)

ㅇ 신청방법 및 장소 : 시 · 도 및 시군구청 지적부서(지적과 · 토지정보과)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ㅇ 구비서류 : 신청서(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포함), 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여권(해외 이민간 상속권자)

– 대리인 신청 : 위임장(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 서식), 대리인 신분증, 인감증명서

– 수수료 : 무료

ㅇ 자료조회의 범위 : 시도, 시군구, 전국자료 신청 가능함

(2) 금융재산

상속인이 직접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를 조회하기 위해 모든 금융회사를 방문하지 않아도 금융감독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02-3771-5114

○ 신청인 : 상속인 또는 대리인

○ 신청방법 및 장소 : 신청인이 금융감독원 본·지원 및 국민은행, 삼성생명 고객플라자, 농협, 우리은행, 동양종합금융증권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또는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상속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 조회대상 금융회사 : 은행(농수협포함), 증권, 보험, 우체국, 새마을금고, 종합금융,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카드, 리스, 할부금융, 신기술금융 등), 산림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 한국예탁결제원

○ 조회금융 거래범위 :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좌,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

○ 조회결과 확인방법 : 신청서 접수일 7일 경과 후부터 금융감독원(www.fss.or.kr) 또는 e-금융민원센터(www.fcsc.or.kr)에 접수하여 핸드폰 등을 통한 본인인증 과정을 거친 후 조회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각 금융협회별로 홈페이지에서 조회결과를 확인할 수 있음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열람청구권)

Q 85 일반서민층도 국내 상속세 납부를 신경써야 하는가? 상속가액이 얼마이면 국내 상속세를 부담하는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많든 적든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데, 이 때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안내도 되는지가 매우 궁금할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반 서민들은 국내거주자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세에 대하여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중산층의 상속세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고 상속인의 생활안정 및 기초생활 유지를 위하여 상속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 공제해 주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최소한 10억원을 공제해 주며, 한 분만 생존해 계시다가 돌아가신 경우에도 최소 5억원을 공제해 준다. 게다가 돌아가신 분이 부담해야 할 부채가 있으면 이 또한 상속세 계산 시 공제해 준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이 배우자(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이면 상속세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 단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만 상기 공제가 적용된다. 비거주자인 경우 기초공제 2억원과 감정평가수수료만 공제가능하다.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제19조(배우자공제), 제21조(일괄공제)

Ⅴ. 증여세 관련

Ⅴ. 증여세 관련

Q86 한국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한국의 경우 미국과는 달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수증자)가 증여세의 납세의무자이다.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외의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이 경우에 증여자가 거주자인가 비거주자인가에 관계없이 수증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일반적으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한국 비거주자에 해당)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2013.1.1. 이후부터는 국내소재 재산 뿐만 아니라 특정국외소재재산 즉,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적금 등 해외금융계좌에 보유된 재산과 국내소재 재산을 50% 이상 보유한 외국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도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자에게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년 1월 1일부터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위 특정국외소재재산 증여시 비거주자에게 증여세 과세) 또는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 포함)에는 증여자에게 한국에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다.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수증자가 ①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및 ②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에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③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가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위와 같이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증여세는 수증자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않으나,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한 증여세액도 당초의 증여재산 가액에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1조(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Q 87 한국의 증여재산의 범위는? 어떤 경우에 증여로 보는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재산에는 당사자 간에 재산을 무상으로 주고받는 민법상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괄적인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재산이나 이익을 포함한다.

즉,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 형식 ·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법상 증여재산 및 상속재산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인 간의 몫이 변동된 경우 등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반환한 경우 그 반환시기에 따라 당초 증여분과 반환분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둘째, 신탁재산을 맡긴 자와 찾아간 사람이 다른 경우,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취인이 다른 경우, 재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팔거나 높은 가액으로 사 준 경우 그 차액, 다른 사람의 채무를 대신 갚아 준 경우, 부동산이나 금전을 대가를 받지 않고 빌려 준 경우, 회사 자본금의 증가나 감소 과정 등에서 이익을 준 경우 등은 그 거래형식과 목적에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셋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재산을 거래하는 경우, 연령이나 소득상황 등에 비추어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등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되, 납세자가 대가를 지급했다고 소명하거나 자기의 소득금액이나 처분재산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입증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또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고 2012년 이후는 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로 얻은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한다.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5조의2

Q88 한국에서 부모, 배우자, 자녀 등에게 양도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는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또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 양도자로부터 그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대가를 지급한 것이 명백할 때에는 증여추정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 포함)를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다만, 지급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상당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 시의 증여추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 ·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Q 89 한국의 연령별, 재산종류별 자금출처조사 기준은?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한 자가 직업 · 연령 ·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취득 ·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채무를 상환)한 때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취득 ·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그러나 본인의 소득 · 재산 등으로 취득 · 상환한 사실을 입증하게 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재산취득일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의 재산취득금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이 연령별 또는 재산종류별로 다음의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는다. 다만, 그 금액에 미달하더라도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구 분	취 득 재 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택	기타재산		
1. 세대주인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2억원	5천만원	5천만원	2억5천만원
나. 40세 이상인 자	4억원	1억원	5천만원	5억원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1억원	5천만원	5천만원	1억5천만원
나. 40세 이상인 자	2억원	1억원	5천만원	3억원
3. 30세 미만인 자	5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8천만원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Q 90 한국에서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1) 불우이웃돕기 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

(2) 장애인이 지급받는 보험금 중에서 연간 4천만원

(3)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기타 이와 유사한 것

(4)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교육비로서 통상적인 금품

(5) 학자금,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6) 기념, 축하, 부의금 등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7) 혼수용품(가사용품에 한하고 호화용이나 주택, 차량 등은 제외)

(8) 수증 받아 국외에서 반입된 물품으로서 관세의 과세가액이 100만원 미만인 금품

다만, 생활비, 유학경비 등 학자금, 교육비 등 명목으로 받은 경우에도 동 금전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을 취득하거나 정기예금에 저축하는 등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지 않는 금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Q91 한국에서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증여받은 재산을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수증자(증여받은 자)가 결과적으로 무상 취득한 재산은 없지만, 증여재산의 반환과 재증여를 통해 증여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환시기에 따라 당초 증여분 또는 반환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가 다음과 같이 발생할 수 있다.

반환(재증여) 기간		처 리 방 법	
		당초 증여	반환 · 재증여
신고기한 (3월) 내	납기전 징수사유로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를 결정한 경우	과 세	과세 제외
	증여세를 미결정한 경우	과세 제외	과세 제외
신고기한 경과 후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	과 세	과세 제외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경과	과 세	과 세

다만, 당초 증여등기에 실질적 원인무효의 사유가 있어 증여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및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인에게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시기에 관계없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에도 환급한다.

✿ 증여재산 반환시기별 과세방법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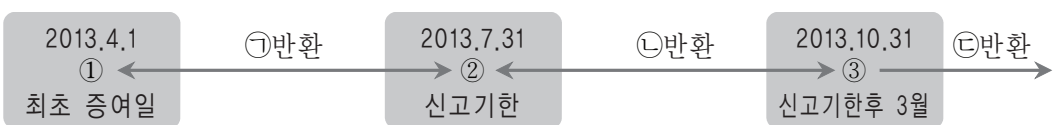

- ㉠(4.1~7.31)기간 중 반환시 : 당초 증여분(①) 및 반환분(㉠) 과세제외
- ㉡(8.1~10.31)기간 중 반환시 : 당초 증여분(①) 과세, 반환분(㉡) 과세제외
- ㉢(11.1~)이후 반환시 : 당초 증여분(①) 및 반환분(㉢) 모두 과세함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제4항 및 제5항

Q92 한국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증여세는 수증자가 여러 증여자로부터 시기를 달리하여 증여를 받았을 때에는 각각 증여자와 수증자별로 구분한 후 증여시기별로 증여세액을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분산증여를 통해 누진세율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합산하여 과세한다.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당시의 재산가액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증여한 것을 포함)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종전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산한 후, 여기에 증여재산공제를 하여 산출한다.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10%~50%,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자녀가 아닌 손자, 외손자 등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세대생략증여에 따른 30% 할증과세를 한다.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산출한 경우에는 종전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기납부 증여세액으로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한다.

* 증여세 계산사례 : 거주자인 甲이 여러 차례에 걸쳐 아버지와 어머니 및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시점별 부담할 증여세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증여일	증여자	증여 재산	합산 대상	과세 가액	증여 공제	과세 표준	산출 세액	기납부 세 액	납부할 세 액
06.1.20	아버지	3억원	–	3억원	0.3억원	2.7억원	0.44억원	–	0.44억원
07.2.20	어머니	5억원	3억원	8억원	0.3억원	7.7억원	1.71억원	0.44억원	1.27억원
08.6.20	배우자	10억원	–	10억원	6억원	4억원	0.7억원	–	0.7억원
10.6.20	아버지	2억원	8억원	10억원	0.3억원	9.7억원	2.31억원	1.71억원	0.6억원

*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보아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산출하고, 종전 증여 당시 증여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제55조(증여세 과세표준)

Q 93 한국 증여세의 세율은?

증여세는 다음과 같이 증여세 과세표준에 따라 5단계 초과누진세율 체계를 가지고 있다.

과 세 표 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구체적인 증여세 산출세액 계산방법은 아래의 사례와 같다.

과세표준(사례)	산출세액의 계산
9천만원	9천만원 × 10% = 9백만원
3억원	3억원 × 20% – 누진공제 1천만원 = 5천만원
8억원	8억원 × 30% – 누진공제 6천만원 = 1억 8천만원
20억원	20억원 × 40% – 누진공제 1억 6천만원 = 6억 4천만원
100억원	100억원 × 50% – 누진공제 4억 6천만원 = 45억 4천만원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6조(증여세 세율)

Q 94 한국은 비거주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거주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수증자(증여를 받은 자)가 비거주자(일반적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는 한국 비거주자에 해당)인 경우에는 증여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관계없이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다.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관계없이 10년 동안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 6억원

(2) 직계존비속(2010.1.1 이후 증여분부터 계부모자간 증여도 동일하게 적용)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 3천만원. 단, 증여받는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천5백만원

* 미성년자 : 만 20세 미만인 자, 2013.7.1.부터 민법 제4조 개정으로 만 19세 미만으로 적용함

(3) 위 (2)외에 6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 5백만원

* 혈족 : 혈연관계가 있는 친족으로 자연혈족과 법정혈족(양자)으로 구분된다.
* 인척 : 혼인으로 생기는 친족관계로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등이다.

(4) 타인(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 증여재산공제 없음

○ (관련예규) 거주자 및 비거주자인 미성년자 손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 및 연대납부의무 등(재산세과-534, 2011.11.11)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 신분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한하여 적용되며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할증과세 하고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

Q 95 한국 증여세는 언제, 어디에, 어떻게 신고 · 납부하여야 하는가?

수증자(증여를 받은 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동일하다.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할 관할 세무서는 수증자가 거주자인가 또는 비거주자인가에 따라 다음과 같다.

(1)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단, 수증자의 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수증자의 거소지 관할 세무서

(2)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 불분명한 경우 :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3) 수증자와 증여자가 모두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 증여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

증여세 납부방법은 일시 현금납부, 분납, 연부연납, 물납이 있다.

(1) 분납 : 증여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서 분납(나누어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연부연납세액은 분납을 할 수 없다.

(2) 연부연납 : 증여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고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연부연납(연도별로 나누어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연부연납세액에 대해서는 1일 100,000분의 10.959(年 4.0%)에 해당하는 가산금(이자상당액)을 부담해야 한다.

(3) 물납 : 증여재산 중 부동산 및 유가증권가액 비율이 50%를 초과하고 증여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부동산 및 유가증권(비상장주식은 제외)으로 물납(현금 대신 현물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다.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조(과세관할),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제70조(자진납부), 제71조(연부연납), 제72조(물납)

Q96 미국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미국의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자이다(한국의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임). 증여자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증여세법상 거주자인 경우에는 전 세계에 소재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고, 증여자가 비거주 외국인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미국 내에 소재하는 유형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수증자가 대신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각 수증자에 대하여 연간 $14,000씩(Annual Gift Tax Exclusion) 증여세가 면제된다. 수증자(Donee)가 배우자로서 미국 시민권자(U.S. Citizen)인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한 증여에 대하여 전액 증여세가 면제된다. 증여를 받는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U.S. Citizen)가 아닌 외국인인 경우 $14,000의 연간 증여세 면제액(Annual Exclusion) 대신 연간 $143,000(2013년 기준)을 증여가액에서 차감해 준다. ?

2013년 증여세 최고세율은 40%이다.

연간 증여세 면제액을 초과하여 증여하는 경우 2013년에는 통합세액공제 (Unified Tax Credit)를 활용하여 한 번 또는 여러 번에 걸쳐 증여자 1인당 평생 증여재산가액 $5,250,000까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증여를 할 수 있다. 증여세에서 통합세액공제를 활용하는 경우 상속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합세액공제가 줄어들게 된다.

증여자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증여세법상 거주자인 경우 수증자에게 연간 증여재산 공제액보다 많은 재산을 증여한 때 증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4월 15일까지 증여세 신고서(Form 709)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증여재산의 가액이 연간 공제액보다 적더라도 부부가 함께 분할 증여를 한 때에는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관련법령 ▫ IRC §2501, 2502, 2503, 2505, 2513, 2523, 6075, 6901

Q97 Form 3520 보고의무의 내용,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Penalty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등 미국세법상의 미국인은 다음의 경우에 다음 해 4월 15일까지 소득세 신고 시에 Form 3520을 제출하여 정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간 $100,000를 초과하여 비거주자인 외국인(Nonresident Alien)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또는 상속받은 경우

(2) 연간 $15,102(2013년 기준)를 초과하여 외국회사 또는 외국 Partnership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 외국신탁(Foreign Trust)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분배를 받거나, 외국신탁에 투자하거나, 또는 외국신탁과 거래를 한 경우

Form 3520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Penalty는 다음과 같다.

(1) 위의 (1)과 (2)에 해당하는 증여의 경우에는 신고가 지연된 월수에 대하여 매월 증여가액의 5%(최고 25% 한도)

(2) 위의 (3)에 해당하는 외국 신탁의 경우에는 외국신탁에 이전한 재산가액 또는 분배받은 재산가액(Gross Value)의 35%

관련법령 ▫ IRC §6039F(c), 6677

Q98 한국 거주 부모가 미국 거주 자녀에게 한국 소재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한국 또는 미국에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한국의 경우 수증자(증여를 받은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수증자가 비거주자(일반적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는 한국 비거주자에 해당)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 및 특정국외소재재산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여기서 '특정국외소재재산'이란 비거주자가 2013.1.1. 이후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예금 · 적금 등 해외금융계좌에 보유된 재산과 국내소재재산을 50% 이상 보유한 외국법인 주식을 말한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는 허용되지 않으며, 증여자는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 (관련예규)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서면4팀-1130, 2007.04.06.)

미국의 경우 증여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자가 미국 증여세법상 비거주외국인인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미국에 소재한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본 사례와 같이 한국 거주 부모(단 미국시민이 아닐 것)가 미국 거주 자녀에게 한국 소재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한국에서는 수증자(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미국에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미국 세법상 미국인이 연간 $100,000를 초과하여 비거주자인 외국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다음 해 4월 15일까지 소득세 신고 시에 Form 3520을 제출하여 정보를 보고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Q 99 한국 거주 부모가 미국 거주 자녀에게 미국 소재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한국 또는 미국에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한국의 경우 거주자가 비거주자(일반적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는 한국 비거주자에 해당)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하여 증여자는 한국에서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해당 재산에 대하여 미국의 법령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에는 한국에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2013.1.1.이후부터는 국외재산 중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적금 등 해외금융계좌에 보유된 재산이나 국내소재 재산을 50% 이상 보유한 외국법인 주식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에 대하여 미국의 법령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더라도 한국에서 수증자인 비거주자에게 증여세를 과세(미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그 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 증여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자가 시민권자 또는 미국 증여세법상 미국거주자인 경우에는 전세계의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보고 및 납세의무가 있으며, 증여자가 미국 증여세법상 비거주외국인인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미국에 소재한 경우에 증여세 보고 및 납세의무가 있다. 증여자가 미국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증자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따라서 본 사례와 같이 한국 거주 부모가 미국 거주 자녀에게 미국 소재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한국에서도 증여자인 부모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고, 미국에서도 증여자인 부모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미국의 법령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에는 한국에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2013년 미국은 증여세, 상속세 면제상당금액이 525만불임. 따라서 2013년에 미국 시민권자인 한국 거주자가 미국 증여세법상 미국거주자에게 미국 소재 5백만불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미국에서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며, 위 문장 “미국의 법령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에 해당되어 한국에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함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Q100 미국 거주 부모가 한국 거주 자녀에게 한국 소재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한국 또는 미국에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한국의 경우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한국 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받는 재산의 소재지를 불문하고 전 세계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이 경우에 증여자가 거주자인가 비거주자인가에 관계없이 수증자는 한국에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

미국의 경우 증여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자가 시민권자 또는 미국 증여세법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 세계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본 사례와 같이 미국 거주 부모(미국 거주자)가 한국 거주 자녀(한국 거주자)에게 한국 소재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한국에서는 수증자인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고, 미국에서는 증여자인 부모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이 경우 미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해 주지 않으므로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Q 101 미국 거주 부모가 한국 거주 자녀에게 미국 소재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한국 또는 미국에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한국의 경우 수증자(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일 현재 한국 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의 소재지를 불문하고 전 세계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이 경우에 증여자가 거주자이든 비거주자이든 상관없이 수증자는 한국에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 또한, 외국에 소재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증여세를 계산할 때 그 부과받은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증여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자가 시민권자나 미국증여세법상 미국거주자인 경우에는 전 세계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본 사례와 같이 미국 거주 부모가 한국 거주 자녀에게 미국 소재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한국에서는 수증자인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고, 미국에서는 증여자인 부모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미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한국에서 증여세를 계산할 때 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9조(준용규정)(외국납부세액공제)

Q 102 미국 거주 부모가 미국 거주 자녀에게 한국 소재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한국 또는 미국에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한국의 경우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며, 수증자(증여를 받은 자)가 비거주자(일반적으로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는 한국 비거주자에 해당)인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국내에 소재한 경우에만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므로 증여재산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증여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자가 시민권자 또는 미국 증여세법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 세계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본 사례와 같이 미국 거주 부모가 미국 거주 자녀에게 한국 소재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한국에서는 수증자인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고, 미국에서는 증여자인 부모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따라서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Q 103 한국 거주 부모가 한국 거주 자녀에게 미국 소재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한국 또는 미국에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한국의 경우 수증자(증여 받은 자)가 증여일 현재 한국 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의 소재지를 불문하고 전 세계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 또한, 외국에 소재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증여세를 계산할 때 그 부과받은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증여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증여자가 미국 비거주외국인인 경우에는 미국 소재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본 사례와 같이 한국 거주 부모가 한국 거주 자녀에게 미국 소재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한국에서는 수증자인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고, 미국에서는 증여자인 부모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미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한국에서 증여세를 계산할 때 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증여세 과세문제 (FAQ 98~103 요약)〕

증여자	수증자	증여재산	증여세 과세내용		FAQ
			한 국	미 국	
한국 거주 부모	미국 거주 자녀	한국 소재 재산	한국 소재 재산 과세 증여자 연대납세의무	과세안함	98
한국 거주 부모	미국 거주 자녀	미국 소재 재산	증여세 과세하나, 미국에서 부과된 경우 과세안함 *특정국외소재재산 유의	증여자에게 과세가능	99
미국 거주 부모	한국 거주 자녀	한국 소재 재산	한국 소재 재산 과세	증여자에게 과세	100
미국 거주 부모	한국 거주 자녀	미국 소재 재산	미국 소재 재산 과세 외국납부세액 공제 가능	증여자에게 과세	101
미국 거주 부모	미국 거주 자녀	한국 소재 재산	한국 소재 재산 과세	증여자에게 과세	102
한국 거주 부모	한국 거주 자녀	미국 소재 재산	미국 소재 재산 과세 외국납부세액 공제 가능	증여자에게 과세가능	103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9조(준용규정)(외국납부세액공제)

Q 104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미국의 본인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한국에 송금한 후, 자녀 또는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를 사는 경우 어떤 세금문제가 있는가?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미국의 본인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한국에 송금한 후 그 자금으로 배우자 또는 자녀 명의로 국내 아파트를 사는 경우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 해당된다.

한국에서는 수증자인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배우자 또는 자녀가 한국 거주자인 경우에는 10년 동안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즉, 동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한국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1) 직계존비속(2010. 1. 1. 이후 계부모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 3천만원. 단, 증여받는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천5백만원

(2)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 6억원

미국에서는 증여자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증여세법상 미국 거주자인 경우 전세계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수증자(Donee)가 배우자로서 미국 시민권자(U.S. Citizen)인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한 증여에 대하여 전액 증여세가 면제되며, 배우자가 미국 비거주자인 경우 재산공제액은 연간 $143,000(2013년 기준)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수증자가 자녀 또는 기타의 자인 경우에는 각 수증자에 대하여 $14,000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연간 증여세 면제액을 초과하여 증여하는 경우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를 활용하여 한 번 또는 여러 번에 걸쳐 증여자 1인당 평생 증여재산가액 $5,250,000(2013년 기준)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효과가 있다. 증여세에서 통합세액공제를 활용하는 경우 상속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합세액공제가 줄어들게 된다.

증여자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증여세법상 미국 거주자인 경우 수증자에게 연간 증여재산 공제액보다 많은 재산을 증여한 때에는 증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4월 15일까지 증여세 신고서(Form 709)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Q 105 미국에서 납부한 증여세에 대하여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한국 거주자가 미국 소재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미국에서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한국에서 증여세를 계산할 때 미국에서 납부한 증여세액과 아래 공제세액 중 적은 금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text{공제세액} = \text{증여세 산출세액} \times \frac{\text{외국에서 증여세가 부과된 과세표준}}{\text{총 증여세 과세표준}}$$

한편, 한국 거주자가 미국 거주자에게 미국 소재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 한국에서도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고, 미국에서도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미국의 법령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에는 한국에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9조(준용규정)(외국납부세액 공제)

Q106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증여받은 재산을 처분할 경우 한국 또는 미국에서 세금은 어떻게 되는가? 처분대금을 미국으로 가지고 오는 방법은?

비거주자(일반적으로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는 한국 비거주자에 해당)가 증여받은 국내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보유기간 중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하여 먼저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거주외국인 등 미국세법상 미국인은 일반적으로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미국에서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4월 15일까지 한국에서의 부동산 양도소득을 미국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에서 납부한 양도소득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증여받은 재산의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재산의 취득가액은 한국에서는 증여 당시의 가액(시가)으로 하게 되며, 미국에서는 증여자가 당초 취득할 당시의 가액(Transferred Basis or Carryover Basis)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증여 당시의 시가가 증여자의 세무조정 취득가액(Adjusted Basis)보다 낮고,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한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증여받은 부동산 처분대금을 해외로 반출하려면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하고, '재외동포 재산반출 신청서', '부동산 취득신고 수리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세무서장이 발급한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확인서 신청일이 부동산 양도일부터 5년 이내인 경우에 한함)를 거래 외국환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한국에 소재하는 재산이 동산이나 주식인 경우, 동 재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한미조세조약상 양도자의 거주지국인 미국에서만 과세되고 한국에서의 과세는 면제된다.

관련법령

- IRC §61, 1015, 7701
- Treas. Reg. §1.1015-1(a)(1).
- 한미조세조약 제16조

Ⅵ. 한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관련

Ⅵ. 한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관련

Q107 재외국민은 어떤 경우에 신고의무가 있나요?

재외국민의 경우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인 경우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재외국민이라도 한국 거주자에 해당하고 해외금융계좌의 보유 합계가 연중 하루라도 10억원을 넘는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 재외국민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1조의2)

여기에서 거소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의미하여 거주기간의 계산은 아래와 같이 합니다.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합니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 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 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봅니다.
③ 또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봅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⑤
-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제3조(거주자 판정의 특례),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소득세법 기본통칙 1-4(주소 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구분)

Q 108 미국 영주권이 있는 재외국민으로 미국에 계좌가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제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한국에 거주하는 부친의 소유 계좌이고 하나는 제 처와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먼저 Q107에 따라 신고의무대상자인 재외국민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차명계좌인 경우에는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둘 다 신고의무가 있으며, 공동명의계좌인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가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금액 등 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지분율 등에 관계없이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아 기재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 본인이 신고의무자인 재외국민이라면 두 계좌 모두에 대해서 신고 의무가 있으며, 첫 번째 계좌에 대해서는 부친을 실지명의자로, 두 번째 계좌에 대해서는 배우자를 공동명의자로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보유한 해외계좌가 공동명의인 계좌 하나뿐이어서 본인의 신고로 인해 관할 세무서장이 배우자가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배우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공동명의계좌 외에도 해외계좌를 가지고 있으며 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한다면 배우자 또한 신고의무자가 됩니다.

부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법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신고의무자의 판정기준 등)

Q109 예금계좌, 주식계좌, 채권계좌, 파생상품계좌 등 해외금융계좌가 여러 개 있는데, 모든 해외금융계좌를 전부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범위는 예·적금 계좌 등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입니다.

따라서, 예금계좌, 주식계좌 및 채권계좌는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금융계좌에 보유되고 있는 금융자산의 평가대상은 현금 및 상장주식(이에 기초한 예탁증서포함)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만약 채권계좌에 현금과 채권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 현금은 신고대상이 되지만, 채권은 신고대상이 아니어서 보유계좌잔액 계산시 합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채권계좌에 현금은 없고 채권만 있는 경우 동 계좌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관련법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신고의무자의 판정기준 등)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증권)

Q110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가 많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달라지는 내용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2013년 신고부터는 미신고 · 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 인적사항 등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12년도 보유분을 '13년에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또한 미신고자 · 과소신고자 제보 시,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2014년 신고부터는 신고의무자 산정기준과 신고대상 범위가 변경되며 미신고자 또는 과소 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도입됩니다.('13년도 보유분을 '14년에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먼저 신고의무자 산정기준이 일별 기준에서 월말 기준으로 변경되어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신고대상 범위가 모든 해외금융계좌(파생상품계좌 및 그 밖에 해외금융계좌)로 확대되며 신고대상 자산도 현금, 상장주식 뿐만 아니라 상장채권, 펀드,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으로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채권계좌에 들어있는 채권의 경우 2013년까지는 신고대상이 아니었지만 2014년부터는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미신고 · 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0%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85조의5(고액 · 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신고의무자의 판정기준 등)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

Ⅶ. 미국의 국적포기세 과세제도 관련

Ⅶ. 미국의 국적포기세 과세제도 관련

Q111 외국에 있는 재산이 국적포기세 과세대상인 경우 어떠한 과세문제가 있을 수 있는가?

외국에 있는 재산이 국적포기세 과세대상이 된 경우 나중에 동 재산을 양도하더라도 당해 국가에서 취득가액을 조정할 수 없으므로 이중과세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국적을 포기하면서 재산도 함께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다.

〈사례〉

A는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2012년 역이민을 갔는데, 국적포기일 현재 미국에 시가 $1,000,000짜리 주택 1채(2001년 $500,000에 취득), 한국에 시가 $3,000,000짜리 상가 1동(1995년 $1,500,000에 취득)이 있었다. 이 경우 A는 주택과 상가를 국적포기일 현재 양도한 것으로 가정하여 주택 양도차익 $500,000, 상가 양도차익 $1,5000,000 합계 $2,000,000에서 $651,000을 차감한 $1,349,000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미국에 국적포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015년에 A는 미국에 있는 주택을 $1,500,000에 양도하였다. 이 경우 주택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A는 비거주자로서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미국에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 때 동 주택은 국적포기세가 과세된 재산이므로 국적포기일 현재의 시가 $1,000,000을 주택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양도가액과의 차액 $500,000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2016년에 A는 한국에 있는 상가를 $4,000,000에 양도하였다. 이 경우 A는 한국 거주자이고, 상가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동 상가에 대한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가액 $1,500,000로 하게 된다. 따라서 A는 양도가액과의 차액 $2,500,000에 대하여 한국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상가 양도차익 중 $1,500,000에 대해서는 미국의 국적포기세와 한국의 양도소득세가 이중으로 과세된다.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국적포기일 이전에 재산을 미리 처분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관련법규 ▫ IRC §877A

Ⅷ. 일반세무 안내

Ⅷ. 일반세무 안내

Q 112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절차와 구비서류는?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하며,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며, 사업현황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일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사업자의 종류별로 다음장 표에 기재된 서류가 필요하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 임차한 사업장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 해당부분의 도면이 추가로 필요하다.

* 확정일자란 임대차 계약서의 작성내용을 공증하는 행위를 말함

본인이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재외공관장이 공증), 대리인의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하며, 관할 세무서에서는 위임자의 신분증(신분증 사본포함), 전화통화 등으로 위임의사를 확인한 후 사업자등록을 발급한다.

관련법규 ▫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발급)

구 분	제 출 서 류
개 인	1. 사업자등록신청서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없을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기재하되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원본과 대조할 것 2.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3. 관허사업은 사업허가 · 등록 · 신고필증 사본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도면 5. 자금출처명세서 (금지금 도 · 소매업 및 과세유흥장소에의 영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6. 국내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혹은 여권)원본 제시 후 사본 제출 7. 공동사업자인 경우 합작계약서 8. 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사업자가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는 경우) 납세관리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영리내국법인(본점)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 3.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4. 관허사업은 사업허가 · 등록 · 신고필증 사본 5. 현금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만 해당) 6. 자금출처명세서 (금지금 도 · 소매업 및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7. 대표자가 국내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혹은 여권) 원본 제시 후 사본 제출 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부분의 도면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9. 외국인 투자신고서 사본 또는 외국환매입증명서 사본(외투법인인 경우) ※ 근거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2항,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52조 제2항, 제4항

구 분	제 출 서 류
비영리 내국법인 본점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 3. 관허사업은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 4.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증 사본 5. 대표자가 국내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혹은 여권) 원본 제시 후 사본 제출 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부분의 도면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 근거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2항,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52조 제2항, 제4항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 본점의 등기에 관한 서류 3. 정관사본 4. 지점등기부등본(국내에서 수행하는 사업 활동의 성격상 한시성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상 등기할 의무가 없는 경우는 제외) 또는 국내 사업장의 사업영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5. 관허사업은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 6. 임차사업자의 경우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 7.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8. 자금출처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및 과세유흥장소에의 영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9.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사본 (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9-8호 서식) 10.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의 재무상태표 ※ 법인세법 제109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52조 제4항, 국세청민원사무 처리규정 제29조 제1항

Q 113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에 양도소득세 등을 과다신고하여 경정청구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본인이 당초 신고한 신고서 등은 어떻게 열람할 수 있는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예를들어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경우 2010.5.31이 법정신고기한 이므로 3년에 해당하는 2013.5.31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청구서와 함께 계좌개설 신고서,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신고한 계좌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계좌개설 신고서의 환급계좌는 반드시 본인 계좌이어야 하며, 거래은행은 한국은행과 국고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은행이어야 한다. 현재 한국은행은 한국에 있는 은행과 국고금 지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국내은행 해외지점이나 해외은행 국내지점 등은 해당이 없다. (예: 우리은행 뉴욕지점, HSBC 한국지점 등은 안됨)

납세자 본인이 신고한 신고서 및 부속서류(부동산양도계약서 등)는 관할세무서에 납세자 본인이 신청할 경우 신분증(재외국민등록증, 여권 등) 확인 후 사본을 제공받을 수 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재외공관장이 공증)을 제출하여야 하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세무서에서는 납세자 본인의 위임의사를 확인한 후 신고서 사본 등을 제공한다.

관련법규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경정 등의 청구)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정보 제공)

Q 114 한국에서 억울하게 부과된 세금에 대하여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가?

세금과 관련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도를 이용하여 불복을 청구함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 행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는 세금과 관련된 고충민원을 납세자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처리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이를 위해 전국의 모든 세무관서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설치되어 있다.

납세자는 국세청에서 담당하는 모든 세금과 관련된 애로 및 불편사항에 대하여 고충 또는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세금구제 절차를 알지 못하여 불복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입증자료를 내지 못하여 세금을 물게 된 경우
- 실제로는 국내에 한 채의 주택을 갖고 3년 이상 소유한 후 팔았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공부상 기재 내용과 같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 기타 세금관련 애로사항 발생

납세자의 고충청구 및 권리보호 요청이 접수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책임지고 성의껏 처리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국세와 관련된 애로사항이 있으면 가까운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상담해 보는 것이 좋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하여 5번을 누르면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연결되어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1) 고지 전에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업무감사 및 세무조사 파생자료의 처리 포함)등을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거나 과세자료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예상

고지세액 300만원 이상)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 준 다음 납세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과세예고의 옳고 그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게 하고, 심사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하면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시정하여 주는 제도이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면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서를 보낸 해당 세무서장 ·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쟁점사항이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및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의한 것일 때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 청구세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그러면 세무서장 등은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한 후 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 준다.

2) 고지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세금이 고지된 후에는 다음과 같은 권리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이의신청'
- 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
- 감사원에 제기하는 '감사원 심사청구'
-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

위와 같은 권리구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1단계로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 ·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1단계 절차에서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단계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다만,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한다)

또한 세금이 고지된 이후의 구제절차는 반드시 고지서 등을 받은 날 또는 세금부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1단계 절차에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이 기간을 지나서 서류를 제출하면 아무리

청구이유가 타당하더라도 '각하'결정을 하므로 청구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만,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날부터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관련법규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61조(청구기간), 제68조(청구기간)

Q 115 국내 세금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상담은 어떻게 하는가? 세금에 관한 법령정보 및 일반 법령정보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국세청고객만족센터'에서는 납세자의 세법에 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 전화 상담 : 한국국가번호(82), 서울지역번호(2)를 누르고 국내전화 126번으로 전화한 후 1번을 누른 다음 음성안내멘트에 따라 상담분야를 선택하면 상담관과 연결되어 상담을 할 수 있다.

(2) 인터넷 상담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인터넷 홈페이지(http://call.nts.go.kr)를 방문하여 「질문하기」에서 국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면, 48시간 이내에 답변하고 있다. 다만, 인터넷 상담은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상담이 가능하다.

(3) 방문 상담 : 납세자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전문상담관으로부터 1대1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주소 : (135-75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번지(역삼동 824번지)

국내 세금에 관한 법령 정보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axinfo.nts.go.kr)을 통하여 얻을 수 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은 세무관련 법령과 예규, 심사 · 심판 결정례, 판례, 훈령, 고시, 서식 등 국세관련 정보를 망라하여 수록하고 있다.

일반 법령에 관한 정보는 법제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leg.go.kr)를 통하여 얻을 수 있다. 여기에는 각종 법령, 최근 입법현황, 법령 해석사례 등이 수록되어 있다.

Q116 미국 세법에 관한 정보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미국 일반 법령에 관한 정보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미국 세금에 관한 법령정보는 IRS 웹사이트(http://www.irs.gov)를 통하여 얻을 수 있다. 검색창에 검색하고자 하는 법령, 서식, 간행물, 용어 등을 입력하면 미국 세금에 대한 모든 공개정보를 무료로 얻을 수 있다.

미국의 일반 법령정보는 http://www.findlaw.com 또는 http://www.law.cornell.edu 에서 얻을 수 있다.

http://www.findlaw.com은 법률분야에 관하여 매우 자세한 분류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의 분야별 법령, 서식, 연방 및 주 법원 판례, Court Opinions 등에 관한 정보를 유료 또는 무료로 얻을 수 있다.

http://www.law.cornell.edu는 Cornell 대학교의 법률정보연구소 홈페이지이며, 미국의 법령을 잘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다. US Code 전질과 미국 연방 헌법, Federal Rules of Evidence and Civil Procedure, 기타 중요한 연방 및 각 주의 법령에 관한 정보를 무료로 얻을 수 있다.

Q117 전국 세무서 연락처 및 담당구역 안내

세무서 명칭	전화번호	관 할 구 역
종로세무서	82–2–760–92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부세무서	82–2–2260–9200	서울특별시 중구 중 명동 1·2가, 충무로 1·2·3·4·5가, 인현동 1·2가, 예관동, 오장동, 남대문로 2가, 초동, 을지로 6·7가, 필동 1·2·3가, 주자동, 남학동, 남산동 1·2·3가, 예장동, 방산동, 쌍림동, 장충동 1·2가, 묵정동, 광희동 1·2가, 황학동, 무학동, 흥인동, 신당동
남대문세무서	82–2–2260–0200	서울특별시 중구 중 남대문로 1·3·4·5가, 을지로 1·2·3·4·5가, 주교동, 삼각동, 수하동, 장교동, 수표동, 저동 1·2가, 입정동, 산림동, 무교동, 다동, 북창동, 남창동, 봉래동 1·2가, 회현동 1·2·3가, 소공동, 태평로 1·2가, 서소문동, 정동, 순화동, 의주로 1·2가, 중림동, 만리동 1·2가, 충정로 1가
용산세무서	82–2–748–8200	서울특별시 용산구
성북세무서	82–2–760–8200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대문세무서	82–2–2287–4200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세무서	82–2–705–7200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등포세무서	82–2–2630–92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대림·도림·신길동을 제외한다)
강서세무서	82–2–2630–420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세무서	82–2–2650–9200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로세무서	82–2–2630–7200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작세무서	82–2–840–9200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등포구 중 대림동, 도림동, 신길동
금천세무서	82–2–850–4200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악구

세무서 명칭	전화번호	관 할 구 역
강남세무서	82–2–519–42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 신사동, 논현동, 압구정동, 청담동
삼성세무서	82–2–3011–72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 · 논현 · 압구정 · 청담 · 역삼 · 도곡동을 제외한다)
반포세무서	82–2–590–42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 잠원동, 반포동, 방배동
서초세무서	82–2–3011–62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반포동 및 방배동을 제외한다)
역삼세무서	82–2–3011–82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도곡동
성동세무서	82–2–460–4200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세무서	82–2–958–020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세무서	82–2–944–0200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구(창동을 제외한다)
강동세무서	82–2–2224–0200	서울특별시 강동구
송파세무서	82–2–2224–9200	서울특별시 송파구
노원세무서	82–2–3499–0200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봉구 중 창동

중부지방국세청(28)

세무서 명칭	위 치	관 할 구 역
인천세무서	82-32-770-0200	인천광역시 중구, 동구, 남구, 옹진군
북인천세무서	82-32-540-6200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평구
서인천세무서	82-32-560-5200	인천광역시 서구, 강화군, 경기도 김포시
남인천세무서	82-32-460-5200	인천광역시 연수구, 남동구
부천세무서	82-32-320-5200	경기도 부천시
안양세무서	82-31-467-1200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군포시
동안양세무서	82-31-339-820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과천시, 의왕시
안산세무서	82-31-412-3200	경기도 안산시
수원세무서	82-31-250-420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화성세무서	82-31-8019-1201	경기도 화성시(기배동, 화산동, 진안동, 반월동, 병점1,2동,동탄 1,2,3동, 동탄면을 제외한다)
동수원세무서	82-31-695-420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오산시, 화성시 중 기배동, 화산동,진안동, 반월동, 병점 1,2동, 동탄 1,2,3동, 동탄면
평택세무서	82-31-650-0200	경기도 평택시, 안성시
성남세무서	82-31-730-620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분당세무서	82-31-219-920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천세무서	82-31-644-0200	경기도 하남시, 이천시, 광주시, 여주군
의정부세무서	82-31-870-4200	경기도 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 강원도 철원군
남양주세무서	82-31-550-3200	경기도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양평군
고양세무서	82-31-900-9200	경기도 고양시
파주세무서	82-31-956-0200	경기도 파주시
시흥세무서	82-31-310-7200	경기도 시흥시, 광명시

세무서 명칭	위 치	관 할 구 역
용인세무서	82-31-329-2200	경기도 용인시
춘천세무서	82-33-250-0200	강원도 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홍천세무서	82-33-430-1200	강원도 홍천군, 인제군
원주세무서	82-33-740-9200	강원도 원주시, 횡성군, 평창군 중 봉평면, 대화면, 방림면
영월세무서	82-33-370-0200	강원도 영월군, 정선군(임계면을 제외한다), 평창군(대관령· 진부·봉평·대화·방림·용평면을 제외한다)
삼척세무서	82-33-570-0200	강원도 삼척시, 동해시, 태백시
강릉세무서	82-33-610-9200	강원도 강릉시, 평창군 중 대관령면, 진부면, 용평면, 정선군 중 임계면
속초세무서	82-33-639-9200	강원도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대전지방국세청(14)

세무서 명칭	연락처	관 할 구 역
대전세무서	82-42-229-8200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대덕구 중 오정동, 대화동, 읍내동, 연축동, 신대동, 와동, 송촌동, 법동, 중리동, 비래동, 장동, 충청남도 금산군
서대전세무서	82-42-480-8200	대전광역시 서구, 유성구, 대덕구 중 상서동, 평촌동, 덕암동, 신일동, 목상동, 문평동, 석봉동, 신탄진동, 이현동, 갈전동, 용호동, 부수동, 황호동, 삼정동, 미호동
청주세무서	82-43-230-92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진천군, 증평군
동청주세무서	82-43-229-420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청원군, 괴산군 (소수 · 불정 · 장연 · 연풍 · 감물면을 제외한다)
영동세무서	82-43-740-6200	충청북도 영동군, 옥천군, 보은군
충주세무서	82-43-841-6200	충청북도 충주시, 음성군, 괴산군 중 소수 · 불정 · 장연 · 연풍 · 감물면
제천세무서	82-43-649-2200	충청북도 제천시, 단양군
공주세무서	82-41-850-3200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
논산세무서	82-41-730-8200	충청남도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보령세무서	82-41-930-9200	충청남도 보령시, 서천군
서산세무서	82-41-660-9200	충청남도 서산시, 태안군
홍성세무서	82-41-630-4200	충청남도 홍성군, 청양군
예산세무서	82-41-330-5200	충청남도 당진시, 예산군,
천안세무서	82-41-559-8200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광주지방국세청(14)

세무서 명칭	연락처	관 할 구 역
광주세무서	82-62-605-0200	광주광역시 동구, 남구, 전라남도 곡성군, 화순군
북광주세무서	82-62-520-9200	광주광역시 북구, 전라남도 장성군, 담양군
서광주세무서	82-62-380-5200	광주광역시 서구, 광산구, 전라남도 영광군
군산세무서	82-63-470-3200	전라북도 군산시
전주세무서	82-63-250-02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완주군
북전주세무서	82-63-249-12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중 천천 · 장계 · 계북 · 계남면
익산세무서	82-63-840-0200	전라북도 익산시, 김제시
정읍세무서	82-63-530-1200	전라북도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남원세무서	82-63-630-2200	전라북도 남원시,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천천 · 장계 · 계북 · 계남면을 제외한다)
목포세무서	82-61-241-1200	전라남도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중 삼호읍
나주세무서	82-61-330-0200	전라남도 나주시, 영암군(삼호읍을 제외한다), 함평군
해남세무서	82-61-530-6200	전라남도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강진군, 장흥군
순천세무서	82-61-720-0200	전라남도 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보성군, 고흥군
여수세무서	82-61-688-0200	전라남도 여수시

대구지방국세청(13)

세무서 명칭	연락처	관 할 구 역
동대구세무서	82-53-749-0200	대구광역시 동구, 수성구
서대구세무서	82-53-659-1200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구(월성 · 대천 · 월암 · 상인 · 도원 · 진천 · 대곡 · 유천 · 송현 · 본동을 제외한다), 경상북도 고령군
남대구세무서	82-53-659-0200	대구광역시 남구, 달서구 중 월성동, 대천 동, 월암동, 상인동, 도원동, 진천동, 대곡 동, 유천동, 송현동, 본동, 달성군
북대구세무서	82-53-350-4200	대구광역시 북구, 중구
경산세무서	82-53-819-3200	경상북도 경산시, 청도군
경주세무서	82-54-779-1200	경상북도 경주시, 영천시
포항세무서	82-54-245-2200	경상북도 포항시, 울릉군
영덕세무서	82-54-730-2200	경상북도 영덕군, 울진군
안동세무서	82-54-851-0200	경상북도 안동시, 영양군, 청송군, 의성군, 군위군
김천세무서	82-54-420-3200	경상북도 김천시, 성주군
구미세무서	82-54-468-4200	경상북도 구미시, 칠곡군
상주세무서	82-54-530-0200	경상북도 상주시, 문경시
영주세무서	82-54-639-5200	경상북도 영주시, 봉화군, 예천군

부산지방국세청(16)

세무서 명칭	연락처	관 할 구 역
중부산세무서	82–51–240–0200	부산광역시 영도구, 중구
서부산세무서	82–51–250–6200	부산광역시 서구, 사하구
부산진세무서	82–51–461–9200	부산광역시 동구, 부산진구
수영세무서	82–51–620–9200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북부산세무서	82–51–310–6200	부산광역시 북구, 사상구, 강서구
동래세무서	82–51–860–2200	부산광역시 동래구, 연제구
금정세무서	82–51–580–6200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장군, 경상남도 양산시
울산세무서	82–52–259–0200	울산광역시 남구, 울주군 중 온산읍 · 온양읍 · 청량면 · 웅촌면 · 서생면
동울산세무서	82–52–219–9200	울산광역시 중구, 동구, 북구, 울주군(온산읍 · 온양읍 · 청량면 · 웅촌면 · 서생면을 제외한다)
마산세무서	82–55–240–020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창원세무서	82–55–239–020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
김해세무서	82–55–320–6200	경상남도 김해시, 밀양시
거창세무서	82–55–940–0200	경상남도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통영세무서	82–55–640–7200	경상남도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진주세무서	82–55–751–0200	경상남도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남해군, 하동군
제주세무서	82–64–720–5200	제주특별자치도

재미동포가 알아야 할
한 · 미 세금상식

원고작성 및 편집

주뉴욕총영사관	서 진 욱	세무협력관
국 세 청	국제협력담당관실	
	한 연 호	서기관
	최 성 일	서기관
	이 창 기	서기관
	권 오 승	행정사무관
	장 병 채	행정사무관
	김 주 석	세무조사관
	김 완 태	세무조사관
	김 태 윤	세무조사관
	최 치 환	세무조사관
언스트앤영 한영회계법인	정 원 보	세무사
법무법인 율촌	강 성 식	세무사
	곽 장 운	변호사
	강 권 도	美 변호사
Caplin&Drysdale	Sean I. Kahng	美 변호사
Genereral Electric	Lucy S. Lee	美 변호사
뉴욕공인회계사회	민 대 기	美 변호사 · 회계사
	박 종 호	美 회계사
	이 상 민	美 회계사
	최 주 형	美 회계사

* 본 책자의 내용 중 제1장과 제2장에서 다루고 있는 미국의 조세제도에 관한 설명이나 답변은 공개된 미국의 법령자료를 기초로 민간 전문가들이 작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그 내용에 관하여 책임질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본 책자는 2013년도 2월15일 현재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실제 개별적인 세무보고 시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본 책자의 내용 중 오류나 개선의견에 대하여 아래 연락처로 알려 주시면 다음 기회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비 매 품〉〈Not For Sale〉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T. 82-2-397-1426 ~ 1427

주뉴욕총영사관